

정책연구 08-57

인터넷전화 및 결합판매 활성화에 따른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연구(Ⅱ)

함창용/오성백/이종화/정 훈/오기석/나상우/한상훈

2008. 12

서 언

보편적서비스 제도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이후 시행령을 마련하였으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두어 실질적인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보편적서비스 제도는 변화되는 환경에 적합하게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최근의 통신서비스 시장은 신규 서비스의 등장과 서비스간의 융합 및 대체, 결합판매의 활성화,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으로의 진화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통신환경 변화는 보편적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정책 방향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수년간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나 주로 시내전화와 공중전화 적자에 관한 이슈 중심으로 이루어져,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 관한 복지통신제도나 보편적서비스 기금 자체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감면제도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에 있어서 최저생계비 산출을 어떻게 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와, 우리나라와 외국의 저소득층에 관한 통신서비스 요금감면제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서비스 기금에 관한 전반적인 해외현황과 기금운용의 원칙에 관하여 정리하고 현재의 가상적 기금형태를 실질기금의 형태로 전환하는 데 대한 이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의 향후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는 공정경쟁정책연구실 함창용 실장의 총괄하에 오성백 선임연구위원, 이

종화 연구위원, 정 훈 책임연구원, 오기석 주임연구원, 나상우 연구원, 한상훈 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요금감면 통신서비스 이용실태 조사는 위탁과제의 형태로 현대리서치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주신 방송통신위원회와 전기통신사업자의 관련 실무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12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 장 방 석 호

목 차

서 언	1
요약문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 배경	11
2. 연구 목적	11
제2절 보고서 구성	12
제2장 공공부조제도 및 복지통신제도	13
제1절 공공부조제도 및 최저생계비 산출	13
1. 공공부조법의 개념	13
2. 공공부조법의 기본 원리	13
3.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 및 수준	14
제2절 빈곤계층 및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의 현황	23
1. 생 계	23
2. 의 료	24
3. 주 거	25
4. 교 육	26
5. 근 로	28
6. 취약계층지원	29
제3절 복지통신제도	32
1.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	32

제 4 절	외국의 저소득층 요금감면제도	35
1. 미 국	35
2. 호 주	37
3. 영 국	38
4. 요금감면제도 운영사례	42
5. 우리나라와 외국의 복지통신 범위 및 규모 비교	44
제 3 장	보편적서비스 기금	46
제 1 절	별도 보편적서비스 기금 운영 현황	46
1. OECD 국가	46
2. 비 OECD 국가	49
제 2 절	해외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 기금제도	53
1. 미국의 보편적서비스 기금제도	53
2. 기타 외국의 보편적서비스 기금 운영 사례 및 방안	67
3. 보편적 접근 및 서비스 기금(UASF)의 관리 및 운영 방안	73
4. 국내 실질 기금 도입 방안	84
참고문헌	94
〈첨부 1〉	방송통신위원회의 보편적서비스 확대방안(2008. 6)	96
〈첨부 2〉	주요 통신사업자의 사회공헌 활동	100
〈첨부 3〉	요금감면 통신서비스 이용실태 조사(2008. 7. 10)	119

표 목 차

〈표 2-1〉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연구진안)	16
〈표 2-2〉 가구 균등화 지수	18
〈표 2-3〉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연구진안)	18
〈표 2-4〉 비계측년도 추정방식에 따른 2008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20
〈표 2-5〉 2007~2008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20
〈표 2-6〉 2009년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21
〈표 2-7〉 2009년도 현금급여기준	22
〈표 2-8〉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인상률	22
〈표 2-9〉 의료급여 종별 수급권자 세부유형	24
〈표 2-10〉 통신요금 감면대상자(가구 및 개인) 요건 및 감면요율	33
〈표 2-11〉 Access for Everyone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38
〈표 2-12〉 LUS 가입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BT의 사용 통화료 기준	39
〈표 2-13〉 BT의 현행 소량이용자 요금제 가입기준	39
〈표 2-14〉 BT의 현행 소량이용자 요금제 요금	40
〈표 2-15〉 BT Basic 요금제의 내용	42
〈표 2-16〉 OECD 국가의 통신요금감면제도 현황	42
〈표 2-17〉 비 OECD 국가의 통신요금감면제도 현황	43
〈표 2-18〉 우리나라와 외국의 복지통신 범위 및 규모 비교	44
〈표 3-1〉 보편적서비스 제공대상: OECD	46
〈표 3-2〉 별도의 보편적서비스 기금 운영 국가: OECD	48
〈표 3-3〉 보편적서비스 제공대상: 비 OECD	49
〈표 3-4〉 별도의 보편적서비스 기금 운영 국가: 비 OECD	52

〈표 3-5〉 미국의 2000~2005년 보편적서비스 기금 유입액과 유출액	55
〈표 3-6〉 연도별 고비용지원을 위한 기금 지급 내역	58
〈표 3-7〉 연도별 저소득층 보조 기금 지급액	61
〈표 3-8〉 연도별 학교 및 도서관 지원 기금 지급액	63
〈표 3-9〉 연도별 의료기관 지원 기금 지급액	65
〈표 3-10〉 프랑스 기금분담사업자 분담추이	67
〈표 3-11〉 분담사업자의 기금분담 기준 매출액 범위	68
〈표 3-12〉 기금분담사업자 수와 적격매출액	70

그림 목 차

[그림 3-1] 지원 수 VS. 평균 Loan 금액	66
------------------------------------	----

요 약 문

1. 연구배경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지출에서 가계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신비가 저소득층의 생계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가계통신비 중 2/3 정도를 차지하는 이동전화 이용료의 부담이 커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서비스 중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에 관한 연구를 KISDI에 의뢰하였다. 또한 현재 가상적(virtual) 기금의 형태로 되어 있는 보편적서비스 기금을 실질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KISDI에 의뢰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에 관한 공공부조제도에 관하여 개관하고 복지통신제도에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최저생계비 산출과정을 통하여 통신비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가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제도를 외국의 저소득층 요금감면제도와 비교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보편적서비스제도를 실질기금의 형태로 운영하는 국가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실질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우선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 시

행과 관련된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제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최저생계비의 산출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함께 여기에 이동전화요금을 비롯한 통신비가 어떻게 산정되며 매년 최저생계비가 정해지는 과정과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보편적서비스 제도에 포함된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와 2008년 10월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 확대정책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 대한 통신서비스 요금감면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고 있다.

보편적서비스 기금에 관한 연구에서는 약 60개국의 현황을 파악하여 보편적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나 사업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자금의 조달을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국가와 기금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국가 등으로 구분하고 기금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끝으로 실질기금으로 운영하는 국가의 상황으로부터 유추하여 실질기금이 적절한 상황이 어떠한 경우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인가도 분석하여 실질기금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실질기금으로의 전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정책의 일환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가 갖는 의의를 점검하고 이를 조기에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편적서비스기금을 실질 기금화하는 방안의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이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보이고자 하고 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지출에서 가계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신비가 저소득층의 생계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가계통신비 중 2/3 정도를 차지하는 이동전화 이용료의 부담이 커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서비스 중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에 관한 연구를 KISDI에 의뢰하였다. 또한 현재 가상적(virtual) 기금의 형태로 되어 있는 보편적서비스 기금을 실질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KISDI에 의뢰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에 관한 공공부조제도에 관하여 개관하고 복지통신제도를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최저생계비 산출과정에 통신비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가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제도를 외국의 저소득층 요금감면제도와 비교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보편적서비스제도를 실질기금의 형태로 운영하는 국가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실질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보고서 구성

제2장에서는 공공부조제도 및 복지통신제도에 대하여 알아 본다. 제1절에서는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및 기본원리 등에 대하여 알아 보고, 국민기초생활수급법상의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 및 수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 본다. 제2절에서는 빈곤계층 및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의 현황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근로, 취약계층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제3절에서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통신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알아 보고 제4절에서는 미국, 호주, 영국 등의 요금감면제도 운영사례를 살펴 보고 우리나라와의 복지통신 범위 및 규모를 비교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보편적서비스 기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우선 제1절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과 별도의 보편적서비스 기금 운영 현황에 대하여 OECD 국가와 비 OECD 국가로 크게 그룹을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제2절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 기금제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수록하고 있고 보편적 접근 및 서비스 기금(UASF)의 관리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끝으로 국내 실질 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 2 장 공공부조제도 및 복지통신제도

제 1 절 공공부조제도 및 최저생계비 산출¹⁾

1. 공공부조법의 개념

공공부조란 생활 곤궁자에 대한 공적인 경제적 보호를 뜻하는 것으로서, 빈곤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법령에 입각하여 공적비용으로서 생활이 곤궁한 자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과 그 밖의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조달이 되며, 급여수급의 자격은 생활 곤궁이란 사실에 의거하여 정해지고 급여의 기간은 특별히 고정되지는 않으며 자산조사를 급여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무상급여이다.

공공부조법은 과거의 자선과 시혜와 같은 소극적 개념에서부터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1999년에 확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구법인 생활보호법에서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등의 용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으로 바뀌어져 저소득층의 권리성을 강화하였다.

2. 공공부조법의 기본 원리

□ 생존권 보장의 원리

모든 국민은 누구나 생활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 3항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1) 본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7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요약)을 주로 발췌하였음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보호수준을 규정하고 있다.

□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최저생활 보장이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인간으로서 의미 있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실질적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수준의 유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각국의 빈곤선은 그 나라의 사회, 문화적 양상, 경제상태, 생활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 보충성의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전제조건으로서 개인적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생활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노력해도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을 본 법의 제도를 통해 급여하자는 원리이다. 생활의 개인책임 내지 자기책임을 기초로 한 자본주의 사회의 최종적 또는 포괄적인 생활보장수단으로서의 공공부조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다.

3.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 및 수준

가. 개 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매년 9월 1일까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되, 계측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해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최저생계비 계측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면서 처음 이루어졌으며

2004년에 두 번째로 이루어졌다. 2004년 법개정을 통해 계층 주기를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2007년도에 최저생계비 계층이 세 번째로 이루어졌다.

나. 2007년 최저생계비 산출 절차

□ 최저생계비 산출 절차 개요

- 1단계에서는 “표준가구(4인가구)”를 설정하고 “지역구분(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을 결정
- 2단계에서는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 계층
- 3단계에서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결정
- 4단계에서는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층”
 -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 가구규모별 기본경비(공통경비) + 지역별 가구규모별 점유형태별 주거비 + 개인별 추가지출액”

□ 마켓바스켓 결정

최저생계비 항목에 포함되는 마켓바스켓을 정하기 위해서는 필수품 선정, 사용량 결정, 내구연수 결정 및 가격 결정의 절차를 거친다. 일반적으로 필수품은 ‘최저의 품위기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합의된 품목’으로, 최저의 품위기준은 ‘기본적 욕구가 충분히 충족된 상태’ 혹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필수품은 그 사회의 복지수준과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필수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방식은 전문가에 의한 최저개념(예, 영양권장량, 최저주거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품목 중에서 저소득층의 소비실태를 분석하여 빈도수가 높은 품목을 선정한다. 실제로는 소비의 소득탄성치가 낮은 품목과, 낮은 소득 수준에서 보유 또는 소비할 확률을 산출하여 확률이 높은 품목을 필수품으로 선정한다.

한편, 사용량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게 된다. 사용량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 양으로 결정(예: 균등할 주민세)하며, 사용량이 규범적(規範的)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 양으로 결정(예: 영양권장량을 충족하는 식품구성, 최저거주면적)한다. 다른 품목의 월사용량은 가구당 품목별 월평균지출액을 그 품목의 단가로 나

누는 방법과 해당품목에 대한 전체 사용량을 표본가구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출 한다.

내구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기간보다는 길게 결정하는데 그 이유는 교환가치는 없어도 사용가치는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두 등은 표본수를 구입 가구수로 나누어 내구연수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TV, 냉장고 등은 실태조사의 품목별 평균가격을 월 지출금액으로 나누어 내구연수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격결정은 기준시점을 2007년 1월로 하고 계절변동이 심한 품목은 성수기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품질은 중품을 기준으로 한다. 실태조사에서 저소득 가구의 구입 가격의 대표값을 이용하며, 기존 통계에서 월별 품목별 소비자 물가를 활용하기도 한다.

□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

다음은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팀이 산정한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이다.

〈표 2-1〉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연구진안)

(단위: 원,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식료품비	456,991	33.9	456,991	36.6	420,499	39.1
주거비*	308,658	22.9	213,135	17.1	76,568	7.1
수도광열	82,590	6.1	80,220	6.4	98,500	9.2
가구집기비	37,373	2.8	37,269	3.0	39,831	3.7
피복신발비	48,773	3.6	48,773	3.9	47,103	4.4
보건의료비	53,894	4.0	53,894	4.3	53,894	5.0
교육	56,136	4.2	56,136	4.5	56,136	5.2
교양오락	30,031	2.2	30,031	2.4	30,031	2.8
교통통신비	142,879	10.6	141,559	11.3	105,640	9.8
기타소비지출	77,292	5.7	77,292	6.2	77,292	7.2
비소비지출	53,952	4.0	53,887	4.3	70,411	6.5
합계	1,348,569		1,249,187		1,075,905	

주: * 대도시와 농어촌은 전세 기준이고, 농어촌은 자가 기준임

□ 최저 통신비 산정절차 사례

위에 제시된 비목별 최저생계비 항목 중 본 연구와 관련 있는 통신비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 최저 통신비의 개념: 최저 통신비는 친지와 의 교류와 의사소통 등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한다.

○ 필수품 선정방법

2004년 최저 통신비를 구성하고 있는 품목을 기준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1, 2차 조사) 및 각종 통계자료에 객관적으로 제시된 통신수단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필수품을 선정한다. 실태를 반영하여 이동전화를 필수품에 포함²⁾하되, 공중전화는 이용실태와 이동전화와의 대체성을 반영하여 필수품에서 제외하였다.

○ 사용량 및 내구연수 결정방법

가구당 1대의 이동전화기를 보유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2004년 일반전화 통화량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일반전화 및 이동전화 통화량을 배분하였다.

○ 가격 결정방법

일반전화, 이동전화 및 인터넷 연결 등의 기본요금, 세금과 같이 외부적으로 주어진 경우 이를 반영하고, 가입할 수 있는 여러 회사가 있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을 활용하였다. 그 외 품목들은 중(하)품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조사가격월보』(2007. 1)의 지역별 가중평균값을 활용하여 가격을 결정하였다. 그 밖에는 『시장가격조사』(2007)의 대표값 및 시장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 최저통신비 산정결과(연구진 안)

2007년도 표준가구의 최저 통신비는 대도시 63,527원, 중소도시 62,207원, 농어촌

2) 그 근거로 『전국가계조사』(2006년)의 탄력성(이동전화기의 탄력성은 0.3, 이동전화 요금의 탄력성은 0.2), 『국민생활실태조사』(1, 2차 조사)(소득 하위 40% 4인 가구의 96.6%가 이동전화를 사용, 88.0%가 이동전화를 필수품으로 인식, 99.1%가 1대 이상의 이동전화기 보유), 정보통신부의 『주요 IT 통계 현황』(2007. 1)(2006년 12월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 대비 시내전화 가입자 비율은 57.5%에 불과, 2006년 가구당 이동전화 보유대수 2.47대, 일반전화 보유대수 1.42대)을 들 수 있음

61,008원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표준가구인 4인 가구 기준 금액에 가구균등화지수(OECD 기준)를 곱하여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하였다.

〈표 2-2〉 가구 균등화 지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0.38136	0.61754	0.81869	1	1.16786	1.32572	1.47573

〈표 2-3〉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연구진안)

(단위: 천원,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균등화지수	0.381	0.618	0.819	1	1.168	1.326	1.476
대도시	514	833	1,104	1,349	1,575	1,788	1,990
중소도시	476	771	1,023	1,249	1,459	1,656	1,843
농어촌	410	664	881	1,076	1,257	1,426	1,588

□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끝으로 최저생계비 계측에서 개인과 가구의 귀속적,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다른 사람 혹은 가구와 동일한 효용을 누리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감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구의 경우 선형적으로 추가비용이 있다고 가정하고 추가비용의 금액을 산정하였다.

□ 2007년도 최저생계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되어 다양한 논의를 거친 후 최종 결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최저통신비에 대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과정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이동전화비용을 최저생계비에 포함하는 안과 포함시키지 않는 안 등 복수의 안이 상정되

었는데, 전문위원회에서는 이동전화의 마켓바스켓 포함여부에 대해 찬반 입장이 분명히 갈렸다. 찬성측은 저소득 가구의 90% 이상이 이동전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실태, 빈곤층의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서의 필요성, 저소득층 자녀의 정서적·심리적 박탈감 등을 근거로 든 반면, 반대측은 국민정서와 일반전화 및 공중전화 등 대체재의 존재를 근거로 하였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동전화를 마켓바스켓에 포함시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필수품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하여, 2007년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통·통신비는 중소도시 기준, 연구진안인 141,559원에서 12,284원이 삭감된 129,275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2008년 최저생계비 추정

□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법

2008년도와 같은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물가상승률 적용방식, 물가와 사용량 변화를 감안한 방식, 수준균형방식, 그리고 소득탄성치를 이용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물가상승률 적용방식은 비계측기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산반영 물가상승률, 생활물가상승률 등이 있다. 물가와 사용량 변화를 감안한 방식은 가격 변화 뿐 아니라 생활의 질 변화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수준균형방식은 상대빈곤선 계측방식을 활용하여 추정하는 방식으로 계측연도의 일반가구 지출(가계지출 또는 소비지출)수준과 최저생계비와의 비율을 구하고, 이 비율을 비계측연도의 지출에 곱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소득탄성치를 이용한 방식은 계측연도 최저생계비의 소득탄성치와 저소득층 명목소득증가율에 의해 산출된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비계측연도에 해당하는 다음 해의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 추정모형별 2008년 최저생계비

비계측연도 추정방식에 따라 추정된 2008년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다. 물가상

승률 방식에 의할 경우 4인 가구기준 2008년도 최저생계비는 1,282,242원으로 추정된다. 물가와 사용량 방식에 의할 경우 4인 가구의 2008년도 최저생계비는 1,278,174원으로 추정된다. 수준균형방식은 동일기준에 의할 경우 1,388,224원으로 추정된다.

〈표 2-4〉 비계측년도 추정방식에 따른 2008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단위: 천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물가상승률방식	469	794	1,040	1,282	1,507	1,734
물가와 사용량방식	468	792	1,037	1,278	1,502	1,729
수준균형방식	508	860	1,126	1,388	1,632	1,878

2008년 최저생계비 결정에 있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전문위원회에서 연구진이 제시한 물가상승률방식, 물가와 사용량을 감안한 방식(PQ방식), 수준균형방식의 세 가지 안 중 물가상승률 방식이 상정되었으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국제기구의 한국의 소비자물가 예측치(OECD 3.0%, IMF 2.5%, ADB 2.6%)의 평균인 2.7%를 반영하여 상승시키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표 2-5〉 2007~2008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구분	'07년 최저생계비	'08년 최저생계비	인상률
1인 가구	445,697	463,047	3.9%
2인 가구	750,881	784,319	4.5%
3인 가구	994,683	1,026,603	3.2%
4인 가구	1,232,569	1,265,848	2.7%
5인 가구	1,436,929	1,487,878	3.5%
6인 가구	1,645,726	1,712,186	4.0%

라. 2009년 최저생계비 결정

2008년 8월 1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 최저

생계비를 결정하였다.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는 통상적으로 예상물가상승률 3% 수준을 반영·인상하였으나, 2008년의 물가상승률이 예기치 않게 높아 최저생계비의 실질수준이 감소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 3% 이외에 예기치 못한 금년 물가상승분 1.8%* 반영해 총4.8%로 결정하였다.

※ '08년 물가상승률 예측치는 4.5%이었으며, '08년 최저생계비에 반영된 물가상승율은 2.7%였다. 2009년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다음의 표와 같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평균가구원수는 1.7명임

〈표 2-6〉 2009년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구 분	'08년 최저생계비	'09년 최저생계비	인상률
1인 가구	463,047	490,845	6.0%
2인 가구	784,319	835,763	6.6%
3인 가구	1,026,603	1,081,186	5.3%
4인 가구	1,265,848	1,326,609	4.8%
5인 가구	1,487,878	1,572,031	5.7%
6인 가구	1,712,186	1,817,454	6.2%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현금급여기준을 결정하였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에너지 보조금: 기초생활수급자 86만 가구를 대상으로 월 2만원씩 '08. 7월 ~ '09. 6월(1년간) 지급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 소득인정액이 500천원인 4인 가구: 605천원 지급(=1,105천원 - 500천원)

〈표 2-7〉 2009년도 현금급여기준

구 분	'08년 현금급여기준	'09년 현금급여기준
1인 가구	387,611	405,881
2인 가구	656,544	694,607
3인 가구	859,357	900,048
4인 가구	1,059,626	1,105,488
5인 가구	1,245,484	1,310,928
6인 가구	1,433,250	1,516,369

※ 현금급여기준 인상 효과 사례: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0천원

○ '08년: 1059천원 - 500천원 = 559천원

○ '09년: 1105천원 - 500천원 = 605천원

⇒ 현금급여 인상분 46천원만큼 추가 수령

마. 연도별 최저생계비(종합)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의 산정방식, 금액, 상승률 및 추정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8〉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인상률

구 분	연 도	최저생계비 (원/월)	상승률(%)	계측 및 추정방식
계측결과	1999년	901,357		전물량방식
비계측	2000년	928,398	3.0	물가상승률 적용
비계측	2001년	956,250	3.0	물가상승률 적용
비계측	2002년	989,719	3.5	물가상승률 적용
비계측	2003년	1,019,411	3.0	물가상승률 적용
비계측	2004년	1,055,090	3.5	물가상승률 적용
계측결과	2004년	1,103,235		전물량방식
비계측	2005년	1,136,332	7.7(계측결과 대비 3.0)	물가상승률 적용

구 분	연 도	최저생계비 (원/월)	상승률(%)	계측 및 추정방식
비계측	2006년	1,170,422	3.0	물가상승률 적용
비계측	2007년	1,205,535	3.0	물가상승률 반영
계측결과	2007년	1,232,569		전물량방식
비계측	2008년	1,265,848	5.0(계측결과 대비 2.7%)	물가상승률 반영
비계측	2009년	1,326,609	4.8	물가상승률 반영

제 2 절 빈곤계층 및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의 현황³⁾

빈곤계층 및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을 욕구범주별로 구분하면 생계비, 의료, 주거, 교육, 근로, 취약계층 지원정책으로 구성된다. 각 욕구부문별 지원프로그램들이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선정기준은 개별제도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각 욕구부문의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의 대상범위를 포괄하고 있는지,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인구)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생 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써,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생계급여의 대상은 소득인정액기준(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과 부양의무자기준을 둘 다 충족하는 빈곤계층이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본 내용은 이현주 외,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 보고서 2005-45)의 pp.691~741의 일부를 발췌하였음

(3)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003년도 기초보장생계급여 예산은 1조 3,130억원, 적용대상인구는 150만명으로 전인구의 3.1%에 해당하고, 실제 생계급여수급자는 2003년 현재 1,376,524명으로 인구대비 수급률은 2.9%이다. 2005년도 기초보장생계급여 예산은 1조6,742억원, 적용대상인구는 149만 5천명으로 전인구의 3.1%에 해당된다.

2. 의 료

가.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빈곤층과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좀더 정확하게는 빈곤층과 욕구를 가진 차상위계층, 기타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나뉘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특례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있다. 의료급여는 급여내용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의료급여종별 수급권자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2-9〉 의료급여 종별 수급권자 세부유형

	1종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특례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급여특례자 의료급여 특례대상자 가구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요청시 자활급여 특례자 의료급여 특례대상자 가구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가구원

	1종	2종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차상위의료급여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자)	- 차상위의료급여 수급권자(만성질환자, 12세미만아동)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보상자	

2003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17,617억원, 수급권자수는 145만 4천명으로 인구대비 수급률은 3.0%이다.

나. 건강보험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빈곤계층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은 의료급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차상위의료급여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2세미만아동)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은 건강보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에서는 생계곤란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제도 등을 통해 부분적인 저소득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경감지원대상은 소득이 없는 65세이상 노인, 모·부자가정, 소년가장세대, 만성질환, 장기수용으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이 7천만원 이하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화재, 부도, 경매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도서·벽지 지역주민, 농어촌 지역주민이다. 건강보험료 경감지원대상은 2005년 현재 178만 7천가구로 전체가구의 11.3%에 해당된다.

3. 주 거

가. 주거비보조

주거비 보조에는 주거급여와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 중 하나로 빈곤층 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은 특례수급자와 시설수급자, 1인 가구 무료 임차자와 주거 불안정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이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전세자금대출지원 프로그램에는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지원과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지원이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지원은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지원은 소득과 주택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지원 프로그램은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소득기준을 적용하는데, 4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환산하면 빈곤선의 220%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지원 프로그램 재정은 6,000억원, 적용대상은 30,000가구이다.

나. 공공임대

공공임대주택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임대주택을 말하며 거의 모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정 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 50년/5년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사원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다 .주택개량

자가가구를 지원하는 주택개량지원 프로그램에는 불량주택개선자금지원, 농어촌 주택개량자금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지원 등이 있다.

4. 교 육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 전승 차단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교육특례라는 형태로 차상위 계층에게도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가구가 선정되고 교육특례는 실제소득에서

중고등학생학비를 제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선정된다. 교육급여 적용 대상은 교육특례가구까지 고려했을 때, 빈곤선의 107%에 해당된다. 2005년 현재, 교육급여예산은 964억원, 적용대상자는 176,117명으로, 인구 대비 적용대상자의 비율은 0.4%, 중고등학생 대비 적용대상자 비율은 4.7%이다.

나.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보건복지가족부의 교육급여 이외에 교육비 지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교육급여를 제외하면,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농림부와 국가보훈처, 그리고 통일부의 지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저소득층을 교육급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지원이 해당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학비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와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비지원대상자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빈곤선의 120% 미만까지를 포괄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따라 그 이상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 자녀에게 학교운영지원비, 차상위층자녀에 대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농어업인의 자녀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적용대상은 29만 3천명으로 전인구의 0.61%, 전체 고등학생의 16.7%에 해당하며, 이 중 차상위층 자녀는 12만 4천명으로 전인구의 0.26%, 전체 고등학생의 6.8%에 해당된다. 교육지원예산은 2005년부터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다. 학교급식지원

학교급식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석식지원대상과 기초생활수급자등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시·도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대상자명단을 자치단체에 전달하여 소속 학교장에 통보하면, 통보된 명단에 학교장이 엄선한 대상자를 추가하여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다. 따라서 학교급식대상은 빈곤선의 100%를 포함하되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 등의 자유재량권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현재

학교급식비 지원예산은 953억원으로 국고 478억원, 지방비 475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원대상은 305,112명으로 전인구의 0.63%, 전체 초중고생의 3.9%에 해당된다.

라. 학자금융자지원

학자금융자지원은 저소득층 대학(원)생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등록금 상당액을 융자지원하고, 그 이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 주는 제도이다. 2004년 현재 학자금융자액은 7,700억원, 이차보전액은 912억원, 수혜인원은 30만 5천명으로 인구 대비 수급률은 0.63%, 전체 전문대 이상 대학(원)생 대비 수급률은 8.58%이다.

5. 근 로

가. 자활사업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내 사업으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된다.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로,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된다. 자활급여 특례자는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 촉진사업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로 희망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경우 자활·교육·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로 희망하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로 역시 희망하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005년도 자활사업 예산은 2,435억원으로 보건복지부예산 2,334억원, 노동부예산 101억원으로 구성된다.

나.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의 재정을 활용하는 제도로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할 때 이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중 취약집단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부 자활사업과 연계되어 차상위 근로빈곤층의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다.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은 IMF 이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한다.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가 해당된다. 2005년 예산은 1,623억원으로 분권교부세 499억, 지방비 1,124억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취약계층지원

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제공되는 장애수당은 빈곤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2003년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인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05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2005년 현재 장애수당예산은 897억원, 적용대상은 285천명이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은 빈곤가구 중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18세미만의 1급장애아동 보호자이다. 급여액은 2005년 현재 1인당 월50천원이며, 예산은 10억원, 적용대상은 3천명이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며,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2005년 현재 장애인 의료비 지원예산은 86억으로 적용대상은 130,138명이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은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교육기회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며 대상은 저소득층의 1급~3급 중고등학생 장애인이 있는 가구이다. 2005년 현재 예산 19억원, 적용대상은 4천명으로 전인구의 0.01%, 전국 중고등학생의 0.11%에 해당된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해서 사용된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정부의 재정용자 특별회계자금으로 이루어지는데, 2005년 현재 예산 150억원으로 되어 있다.

나. 노 인

경로연금은 1998년 전국민 연금제도 도입시 연령조건상(65세이상) 국민연금가입이 불가능한 노인에게 대한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65세 이상 노인과 1933. 7. 1 이전 출생저소득노인이 해당되며, 저소득노인은 소득, 재산 기준으로 선정된다. 2005년 현재 경로연금예산은 2,126억원, 적용대상자는 63만 2천명으로 기초보장수급자 36만 3천명, 기타 저소득노인은 26만 9천명이다.

노인교통수당은 1980년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로우대제에 기초하여 시작되었다. 1990년에는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70:30인 노인승차권지급제도로 전환되었다가 1994년에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되었다. 1996년에는 행정적인 문제와 승차권의 현금거래 문제등에 따라 현금지급으로 전환되었으며, 20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모두 교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03년 현재, 노인교통수당 예산은 4,609억원으로, 적용대상노인은 391만명이다. 2003년 현재 노인교통수당수급자는 389만 4천명으로 인구대비 수급률은 8.1%,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수급률은 99.6%에 달한다.

다. 아 동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은 다음과 같은 저소득층의 만0세~만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특례수급권자 포함)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4세 아동
-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05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지침』에 의거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책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의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완화하여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층을 포괄한다. 2005년 현재 예산은 1,250억원으로 22만 8천명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대상비율은 전인구의 0.47%이며, 전국 0~4세 아동의 9.0%에 해당한다.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보다 더 높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80% 이하가구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05년 지원 대상은 9만 5천명으로 전인구의 0.2%, 전국의 만5세아 중 15.5%에 해당한다.

라. 기 타

저소득모부자 가정지원은 저소득층이면서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한부모가정이란 사실상 혼자인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사용하는데, 2005년 현재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48만원 이하인 경우 선정될 수 있는 바, 소득인정액이 빈곤선의 130% 이하인 한부모가정까지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게는 자녀학비지원, 아동양육비지원, 복지자금대여, 영구임대주택 지원이 이루어진다.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는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빈곤층 소년소녀가장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18세 미만(출생일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로,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가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에 더해지는 부가급여로 2005년 1인 월70,000원

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후견인지정, 결연기관(한국복지재단)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등 정서적인 지원이 주어진다. 2003년 현재 소년소녀가정아동 보호 예산은 49 억원이며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6,184명으로 인구대비수급률은 0.01%, 소년소녀가정 아동 대비 수급률은 100%이다.

제 3 절 복지통신제도

1.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

가. 2000년 요금감면제도 도입

우리나라는 2000년 시내전화 및 공중전화등에 대한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제도도 도입하였다. 요금감면 대상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2조 2항)에 규정하고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재원은 사업자 자체부담으로 조달하도록 하였다.

- 시내·시외전화: KT,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온세텔레콤, SK텔링크
-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 SKT, KTF, LGT
- 번호안내(114): KT, SKT, KTF, LGT
- 무선호출: 리얼텔레콤

감면적용 대상자는 개인인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고 단체는 장애인 단체·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단체이다. 단, 기초생활 수급자는 18세미만이거나 65세이상, 중증장애인, 질병·부상자(3개월 이상 요양) 및 근로곤란자에게 한정한다.

감면요율은 서비스별로 월 이용요금의 30~50%를 감면하는데, 유선전화는 가구당 1회선, 이동전화·무선호출은 개인별 1회선 감면한다. 장애인복지 단체, 아동복지시설 등 단체는 2회선으로 한정한다.

〈표 2-10〉 통신요금 감면대상자(가구 및 개인) 요건 및 감면율

구 분	요 건	감면율
저소득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 질병·부상자(3개월 이상 요양) - 근로곤란자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통화 75도수(225분) 감면 • 시외전화: 75도수(225분) 감면 • 번호안내(114): 안내요금 면제 •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기본료, 음성통화료 및 데이터통화료 35% 감면 • 무선폭출: 기본료 30%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1~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 시외전화: 3만원 한도내 50% 감면 • (그외 서비스는 저소득층과 동일)
국가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과 동일)

주: 한도 도수/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상요금 부과

나. 요금감면제도 개정 경과

- '05년 12월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기준 상한(월 소득평가액 14만원)을 폐지
- '07년 1월 초고속인터넷을 요금감면대상 서비스에 포함
 - 해당사업자는 KT,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LG파워콤,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SK네트웍스, 106개 지역케이블TV SO 등
 - 월 이용료의 30%를 할인해 주고, 가구당 1회선으로 한정
-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가 '05년 330만명에서 '07년 390만명으로 증가
- '08년 10월 1일부터 이동전화요금감면서비스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및 가구로 확대하고 감면율도 높임(첨부1 참조)
 - 대상범위를 18세미만, 65세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감면율을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감면에서 기본료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유선전화 수준)으로 높이고, 차상위계층은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 수준)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며, 아래의 7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와 그 가구원이면 감면대상자이 된다. 차상위계층은 만 6세 이하인 가구원을 제외하고, 가구당 4인 한도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을 받는 경우(차상위 1종)
의료급여법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차상위 2종)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0~4세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받는 경우(2층)
유아교육법에 따라 3~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받는 경우(2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통사 대리점 및 지점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그 때부터 통신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건강보험공단(지사포함)에서 발급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를 이통사에 제출하면 된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3, 4세 차등교육비 지급대상자는 유치원에서 발급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유아교육비 지원신청 관련 소득인정액 증명서”(사본),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를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이통사에 제출하면 된다(유치원 발급은 11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시행 전에는 지역 교육청에서 증명서 발급, 교육청증명서는 소득인정액증명서 불필요).

차상위 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 다만, 차상위계층의 가구원인 경우는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나 대리점에 비치된 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증명서 및 신분증과 함께 이통사 대리점 및 지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이며, 차상위계층은 감면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차상위자의 정보이용 동의서이다. 단 건강보험공단 및 유치원 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등본, 유아교육비 지원신청 관련 소득인정액 증명서(유치원만 해당)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는 방통위 홈페이지와 이통사 대리점에서도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매년 1년 후에 수급자 증명서를 이통사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층 혜택의 경우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중복 해당자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대상으로 이통사에 신청하면 감면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가족의 인정 범위는 소득인정액 조사 당시 가구원이면서 2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에 한함)로 한정된다. 전체 이통사 포함하여 본인 명의 1회선만 가능하다.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요금감면 대상자들에 대한 홍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8년 10월부터 실시되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 확대는 세계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원제도이다. 즉, 우리나라는 이동전화서비스를 보편적서비스에 포함시킨 유일한 국가이다.

제 4 절 외국의 저소득층 요금감면제도

1. 미 국

미국의 통신요금 할인제도는 FCC의 보편적서비스제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FCC의 보편적서비스에는 저소득층 지원(Low Income Support), 고비용지역 지원(High

Cost Support), 학교·도서관 지원 및 시골 의료기관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요금할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의 개요

FCC의 보편적서비스에 포함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는 Lifeline Support와 Link up America이 있다. 이 제도들은 원칙적으로 FCC와 주정부의 매칭펀드(Matching fund) 형식으로 운영되나, 개별적으로 주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연방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모든 적격사업자(ETC)는 Lifeline Support와 Link up America를 고객에게 홍보하고 제공할 의무가 있다. FCC의 재원은 장거리사업자로부터, 주정부의 재원은 시내전화사업자, 일반조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성된다. 2000년에는 인디언 보호구역까지 Lifeline과 Link Up 프로그램을 적용 확대하였으며, 2004년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격 범위의 확대를 위한 고시(Order)를 공포하였다.

Lifeline Support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 대해 보편적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요금할인제도이며 198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Lifeline Support의 종류는 4가지이다.

- Tier1은 가입자회선요금(SLC: Subscriber Line Charge)을 면제해 주는 제도
- Tier2는 주정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월 \$1.75를 연방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현재 50개 주 모두 시행)
- Tier3는 주정부 고유의 Lifeline/Link Up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연방정부차원에서 그 주의 적격자들에게 주 정부 차원의 감면 금액의 50%(월 최대 \$1.75)를 지원하는 제도
- Tier4는 인디언 보호구역 내의 인디언들에게는 최대 \$25까지 추가적으로 시내전화 요금의 감면을 제공하는 제도(최소한 \$1는 납부하도록 함)

Link up America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구들의 전화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화서비스 최초 가입에 대해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1987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세 가지 종류가 있다.

- 최초 가입비의 50%를 최대 \$3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 연방정부가 이자비용을 부담해주고 1년 이상의 기간동안 \$200까지 지불유예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 인디언 보호구역 거주자(Tribal)의 경우 추가 최대 \$70의 지원을 통해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

Lifeline Support와 Link up America의 수혜조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와 제공하지 않는 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인디언보호구역의 거주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저소득층 지원(Low Income Support)을 제공하는 주의 경우 주별 적격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가입자가 수혜 대상이 되며, 주위원회는 소득 혹은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요인들을 근거로 그 기준을 명시해야 하며, 인디언 보호구역이 포함된 주는 인디언들에게 합리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저소득층 지원제도를 제공하지 않는 주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소득이 Federal Poverty Guidelines 수준의 135%보다 낮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7가지 연방 정부 프로그램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인디언 보호구역 거주자가 Lifeline Support를 제공하는 주에 거주하는 경우 그 주의 기준에 포함되거나, 가구 소득이 Federal Poverty Guidelines 수준 혹은 그 135% 이내임을 증명하거나, 7가지 연방 정부 프로그램 중 한 가지 혜택을 받는 것을 증명하거나, 3가지 연방 정부 지원프로그램⁵⁾ 중 하나의 혜택을 받는 것을 증명하면 자격요건이 된다.

2. 호 주

호주 정부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지원을 위해 2002년부터 2005년 7월 까지 Low-Income Measures Assessment Committee를 구성하여 Telstra와 저소득층을 위한

4) Medicaid, Food Stamps,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Federal Public Housing Assistance, The 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The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s Free Lunch Program,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5) Bureau of Indian Affairs General Assistance, Tribally-Administered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Head Start meeting the income-qualifying standard

요금제도를 협의한 결과, Telstra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Access for Everyone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Access for Everyone 프로그램은 HomeLine@Budget 요금제, BudgetPay, CentrePay 등으로 구성된다.

〈표 2-11〉 Access for Everyone⁶⁾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구성 항목	서비스 내용	
BudgetPay	전화요금의 12개월 또는 격주 분납	
CentrePay	요금 통합납부시 2주당 최소 AUD 20.00 할인	
HomeLine@ Budget	기본요금	AUD 19.95
	유선 착신	¢ 30/분
	Call Connection fee	¢ 39/1통화
	무선 착신	착신이 Telstra Mobile일 경우, ¢ 37/분그 외 착신 ¢ 42/분

3. 영 국

가. 기존의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요금제

저소득층을 위한 BT(British Telecom) 유선전화의 현행 특별요금제(Special tariff scheme)에는 소량이용자 요금제(LUS: Light user scheme)와 IC(In Contact) Plus 요금제⁷⁾가 있다.

소량이용자 요금제(LUS: Light user scheme)는 IC Plus 요금제와 함께 저소득층을 포함한 사회적 보호계층의 통신비 지출을 조절하고, 이용가능성과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BT는 1993년부터 소량이용자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소량이용자 요금제는 다음과 같은 분기별 사용 통화료를 기준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한다.

6) www.telstra.com.au/accessforeveryone/index.htm

7) BT Price List(<http://www.serviceview.bt.com>)와 BT(2006.9) In Contact Plus 참조

〈표 2-12〉 LUS 가입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BT의 사용 통화료 기준

구분	요금자동납부제 또는 월별요금납부제 이용자		다른 납부 방법 이용자	
	분기 사용 통화료	월 사용 통화료	분기 사용 통화료	월 사용 통화료
소량이용자 요금제 가입 가능 조건	₩ 12.39이하	₩ 4.13이하	₩ 12.39이하	₩ 4.13이하
소량이용자 요금제 배제 조건	₩ 18.57초과시	₩ 6.19초과시	₩ 18.57초과시	₩ 6.19초과시

자료: BT Price List(<http://www.serviceview.bt.com>)

주: 부가세 제외

〈표 2-13〉 BT의 현행 소량이용자 요금제 가입기준

가입가능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네 분기 중 세 분기간의 분기 사용 통화료가 기준(Joining Threshold)을 초과하지 않는 기존 고객 - 환경변화에 따라 통화료가 진입 조건을 초과하지만, 향후 3분기간의 통화료가 진입 조건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확실하는 기존 고객 - 향후 세 분기간의 통화료가 진입 조건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신규 고객
가입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사업자 전화서비스 가입 고객 - 휴대전화이용 고객 - 기존에 1회선 이상 보유한 고객 - 착신금지회선 보유 고객(예. 발신전용회선) - 독립적인 경비서비스(burglar alarm 또는 monitoring device) 사용 고객 - 임시서비스 고객 - 공유회선 서비스 고객 - BT의 Res. Official 회선 보유 고객 - 공중전화 보유 고객 - ADSL, ISDN 또는 사업용 회선 보유 고객 - 다른 옵션 요금제 이용 고객 - PBX 이용 고객 - BT의 다음과 같은 요금제 이용고객: BT Bill Direct, BT Together, BT Working Together, BT Together-Local Call Option, PS수 Split line voice service, BT Together Option1, BT Together Option2, BT Together Option3, BT Basic

자료: BT(2008.11), Light User Scheme

주: 이전 네 분기 중 세 분기의 통화료가 가입배제조건을 초과하면, 소량이용자 요금제는 자동 해지되고, BT Together Option1 요금제로 자동 전환

〈표 2-14〉 BT의 현행 소량이용자 요금제 요금

구분	내용			
기본료	- 분기당 £ 30.6			
	- 분기당 사용 통화료가 £ 0~11.02이면, 부과된 10p당 9.5p 환급			
	- 분기당 사용 통화료가 £ 11.03~18.57이면, £ 10.18 환급			
	- 분기당 사용 통화료에 따른 환급액 예시			
		분기당 사용 통화료	환급	
		£ 0.00	£ 20.93	
		£ 5.00	£ 16.18	
	£ 10.00	£ 11.43		
	£ 15.00	£ 10.18		
	£ 20.00	£ 0.00		
통화료	분당 통화료	주간	야간	주말
	National	6.73p	3.37p	1.36p
	Local	3.37p	0.85p	0.85p
	* 통화당 2.55p의 set-up비 부과			

자료: BT(2008. 11), Light User Scheme

주: 1. 모든 요금 부가세 제외

2. 분기당 사용 통화료가 £ 18.57 초과시, BT Together Option1 요금제 청구

BT의 IC(In Contact) Plus 요금제⁸⁾는 착신과 긴급통신이 가능한 요금제이다. 현행 IC Plus 요금제는 £ 8.50(이하 모두 부가세 제외)의 가입비와 분기당 £ 9.33의 기본료를 지불하면 착신과 일부 번호에 한정된 발신이 가능하다. 한정된 일부 번호는 긴급서비스를 위한 999와 112, BT의 고객센터(150)와 고장신고(151), 무료번호대역인 0500과 0800, 0808 등, Ring Me Free Card를 제공한 사람의 번호, 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 번호 등이다. IC Plus 가입자는 BT IC Card 구입시 한정된 번호 이외의 발신이 가능하다. BT IC Card 구입을 통한 LL(local and national numbers) 통화시 2.55p의 통화설정료(set-up charge)가 부과되며, 분당 8.51p의 통화료가 부과된

8) BT Price List(<http://www.serviceview.bt.com>)와 BT(2006. 9) In Contact Plus 참조

다. 이동전화착신호(LM)와 특정요금이 부과되는 번호에도 통화가 가능하지만, 착신지에 따라 서로 다른 요금이 적용된다.

나. 저소득층을 위한 신규 유선전화 요금제

영국의 Ofcom과의 협력하에 BT(British Telecom)는 2008년 10월 저소득층의 유선전화 사용을 위한 저가 전화요금제인 BT Basic을 새로이 출시하였다. BT Basic은 요금이 저렴하여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기존의 저가 요금제인 Light User Scheme과 In Contact Plus 요금제를 대체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다. 기존의 Light User Scheme과 In Contact Plus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는 BT Basic 요금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모든 사람이 BT Basic 요금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BT Basic 요금제를 신청할 수 있다.

Ofcom이 BT와 함께 BT Basic 요금제를 개발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두 요금제가 저소득층보다는 소량 사용자들을 위한 요금제로 판단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제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BT Basic 요금제를 출시하게 되었다. BT Basic은 3개월에 £13.50을 내는 상품인데, 기본적으로 £4.50 무료전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BT고객과 새로운 고객들 중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 저가 상품인 만큼 가입에는 자격제한이 있어, Income Support를 받는 고객, Income-based Job Seekers Allowance, Pension Credit⁹⁾을 받는 고객들이 가입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고객들은 어떠한 지불수단으로도 지불할 수 있으며, 다른 요금제들과는 달리 직불카드로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가 부담은 없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4.50의 무료통화에는 시내, 장거리, 국제전화가 포함되며 다음의 표에서 설명한 무료통화제외 대상은 제외된다. 만약 £4.50의 무료 한도를 초과하면, 모든 영국 내 전화에 대해서 분당 10p(콜당 3p 추가)를 지불해야 한다.

9) <표 2-15>에 별도 설명

〈표 2-15〉 BT Basic 요금제의 내용

요금	- £13.50/3개월(£4.50의 무료통화 포함)이며, 무료통화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분당 10p(콜당 3p추가) 부담
요금 지불 주기	- 3개월마다
가입대상자	- Income Support(16~60세의 직업이 없는 저소득층 및 장애 또는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이유로 직업을 가지지 못한 저소득층 지원 제도) 받는 사람 - 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구직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낮을 경우 정부 지원 받는 제도) 받는 사람 - Guaranteed Pension Credit(공적연금제도) 받는 사람
무료통화 제외대상	- 채널아일랜드로의 통화(The Channel Islands) - 유료전화번호로의 통화(Premium-rate numbers: TV show나 채팅 같은 번호로의 통화) - 인터넷 사용 - 이동전화로의 통화(Mobile Phones) - 0845 또는 0870 번호로의 통화
무료통화한도의 이월 여부	- 3개월간 사용하고 남은 무료통화 한도는 다음 3개월로 이월 불가

4. 요금감면제도 운영사례

가. OECD 국가

ITU의 BDT Country Profile에 의하면 일부 OECD 국가에는 원가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요금감면제도가 존재하는 데, 이는 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우, 농촌지역에 대한 요금감면이다. 대부분 시장지배적 유선전화사업자에 대한 의무부과이며 유선전화서비스에 한정한다.

〈표 2-16〉 OECD 국가의 통신요금감면제도 현황

국가명	내용
벨기에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원가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요금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캐나다	일부 부가서비스(무료 번호표시제한서비스 등)

국가명	내용
체코	장애우, 저소득층 및 특별 이용목적을 가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제 운영
덴마크	보편적서비스제공의무의 일환으로 장애우를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제 운영
프랑스	요금감면제 운영
아일랜드	요금감면제 운영
멕시코	특정지역에 대해 최저 공익서비스 요금 부과
뉴질랜드	Telecom New Zealand는 농촌지역의 주거용 가입자 기본료가 표준 주거 가입자의 기본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기본료 산정할 의무가 있음(이때 발생하는 손실은 PSTN망과 연동된 다른 망사업자들과 함께 분담)
스페인	보편적서비스는 적정가격(affordable cost)으로 설정
영국	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할인요금(특별 요금제) 등 부과. 이러한 요금제는 원가이하일 것임
미국	저소득층 요금 감면: 적정 통신사업자에게 저소득층에 대한 lifeline(통화요금 감면)과 Link-up(설치비용 등 감면) 할인요금 적용 의무화

출처: [http://www.itu.int/ITU-D/icteye/Reports.aspx#\(ITU, BDT Country Profile, 2008\)](http://www.itu.int/ITU-D/icteye/Reports.aspx#(ITU, BDT Country Profile, 2008))

나. 비 OECD 국가

ITU의 BDT Country Profile에 의하면 대부분의 비 OECD 국가에는 원가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요금감면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국가에서만 요금규제나 보조금을 통한 농촌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 시장지배적 유선전화사업자에 대한 의무부과이며 유선전화서비스에 한정된다.

〈표 2-17〉 비 OECD 국가의 통신요금감면제도 현황

국가명	내용
칠레	경쟁상황과 해당 지역에서의 이용자의 능력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라 결정됨
콜롬비아	1, 2, 및 3계층(저소득층을 의미하는 듯)에게 각각 요금의 50%, 40% 및 25% 까지 보조금 지급
인도	농촌지역의 유선전화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규제
라트비아	유선전화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는 기본료가 표준보다 낮은 지역에 사회적 패키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국가명	내용
슬로베니아	유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입비를 인상할 수 없음
베네주엘라	통신규제기관인 CONATEL이 모든 사업자의 최저 및 최고 요금을 규제

출처: [http://www.itu.int/ITU-D/icteye/Reports.aspx#\(ITU, BDT Country Profile, 2008\)](http://www.itu.int/ITU-D/icteye/Reports.aspx#(ITU, BDT Country Profile, 2008))

5. 우리나라와 외국의 복지통신 범위 및 규모 비교

국내의 복지통신 범위가 제외국에 비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통신요금감면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제외국에서는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감면제도만 존재한다. 인구 수 대비 감면자수 및 감면금액에 있어서도 제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표 2-18〉 우리나라와 외국의 복지통신 범위 및 규모 비교

국가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복지통신 요금감면 서비스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유선전화	유선전화	유선전화	유선전화
	기본료, 가입비, 통화료	기본료, 가입비	기본료, 가입비, 통화료	기본료	기본료	기본료, 가입비
요금감면 대상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아동시설	저소득층	저소득층	저소득층	저소득층, 장애인	저소득층
감면자수	406만명	860만명	120만명	72만명	N/A	53만회선
인구수	4,810만명	30,390만명	6,000만명	6,090만명	5,820만명	4,360만명
감면자수 비율	8.4%	2.8%	2%	1.2%	N/A	1.3%
제공사업자	관련 서비스 제공사업자 (KT, SKT, KTF, LGT, SK브로드밴 드, LG테이콤)	다수의 적격사업자	BT	FT	TI	Telefonica

국가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손실금 분담	제공사업자들의 자체분담	보편역무 분담사업자	보편역무 분담사업자	보편역무 분담사업자	보편역무 분담사업자	보편역무 분담사업자	
손실금	현황	3,571억원 (2007)	\$808m (2006)	£19~23m (2003/04)	€ 36.3m (2006)	€ 3.8m (2002)	€ 70.423m (2002)
	PPP	3,571억원	5,317억원	238~288억원	277억원	36억원	738억원

출처: 미국 USAC, 2007, 프랑스, Arcep, Annual Report, 2008

제 3 장 보편적서비스 기금

제 1 절 별도 보편적서비스 기금 운영 현황

1. OECD 국가

ITU-D를 통하여 조사한 OECD 회원국 28개국 중, 10개국에서 별도의 보편적서비스 기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아래 <표 3-1> 참조) 이 중 체코의 경우 별도의 기금운영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보편 손실 분담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보편적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금을 매년 단위로 산정하고 보편제공의무 사업자가 보편손실부담금을 분담하는 가상적 기금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별도의 보편적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대부분 기금은 통신사업자의 수입의 일부를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금의 운영은 통신규제기관이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의 중앙기금관리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운영하거나 또는 보편적서비스 기금에서 설립한 별도 협회,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은 별도의 보편적서비스기금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 보편적서비스 제공대상: OECD

국가명	보편적 서비스	비고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전화: 주거용, 유선전화: 공중전화, 팩스, 다이얼업 인터넷접속, 비상전화, 장애우 또는 노약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 전화번호부 서비스(이하 “대표적 보편서비스”라고 칭함) - 기타: 유선전화 기업용도 포함 	

국가명	보편적 서비스	비고
오스트리아	- 상동	
벨기에	- 상동	기업제외
캐나다	- 유선전화: 주거용, 다이얼업 인터넷접속, 비상전화, 장애우 또는 노약자에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 전화번호부 서비스	
체코	- 유선전화: 주거용, 유선전화: 공중전화, 팩스, 비상전화, 장애우 또는 노약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 전화번호부 서비스 - 기타: 공중전화 등 포함	
덴마크	- 유선전화: 주거용, 비상전화, 장애우 또는 노약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 전화번호부 서비스 - 기타: ISDN과 전용회선(2Mbits 이하) 등 포함	
핀란드	- 유선전화: 주거용, 개인 이동전화서비스, 팩스, 비상전화, 전화번호부 서비스	
프랑스	- 대표적 보편서비스	
독일	- 유선전화: 주거용, 유선전화: 공중전화, 팩스, 다이얼업 인터넷접속, 비상전화, 전화번호부 서비스 - 기타: 인쇄된 전화번호부 서비스	
그리스	NA	
헝가리	- 대표적 보편서비스	
아이슬란드	- 전화서비스에 대한 이용가능성, 기본 전화, 팩스, 데이터 전송, 비상전화 서비스, 장애우 또는 노약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서비스 - 기타: 비상용 교환기	
아일랜드	- 유선전화: 주거용, 유선전화: 공중전화, 팩스, 다이얼업 인터넷접속, 장애우 또는 노약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 전화번호부 서비스 - 기타: affordability	
이탈리아	- 전화서비스에 대한 이용가능성, 기본 전화, 팩스, 데이터 전송, 비상전화 서비스, 장애우 또는 노약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서비스 - 기타: 공중전화, 전호번호부	
일본	- 유선전화: 주거용, 유선전화: 공중전화, 비상전화 서비스	
한국	- 유선전화: 주거용, 유선전화: 공중전화, 비상전화 서비스, 장애우 또는 노약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서비스	
룩셈부르크	- 유선전화: 주거용, 유선전화: 공중전화, 팩스, 비상전화, 전화번호부 서비스	
멕시코	- 유선전화: 주거용, 유선전화: 공중전화, 이동전화: 공중전화 - 기타: Telecentres	
네덜란드	- 유선전화: 주거용, 유선전화: 공중전화, 다이얼업 인터넷접속, 비상전화 서비스, 전화번호부 서비스	

국가명	보편적 서비스	비고
뉴질랜드	- 유선전화: 주거용, 팩스, 다이얼업 인터넷접속, 비상전화 서비스, 장애우 또는 노약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 전화번호부 서비스 - 기타 서비스 있음	
노르웨이	- 유선전화: 주거용, 유선전화: 공중전화, 팩스, 장애우 또는 노약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 전화번호부 서비스 - 기타: 전용회선(최소단위 세트)	
폴란드	- 대표적 보편서비스 - 기타: 가입자회선의 유지보수	
포르투갈	- 유선전화: 주거용, 팩스, 다이얼업 인터넷접속, 비상전화 서비스, 장애우 또는 노약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 전화번호부 서비스	
슬로바키아	- 유선전화: 주거용, 팩스, 다이얼업 인터넷접속, 비상전화 서비스 - 기타: EU 지침서	
스페인	- 유선전화: 주거용, 유선전화(공중전화), 팩스, 비상전화 서비스, 장애우 또는 노약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 전화번호부 서비스 - 기타: 기능적 인터넷 접속(functional internet access)	
스웨덴	- 유선전화: 주거용	
스위스	- 유선전화(주거용), 유선전화(공중전화), 팩스, 다이얼업 인터넷 접속, 광대역, 비상전화 서비스, 장애우 또는 노약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	
터키	- 유선전화(주거용), 유선전화(공중전화), 팩스, 다이얼업 인터넷접속, Telecentres, 비상전화 서비스, 장애우 또는 노약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 전화번호부 서비스	
영국	- 유선전화(주거용), 유선전화(공중전화), 팩스, 다이얼업 인터넷접속, 비상전화 서비스, 장애우 또는 노약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 전화번호부 서비스 - 기타: 공중전화와 기능적 인터넷접속 제공에 필요한 요건(?)	
미국	- 유선전화, 특수번호, 번호안내, 교환원서비스, 도서관·학교·병원 등에 대한 초고속 인터넷	

출처: [http://www.itu.int/ITU-D/icteye/Reports.aspx#\(ITU, BDT Country Profile, 2008\)](http://www.itu.int/ITU-D/icteye/Reports.aspx#(ITU, BDT Country Profile, 2008))

〈표 3-2〉 별도의 보편적서비스 기금 운영 국가: OECD

국가명	기금 출연의무 사업자	재원조달방식	기금운영 주체	비고
호주	모든 통신사업자	보편적서비스제공의무에 따른 보조금 규모를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행정적으로 산정	통신규제기관	손실 분담금

국가명	기금 출연의무 사업자	재원조달방식	기금운영 주체	비고
캐나다	매출액 \$10million 이상의 망 사업자	순수입의 1.1%	중앙기금 관리기관	
체코	모든 통신사업자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전체 보편분담금 배분(매년 보편서비스에 대한 손실분 재산정)	통신규제기관	손실 분담금
프랑스	모든 통신사업자 (모든 서비스기반 제공사업자 포함)	순수입의 0.09%	중앙기금 관리기관	
헝가리	연수입 1억 HUF(헝가리 포린트) 이상인 사업자	매출액을 토대로 장관이 결정	통신규제기관	
이탈리아	기존 유선사업자 SMP 보유 유/무선사업자	순수입의 일정비율(1% 미만)	통신부	
일본	적격 통신사업자	—	통신사업자연합회(보편기금 지원으로 설립)	
한국	모든 망/설비기반 사업자	순수입의 일정비율	정보통신부	손실 분담금
폴란드	모든 통신사업자 ※ 보편서비스에 따른 비용발생 입증시	순수입의 일정비율	통신규제기관	
터키	모든 통신사업자	순수입의 일정비율 1%	교통부	
미국	주간 또는 국경간 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장거리, 시내, 무선전화, 무선호출 등)	매출액의 일정비율	통신규제기관 (USAC 설립)	

출처: [http://www.itu.int/ITU-D/icteye/Reports.aspx#\(ITU, BDT Country Profile, 2008\)](http://www.itu.int/ITU-D/icteye/Reports.aspx#(ITU, BDT Country Profile, 2008))

2. 비 OECD 국가

〈표 3-3〉 보편적서비스 제공대상: 비 OECD

국가명	보편적 서비스	비고
아르헨티나	- 유선전화(주거용), 유선전화(공중전화), 다이얼업 인터넷접속, 비상전화 서비스, 장애인 또는 노약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 - 기타: 기타 포함 서비스 있음	
방글라데시	- 유선전화(주거용), 개인 이동전화서비스	
벨라루스	- 유선전화(주거용), 유선전화(공중전화), Telecentres	기업제외

국가명	보편적 서비스	비고
브라질	- 유선전화(주거용), 유선전화(공중전화), 인터넷, Telecentres, 장애인 또는 노약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 - 기타: ADSL	
칠레	- 산간오지 및 낙도, 빈곤지역을 대상으로 통신 서비스 제공	
중국	- 유선전화(주거용), 유선전화(공중전화), 개인 이동전화서비스, 이동 공중전화 서비스, 팩스, 다이얼업 인터넷접속, 비상전화 서비스	
콜롬비아	- 유선전화(주거용), 유선전화(공중전화), 팩스, Telecentres, 이동 공중전화 서비스, 장애인 또는 노약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서비스, 전화번호부 서비스	
이집트	- 유선전화(공중전화), 팩스, 다이얼업 인터넷접속, Telecentres, 비상전화서비스, 전화번호부 서비스	
인도	- 유선전화(주거용), 유선전화(공중전화), 개인 이동전화서비스, 이동 공중전화 서비스, 팩스, 다이얼업 인터넷접속 서비스,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0.125	
인도네시아	- 유선전화(공중전화)	
이스라엘	- 유선전화(주거용), 유선전화(공중전화), 개인 이동전화서비스, 비상전화 서비스	
케냐	- 유선전화(공중전화), 개인 이동전화서비스, 이동 공중전화서비스, 비상전화 서비스, 전화번호부 서비스	
라트비아	- 유선전화(주거용), 유선전화(공중전화), 팩스, 다이얼업 인터넷접속 서비스, 비상전화 서비스, 장애인 또는 노약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서비스, 전화번호부 서비스	
말레이시아	- 유선전화(주거용), 유선전화(공중전화), 팩스, 다이얼업 인터넷접속 서비스, 초고속 인터넷접속: 0.128	
몰타	- 유선전화(주거용), 유선전화(공중전화), 팩스, 다이얼업 인터넷접속 서비스, 비상전화 서비스, 장애인 또는 노약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서비스, 전화번호부 서비스	
몽골리아	- 유선전화(주거용), 유선전화(공중전화), 팩스, 다이얼업 인터넷접속 서비스, Telecentres, 비상전화 서비스	
모로코	- 유선전화(주거용), 유선전화(공중전화), 개인 이동전화서비스, 이동 공중전화서비스, 팩스, 다이얼업 인터넷접속서비스, 초고속인터넷, Telecentres, 비상전화 서비스, 전화번호부 서비스	
나이지리아	- 개인 이동전화서비스, 이동 공중전화서비스, 초고속인터넷, Telecentres, 비상전화 서비스	
파키스탄	- 유선전화(주거용), 유선전화(공중전화), 개인 이동전화서비스, 이동 공중전화서비스, 팩스, 다이얼업 인터넷접속서비스, 초고속인터넷, Telecentres, 비상전화 서비스, 장애인 또는 노약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서비스, 전화번호부 서비스	

국가명	보편적 서비스	비고
페루	- 유선전화(주거용), 유선전화(공중전화), 개인 이동전화서비스, 이동 공중전화서비스, 초고속인터넷접속:0.5, Telecentres	
필리핀	- 기본전화서비스	
루마니아	- 유선전화(주거용), 유선전화(공중전화), 팩스, 다이얼업 인터넷접속 서비스, Telecentres, 비상전화 서비스, 장애우 또는 노약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서비스, 전화번호부 서비스	
러시아	- 없음	
사우디	- 유선전화(주거용), 개인 이동전화서비스, 다이얼업 인터넷접속서비스, Telecentres, 비상전화 서비스, 전화번호부 서비스	
싱가폴	- 유선전화(주거용)	
슬로베니아	- 유선전화(주거용), 유선전화(공중전화), 팩스, 다이얼업 인터넷접속 서비스, 비상전화 서비스, 장애우 또는 노약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서비스, 전화번호부 서비스	
남아공	- 없음	
우크라이나	- 유선전화(주거용), 유선전화(공중전화), 팩스, 다이얼업 인터넷접속 서비스, Telecentres, 비상전화 서비스, 장애우 또는 노약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서비스	
UAE	- 없음	
베네주엘라	- 유선전화(공중전화), 다이얼업 인터넷접속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접속: 0.128, Telecentres, 장애우 또는 노약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 전화번호부 서비스	
베트남	- 유선전화(주거용), 유선전화(공중전화), Telecentres, 비상전화 서비스, 전화번호부 서비스	

출처: ITU, BDT Country Profile, 2008, <http://www.itu.int/ITU-D/icteye/Reports.aspx#>

ITU-D를 통하여 조사한 31개국 중 19개국에서 별도의 보편적서비스 기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 통신사업자 수입의 일부를 출연하는 방식으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충당하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기금은 대부분 통신규제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재무부나 총리실이 운영하고 있다. 다만 파키스탄은 유한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중국, 이스라엘, 케냐, 라트비아, 말타,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레이트는 별도의 보편적서비스기금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4〉 별도의 보편적서비스 기금 운영 국가: 비 OECD

국가명	기금 출연의무 사업자	재원조달방식	기금운영 주체
벨라루스	모든 통신사업자	총수입의 1.5%	통신정보부
브라질	통신사업자의 모든 가입자	가입자에게 부과된 요금의 순수입의 1%	통신규제기관
칠레	정부예산	정부예산의 2%(통신발전기금)	통신규제기관
콜롬비아	모든 통신사업자	장거리·이동사업자는 순수입의 5%, 부가사업자는 3%	통신부
이집트	유선 및 이동 사업자	총수입의 1%	통신규제기관
인도	모든 설비기반 사업자	순수입의 5%	USO 기금 관리기관
인도네시아	모든 설비기반사업자	총수입의 0.75%	재무부
말레이시아	연수입이 200만 링깃 이상인 면허사업자	순수입×사업자별 가중치	—
몽골리아	모든 사업자	기부, 원조 등	통신규제위원회
모로코	모든 사업자	순수입의 2%	총리
나이지리아	모든 사업자	총수입의 2.5%	통신규제기관
파키스탄	정부 및 모든 설비기반사업자	정부예산의 5~10%, 사업자총수입의 1.5%	USF 유한회사
페루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	총수입의 1%, 과징금, 재무부가 분배 하는 예산	통신규제기관
루마니아	연수입이 3백만 유로 이상인 사업자	총매출액 - 외국인이동전화착신접속 료 - 로밍수입	통신규제기관
사우디	모든 설비기반사업자	순수입의 일정비율	통신규제기관
슬로베니아	연수입이 2백만 유로 이상인 사업자	총수입의 일정비율	통신규제기관
남아공	모든 사업자(부가 포함)	순수입의 0.2%	US Agency
베네주엘라	모든 통신사업자	총수입의 1%	통신규제기관
베트남	모든 사업자, 정부예산, 외국원조	—	통신규제기관

출처: [http://www.itu.int/ITU-D/icteye/Reports.aspx#\(ITU, BDT Country Profile, 2008\)](http://www.itu.int/ITU-D/icteye/Reports.aspx#(ITU, BDT Country Profile, 2008))

제 2 절 해외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 기금제도

1. 미국의 보편적서비스 기금제도

가. 기금분담 사업자¹⁰⁾

1997년 FCC는 1996년 통신법에 명시된 보편적서비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보편적서비스 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1996년 통신법에서는 모든 통신사업자가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보편적서비스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간(inter-state)통신서비스와 국제(international)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는 연방 보편적서비스 기금을 분담해야 한다. 기금을 분담하는 사업자로는 유선과 이동통신사업자, 무선호출서비스사업자, VoIP 제공사업자¹¹⁾ 등이 포함된다. 분담사업자들은 분담금을 회수하기 위해 고객에게 직접 보편적서비스요금(universal service fee)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FCC가 규정한 사항은 아니며 분담사업자가 부과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부과를 결정한 경우라도 사업자는 보편적서비스 기금의 분담금을 초과하여 보편적서비스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나. 기금분담 기준¹²⁾

통신사업자는 주간통신서비스와 국제통신서비스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보편적서비스 기금으로 분담해야한다. 여기서 일정비율을 분담지수(contribution factor)라고 하는데, 보편적서비스별 필요 금액에 따라 분기마다 분담지수를 변경한다.

분담지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먼저 USAC(Universal Service Administrative

10) FCC(2006. 7), USAC 홈페이지 “Purpose of the Universal Service Fund”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11) FCC는 2006년 6월 27일 당년 4분기부터 적용될 “The second interim contribution methodology order”에서 VoIP서비스 제공사업자를 보편적서비스 기금분담사업자에 포함시킴(자세한 사항은 FCC News, 2006. 7 참조)

12) FCC(2006. 7), FCC(2007. 9), USAC 홈페이지 “Purpose of the Universal Service Fund”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Company)이 관련 법률(47 C.F.R. § 54.709(a)(3))에 따라 다음 분기의 보편적서비스 예상 지출액 및 관리비용 등을 다음 분기 시작 60일 전¹³⁾에 FCC에 제출 한다. 또한 USAC(Universal Service Administrative Company)은 분담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¹⁴⁾를 바탕으로 다음 분기의 분담사업자들의 주간과 국제서통신서비스의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고, 예상 분담지수를 함께 FCC에 제출¹⁵⁾한다.

다음으로 FCC가 USAC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수행하고, 분담지수와 할인지수(Circularity Factor)¹⁶⁾를 결정한다.¹⁷⁾

월 분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¹⁸⁾

- 다음 분기의 예상 주간 및 국제 통신서비스의 매출 = 매출기준(revenue base)
- 매출기준 × 분담지수 = 조정전 분담금
- 조정전 분담금 × 할인지수 = 할인차감액
- 조정전 분담금 - 할인차감액 = 다음분기 총 분담금
- 다음분기 총 분담금 ÷ 3 = 월 분담금

결정된 분담지수를 바탕으로 각 분담사업자들은 월 분담금을 산정하며, 그들의 고객으로부터 분담금을 회수하는 분담사업들은 고객 청구서에 이를 적용한다.

13) 1분기 자료는 전년 11월 2일, 2분기는 1월 31일, 3분기는 5월 2일, 4분기는 8월 2일까지 제출함

14) 분담사업자들은 정해진 양식(Telecommunications Reporting Worksheets)에 따라, 매 분기마다 Form 499-Q를 2월과 5월, 8월, 11월 1일에 제출해야 하며, 매년 4월 1일에 499-A를 제출해야 함

15) 분담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3월 2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2일까지 FCC에 제출함

16) 할인지수는 다음 분기의 분담금을 근접시키기 위한 지수이며 할인지수를 적용하여 분담금의 일정부분을 차감함. 할인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text{할인지수} = 1 - \frac{(\text{분담사업자의 예상매출} - \text{보편적서비스 예상지출액})}{\text{분담사업자의 예상매출}}$$

17) 일반적으로 FCC는 분담지수를 다음분기 시작 전월의 2일과 15일 사이에 발표함 (예를 들면, 1분기에 적용될 분담지수는 12월 2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발표)

18) USAC 홈페이지 Invoice and Billing Procedures 참고

USAC은 모든 분담사업자에게 분기 시작 후 15일¹⁹⁾이내에 청구서를 발송한다. 분담사업자는 매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달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청구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다음 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 기금운영²⁰⁾

FCC는 보편적서비스기금과 보편적서비스 제공 메커니즘 관리자로 비영리기관인 USAC를 지정하였다. USAC는 각 보편적서비스 역무를 관리하고, 분담금의 청구와 수금, 지급을 수행하고, 보편적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보고서를 FCC에 분기별로 제출한다.

라. 지원 프로그램 및 기금규모

□ 개 요

미국의 보편적서비스 프로그램은 고비용지역 지원(High Cost Support)과 저소득층 지원(Low Income Support), 학교 및 도서관(School & Library)지원 및 시골 의료기관(Rural Health Care)지원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보편적서비스 기금 유입액과 프로그램별 유출액은 다음과 같다.

<표 3-5> 미국의 2000~2005년 보편적서비스 기금 유입액과 유출액
(단위: 십억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유입액(Receipts)	4.5	5.2	5.4	5.7	6.4	7.0
유출액(Outlays)						
－ High-Income	1.9	2.6	2.8	3.3	3.4	3.8
－ Low-Income	0.5	0.6	0.7	0.7	0.8	0.8
－ Schools&Library	1.6	1.7	1.6	1.6	1.5	1.7
－ Rural Health Care	*	*	*	*	*	*
유출액 합계	4.0	4.9	5.1	5.6	5.7	6.3

*: \$5천만 이하

자료: Marron(2006)

19) 1분기는 1월 15일, 2분기는 4월 15일, 3분기는 6월 15일, 4분기는 9월 15일까지 청구서를 발송

20) FCC(2007. 9), USAC(2007. 7)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보편적서비스기금의 유입액과 유출액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보편적서비스 기금의 유입액은 \$45억에서 \$70억로 증가한 반면에 유출액은 \$40억에서 \$63억로 증가하였다.

2000년~2005년 사이의 보편적서비스 기금 유출액 증가분의 83%는 고비용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한 것이었다. 대략 \$23억 증가 중 \$19억이 고비용지원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고비용지원 제도의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²¹⁾

첫째, 새롭게 시골지역의 통신서비스 시장에 진입한 경쟁통신사업자인 이동전화 사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의 규모가 증가하여 유출액이 커졌다. 2003년 이래로 증가한 지원금의 94% 정도가 경쟁사업자에게 지원되었다.

둘째, 초기의 지원금 규모의 증가는 1996년 통신법이 규정한 회계변경 때문이었다. 1996년 통신법은 장거리 전화나 다른 통신서비스의 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보편적서비스 부담금을 보편적 서비스 기금에서 지불하는 형식으로 규제기관이 바꾸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 기금의 유출액이 증가하였다.

□ 고비용 프로그램(High Cost Program)

고비용 프로그램은 모든 지역의 이용자들이 도시 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비교하여 통신서비스의 접속과 합리적인 요금을 지불하도록 보증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어떤 지역의 거주자들이 밀집 지역, 적은 인구, 통신네트워크 구축 시 높은 고정비용 때문에 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USAC는 미국 전역의 통신 사업자에게 연간 \$400만 이상 제공하는 고비용 프로그램(High Cost Program)의 5가지 요소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유지, 지원 계획 및 지급 책임이 있다. 주요 관계자로는 농어촌 지역 및 비 농어촌 지역의 기존 사업자,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 지역에서 가입자회선(customer line)을 제공하는 경쟁 사업자가 있으며, 아울러 주 규제기관, 통신 컨설턴트, 입법자, 연방 정부 기관도 주요 관련 당사자이다.

21) Marron(2006) 인용

지원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 Step 1: Understand What is Supported
- Step 2: Determine Eligibility
- Step 3: Obtain a USAC Service Provider ID Number
- Step 4: Filing Requirements
- Step 5: File Line Count Data
- Step 6: File Certifications
- Step 7: Report Revenue(Form 499)

고비용 프로그램의 세부 프로그램별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Type of Support	Rural or Non-Rural?	Price Cap or Rate-of Return Carrier?	Is it capped?	Subject to True-Up Process?	Subject to ILEC Disaggregation Plans?
High Cost Loop Support	Rural	Price Cap and Rate-of-Return	Yes	No	Yes
High Cost Model Support	Non-Rural Only	Mostly Price Cap	No	No	No. Data at wire center level.
Interstate Access Support	Mostly Non-Rural; few Rural	Price Cap Only	No	Yes. Quarterly reconciliation.	No. Data at UNE Zone level.
Interstate Common Line Support	Mostly Rural; few Non-Rural	Rate-of-Return Only	No	Yes	Yes
Local Switching Support	Rural Only	Mostly Rate-of-Return; few Price Cap	No	Yes	Yes
Safety Net Additive Support	Rural	Price Cap and Rate-of-Return	Yes	No	Yes
Safety Valve Support	Rural	Price Cap and Rate-of-Return	Yes	No	Yes

고비용지원에 의한 세부 프로그램별 기금 지급 내역과 추이는 다음과 같다.

〈표 3-6〉 연도별 고비용지원을 위한 기금 지급 내역

(단위: 백만달러)

Year	High-Cost Loop Support	Safety Net Additive Support	Safety Valve Support	High-Cost Model Support	Long-Term Support	Interstate Common Line Support	Interstate Access Support	Local Switching Support	Total support
1986	\$56	—	—	—					\$56
1987	126	—	—	—					126
1988	183	—	—	—					183
1989	265	—	—	—	\$236				500
1990	339	—	—	—	263				602
1991	485	—	—	—	272				757
1992	609	—	—	—	306				915
1993	705	—	—	—	323				1,028
1994	725	—	—	—	347				1,072
1995	750	—	—	—	382				1,132
1996	763	—	—	—	426				1,188
1997	794	—	—	—	470				1,263
1998	827	—	—	—	473			\$390	1,690
1999	864	—	—	—	473			380	1,718
2000	874	—	—	\$219	478		\$279	385	2,235
2001	927	—	—	206	492		577	390	2,592
2002	1,045	—	—	233	493	\$173	615	376	2,935
2003	1,085	\$9	\$0	234	504	415	622	396	3,265
2004	1,137	12	0	273	275	716	642	414	3,468
2005	1,219	15	4	292	0	1,149	691	426	3,796
2006	1,309	29	1	358	4	1,266	681	448	4,096
2007	1,373	31	2	347	—	1,395	663	480	4,291

* 2007년은 USAC의 추정치임, —는 지원 프로그램이 없었음

자료: Universal Service Monitoring Report CC Docket No.98-202 2007, NECA(1986~1987), USAC(1998~2006)

고비용지원 기금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1993년에 \$10억을 넘어섰고, 2000년에 \$20억을, 2003년에 \$30억을 넘어섰으며, 2007년에는 \$42억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Low Income Program)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은 저 소득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요금으로 질 좋은 통신서비스 이용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다 구체적인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면, FCC는 1997 First Report and Order(FCC 97-157)에서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제정하였다.

- Lifeline 지원: 기본적 전화 서비스 월 사용료 절감
- Lin Up 지원: 신규 전화 서비스 비용 절감
- Toll Limitation Service(TLS): 비용 없이 시외전화 발신제한(toll blocking) 또는 시외전화 이용량 제한(toll control) 이용 허용

이후, FCC는 Tribal Order(FCC 00-208)에서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에 대한 통신서비스 및 가입관련 규칙을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Lifeline 지원(Tier 4 지원)은 추가적으로 \$25까지, Link Up 지원은 \$60~\$130 사이의 요금을 커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70\$까지 제공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FCC는 National School Lunch free lunch program 및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를 추가적인 조건으로 Low Income Program 수정한 Lifeline and Link Up Order(FCC 04-87) 발표하였는데,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117만~129만 가구가 혜택 받을 것으로 FCC는 예상하였다.

저소득층 지원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지역 전화 사업자 혹은 대리인을 통해 Lifeline, Lin Up, TLS 지원을 받을 때, 통신 사업자는 연방 보편적 서비스 기금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수입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게 되는 데, 이를 위해서 통신 사업자는 USAC에 Lifeline and Link Up Worksheet(Form 497)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과거 12개월간의 사업자 요구에 기초하여 각 사업자의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 USAC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Low Income Program)지원에 대해 매달 한번 지급하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주요 보편적서비스 프로그램은 Lifeline Support와 Link up America로 구분되는데, 세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지원은 FCC와 주정부의 매칭 펀드(Matching fund) 형식으로 운영되며, 개별적으로 주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연방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모든 적격사업자는 Lifeline Support와 Link up America를 고객에게 광고하고 제공할 의무가 있다.

Lifeline Support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 대해 보편적 의무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요금할인제도이며 198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Lifeline Support의 종류는 4가지이다. Tier1은 가입자회선비용 \$6.5를 면제해주는 제도이고, Tier2는 주정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월 \$1.75를 연방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현재 50개 주 모두 시행)이다. Tier3는 주정부 고유의 Lifeline/Link Up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연방정부차원에서 그 주의 적격사업자들에게 주 정부 차원의 감면 금액의 50%(월 최대 \$1.75)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Tier4는 인디언 보호구역 내의 인디언들에게는 최대 \$25까지 추가적으로 시내전화 요금의 감면을 제공하는 제도(최소한 \$1는 납부하도록 함)이다. Toll Limitation service(TLS)는 Lifeline지원 메커니즘에 포함되어 있으며 toll blocking service(TBS)와 toll control service(TCS)를 총칭하는데, TBS는 가입자가 시외전화 발신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TCS는 가입자가 월 또는 과금주기별 시외전화 사용량을 특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Link up America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구들의 전화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화서비스 최초 가입에 대해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1987년부터 시행하여왔다. Link Up America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최초 가입비의 50%를 최대 \$3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연방정부가 이자비용을 부담해주고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까지 지불유예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그리고 인디언 보호구역 거주자(Tribal)의 경우 추가 최대 \$70의 지원을 통해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저소득층 보조 기금 지급 내역과 추이는 다음과 같다.

〈표 3-7〉 연도별 저소득층 보조 기금 지급액

(단위: 달러)

year	Lifeline					Link up			Total
	Non-Tribal	Tribal	TLS	PICC	Total	Non-Tribal	Tribal	Total	
1988	\$31,952,241	\$0	\$0	\$0	\$31,952,241	\$1,991,148	\$0	\$1,991,148	\$33,943,389
1989	50,878,248	0	0	0	50,878,248	4,479,614	0	4,479,614	55,357,862
1990	62,464,007	0	0	0	62,464,007	11,351,005	0	11,351,005	73,815,012
1991	79,103,725	0	0	0	79,103,725	13,705,470	0	13,705,470	92,809,195
1992	93,766,122	0	0	0	93,766,122	15,342,180	0	15,342,180	109,108,302
1993	109,082,866	0	0	0	109,082,866	17,019,329	0	17,019,329	126,102,195
1994	123,283,835	0	0	0	123,283,835	18,573,322	0	18,573,322	141,857,157
1995	137,277,472	0	0	0	137,277,472	18,392,061	0	18,392,061	155,669,533
1996	148,186,383	0	0	0	148,186,383	18,246,756	0	18,246,756	166,433,139
1997	147,579,351	0	0	0	147,579,351	13,710,810	0	13,710,810	161,290,161,
1998	416,504,314	0	2,700,199	2,801,645	422,006,158	42,463,332	0	42,463,332	464,469,490
1999	438,575,890	0	3,136,015	4,450,093	446,161,998	33,991,297	0	33,991,297	480,153,295
2000	482,045,184	507,783	2,853,787	3,167,769	488,574,523	30,371,085	61,589	30,432,674	519,007,197
2001	548,421,038	6,960,051	3,194,567	0	558,575,656	30,313,576	474,647	30,788,223	589,363,879
2002	623,351,963	17,954,808	3,778,615	0	645,085,386	30,322,844	699,618	31,022,462	676,107,848
2003	657,098,262	24,166,718	4,425,363	0	685,690,343	30,170,287	515,383	30,685,670	716,376,013
2004	695,199,725	30,502,954	5,110,564	0	730,813,243	30,898,918	1,230,515	32,129,433	762,942,676
2005	716,565,748	45,846,768	6,218,084	0	768,630,600	31,714,655	2,802,244	34,516,899	803,147,499
2006	704,485,673	62,068,323	9,027,428	0	775,581,424	30,042,397	2,841,751	32,884,148	808,465,572

자료: Universal Service Monitoring Report CC Docket No.98-202 2007

2006년도의 Lifeline 지원금은 \$7억7천만, Link Up 지원금은 \$3천3백만이며, 총 지원금은 \$8억 규모이다. 특히 1998년에는 연방 Lifeline 지원 메커니즘의 확장으로 인해 지원규모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 학교 및 도서관 지원 프로그램(Schools and Libraries Program)

학교 및 도서관 지원제도(Support for Broadband Services in Schools and Libraries)는 일정 자격을 갖춘 학교와 학교 구역, 도서관, 학교와 도서관을 포함하는 연합체 등에 대해서 보편적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이다. 즉, 미국의 대부분 학교와 도서관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와 인터넷 접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모든 학교와 도서관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6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에 규정되었다. 실질적으로는 보편적 서비스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학교나 도서관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고도보편적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통상 “E-Rate”라고 불리우며, 지원 범위는 농어촌 지역과 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역이 된다. 주간 혹은 국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통해 지원되는 네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며, 통신서비스, 인터넷 접속, 내부 접속, 내부 접속의 기본적인 유지 등에 사용된다. 빈곤의 정도, 도시 혹은 농어촌 상태 정도 등을 고려하고 서비스 비용의 20%~90%를 지원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지원이 도시 지역보다 크다.

지원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Step 1: Determine Eligibility

- 연방 및 주 법에 따라 적합한 학교 및 도서관 결정

— Step 2: Develop a Technology Plan

- 기술적인 평가와 기술적 계획에 따른 평가 시작

— Step 3: Open a Competitive Bidding Process(From 470)

- 경쟁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Description of Services Requested and Certification Form(Form 470)을 작성

— Step 4: Select the Most Cost-Effective Service Provider

-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사업자 선택

— Step 5: Calculate the Discount Level

- FCC의 할인율을 포함하는 규칙에 따라 Service Ordered and Certification Form(Form 471)을 작성하여 할인율 계산

— Step 6: Determine the Eligible Services

- FCC에 의해 정해진 네 가지 서비스 중 적절한 서비스 선택

— Step 7: Submit Application for Support(Form 471)

— Step 8: Undergo Application Review

- USAC는 할인율의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Form 471을 평가

- Step 9: Receive Your Funding Decision
 - 평가에 따라 USAC는 하나 이상의 Funding Commitment Decision Letters(FCDLs)를 학교 및 도서관 지원자와 서비스 사업자에게 발송
 - Step 10: Begin Receipt of Services
 - USAC는 청구서(invoice) 발행 전, 서비스 시작 일, 기술적 계획 승인,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CIPA) 응낙을 확인해야 함
 - Step 11: Invoice USAC
- 학교 및 도서관 지원 기금 지급 내역과 추이는 다음과 같다.

〈표 3-8〉 연도별 학교 및 도서관 지원 기금 지급액

(단위: 천달러)

Year	Total Disbursements	Libraries	Schools	School Districts	Other Consortia	Internal Connections	Inter Access	Telecom
1998	\$1,399,948	\$49,890	\$83,469	\$1,070,536	\$196,053	\$797,408	\$94,910	\$507,631
1999	1,654,853	47,456	140,308	1,269,637	197,452	1,106,210	95,743	452,901
2000	1,649,222	43,659	87,392	1,384,341	133,830	1,033,050	135,129	481,043
2001	1,694,396	41,903	116,706	1,395,667	140,120	1,007,748	151,838	534,810
2002	1,569,526	41,819	104,450	1,262,045	161,212	794,569	172,585	602,371
2003	1,913,223	44,026	134,412	1,564,607	170,177	1,063,910	202,803	646,509
2004	1,482,255	39,457	104,452	1,163,579	174,767	615,988	189,185	677,082
2005	1,306,759	46,037	89,288	1,027,870	143,565	392,028	206,163	708,569
2006	634,292	24,240	42,350	479,706	87,996	165,199	142,660	326,433

자료: Universal Service Monitoring Report CC Docket No.98-202 2007

Rural Health Care Program

시골 의료기관 지원 제도(Assistance for Rural Telemedicine Service)는 농어촌 지역의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통신서비스 및 인터넷 접속 비용에 대해 농어촌 지역 의료제공 사업자(HCPs)에게 할인 요금 부과방식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입 목적은 시골지역의 공공 또는 비영리 의료기관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경

우 도시 지역과 유사한 요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원격진료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FCC에 의해 선정, 의회에서 승인, USAC에 의해 관리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수준은 서비스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의료제공 사업자는 현재 서비스 증진 및 신규 서비스 도입 시 지원 받을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료제공 사업자는 시골 의료제공 지원 프로그램(Rural Health Care Program) 지원을 받기 위해 Form 465 작성
- Form 465 받은 후 USAC는 적합성 판단 후 홈페이지 공고 및 메일 발송
- 의료제공 사업자는 FCC에 의해 정해진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 선택
- 서비스가 선택된 후 의료제공 사업자는 Funding Request & Certificate Form(Form 466) 및 Internet Service Funding Request & Certificate Form(Form 466-A) 작성 후 제출
- USAC는 Form 466과 466-A의 평가 후 의료제공 사업자에게 Funding Commitment Letter(FCL)과 Receipt of Service Confirmation Form(Form 467) 발송, FCL은 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도 발송
- 의료제공 사업자는 할인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 Form 467을 작성하여 USAC에게 제출
- Form 467 평가 후 USAC는 의료제공 사업자 및 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지원 계획 발송
- 의료제공 사업자에게 지원 후,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지원을 받기 위해 USAC에게 송장/청구서(invoice) 발송

시골 의료기관 지원 제도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은 의료 교육을 하는 중등 과정 이후의 교육기관 또는 의과대학, 지역건강센터, 지역 보건당국, 지역 정신건강센터, 비영리 병원, 시골 건강클리닉, 상기 기관들의 컨소시엄 등이다. 지원 대상 서비스는 통화료, 설치비 및 장거리인터넷접속 가입비 등이다. 시골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은 의료 설비의 필요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형태의 인터넷접속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골 의료기관 지원 기금 지급 내역과 추이는 다음과 같다.

〈표 3-9〉 연도별 의료기관 지원 기금 지급액

(단위: 달러)

Funding Year	Voice Grade	Broadband		Other Service or Speed Unknown	Total
	56K to 199K	200K to 1.49Mb	1.5Mb and faster		
1998	\$202,778	\$880,375	\$2,292,252	\$0	\$3,375,405
1999	452,992	1,073,816	2,719,619	58,132	4,304,559
2000	613,595	3,015,004	6,685,573	0	10,314,172
2001	319,539	8,110,537	10,125,267	0	18,555,343
2002	428,506	10,660,185	10,528,679	0	21,617,369
2003	477,146	11,353,665	13,572,815	7,559	25,411,185
2004	588,599	11,798,524	16,997,168	117,111	29,501,402
2005	805,153	15,266,288	17,965,181	362,936	34,399,557
2006	114,931	4,681,973	5,508,965	54,021	10,359,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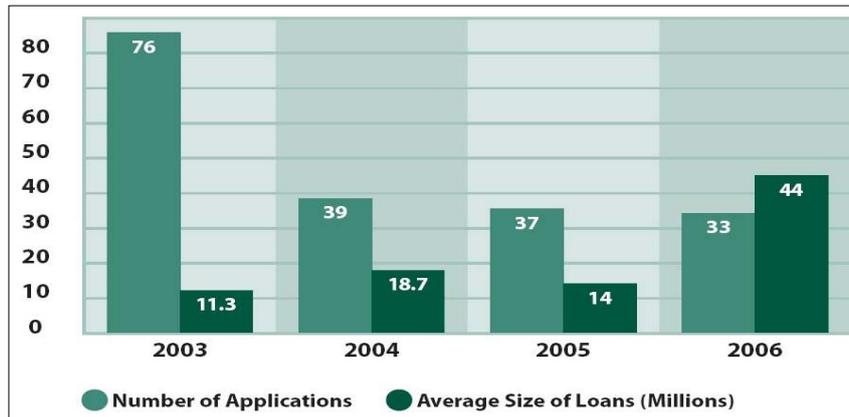
자료: Universal Service Monitoring Report CC Docket No.98-202 2007.

USDA(U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1) Rural Development Broadband Loan Program

2002 Farm Bill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거주자 20,000명 이하의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설비 구축 혹은 개선, 장비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loan) 및 대출 보증 사업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Regulation 7 CFR Part 1783에서 loan 이용가능성, 조달된 장비, 적합한 지원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프로그램 시작이후, 40개 주에서 70회 승인이 이루어져, \$12.2억, 1,263개 지역사회 582,000명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었다.

[그림 3-1] 지원 수 VS. 평균 Loan 금액



(2) Distance Learning and Telemedicine(DLT) Loan and Combination Loan-Grant Program

프로그램 보완을 위해 DLT Loan과 Combination Loan-Grant Program은 지원자에게 가능한 많은 지원 금액, 더 적합한 목적, 지원 결과 제공한다.

(3) Community Connect Grant Program

통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경제성장 촉진 및 강화된 교육, 의료, 공공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대역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community-oriented connectivity”를 기초로 한 사업이다.

경제적 기회의 증가와 농어촌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이 주요 목적이며, 2001년 이후 \$76.8million이 투자되었으며, 1.5million 이상의 직업을 창출하였다.

(4) Public Telecison Digital Transition Grant Program

디지털 방송 TV로 전환에 있어 농어촌 지역 인구를 위한 Public Television Station 지원 프로그램이다. 디지털 방송 TV 전환에 필요한 설비와 소프트웨어 취득 및 설치에 사용되며 아울러 기술 및 환경과 관련된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2008년 3월 28일까지 지원 가능하며, 총 \$496만 5천이 조성되었으며, 각 방송국당 \$750,000씩 지원하였다.

(5) Weather Radio Grant Program

미국의 농어촌 지역에서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ve's Weather Radio system(NOAA Weather Radio)의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전달 장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에서 \$500만(후에 \$4,989,000으로 감소)을 마련하였으며, 인구 50,000명 이하의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사용되었다.

2. 기타 외국의 보편적서비스 기금 운영 사례 및 방안

가. 프랑스²²⁾

(1) 기금분담 사업자

관련 법률(CPCE Article L.35-3)에 의해 통신사업자들은 보편적서비스의 손실금(net cost)을 분담해야 한다. 2003년 12월 31일의 Act No.2003-1365에 의해 기존의 보편적서비스 기금 조성 시스템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분담사업자들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분담기준이 통화량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기금을 분담하는 사업자로는 유선, 이동통신사업자,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 전화카드제공사업자, MVNOs, VoIP 서비스제공사업자, VPN접속제공사업자, SMS제공사업자, 로컬기관(local authorities) 등이 있다. 분담사업자 유형별 분담 추이는 다음과 같다.

〈표 3-10〉 프랑스 기금분담사업자 분담추이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유선	51%	48.4%	49.3%	45.2%	49%
이동통신	39%	41.8%	43.6%	47.5%	48.8%
인터넷	2%	0.8%	1.4%	1.5%	1.4%
케이블사업자	0%	0.3%	0.3%	0.3%	0.4%
ISP	4%	4.0%	1.1%	1.0%	0.4%
데이터전송(Data transfer)	4%	4.8%	4.5%	4.5%	—

자료: ARCEP(2008), Annual Report 2007, p.318

22) ARCEP(2008), ARCEP(2007)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2) 기금분담 기준

분담사업자들은 보편적서비스 기금을 2002회계연도 이전까지는 통화량(traffic volume)을 기준으로 분담하였으나, 2002회계연도부터 전기통신서비스 매출액(turnover)에 비례하여 분담하고 있다. 매출액 5백만 유로 이하의 사업자는 분담이 면제된다.

ARCEP는 매년 보편적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금을 검증하며, 제공사업자의 매출과 무형의 편익을 함께 검증한다. 이를 위해 매 회계 연도에 자문을 거쳐 ARCEP가 보편적서비스 최종손실금을 산정하기 위한 규칙을 검증 전에 발간한다.

〈표 3-11〉 분담사업자의 기금분담 기준 매출액 범위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Include in the scope
Fixed telephony service	
– Originating from a fixed line	Yes
– Originating from public payphone	Yes
– Originating from calling card	Yes
Mobile service	
– Terrestrial mobile telephony(access and call origination)	No
– Roaming in	Yes
– Roaming out	Yes
– Calls from mobiles	Yes
Other mobile services	
– satellite mobile services	Yes
– paging services	Yes
– professional mobile networks	Yes
Internet(including wireless)	
– Narrowband	Yes
– Broadband	Yes
– Other services related to internet access provision(advertising, e-commerce, website hosting other than for access, firewall, antivirus...)	No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Include in the scope
Advance services(fixed and mobile telephony)	
– Toll-free services	Yes
– Shared cost numbers	Yes
– Shared revenue numbers(regardless of the number's owner)	Yes
– Special routing services	No
Leased line and other capacity and data transport service(fixed and mobile net work)	
– Analogue and digital lines, regardless of bitrate	Yes
– Other capacity services(LAN interconnection, etc.)	Yes
– Data transport	Yes
Directory services and related income(fixed and mobile telephony)	
– Telephone directory services	Yes
– Electronic directory search	Yes
Related in come	
– Directory sales(print, CD-ROM, ...)	NO
– Advertising: other income	NO
– Sale of databass	NO
Terminal sales, rental and maintenance	NO
Other services related to eletronic communications(computer applications and hosting services)	NO
Interconnection and access for fixed and mobile telephony, including inbound international traffic	NO

자료: ARCEP(2007), Annual Report 2006, p.393

(3) 기금 운영

Caisse des Depots et Consignations(Deposit and consignment office)²³⁾가 기금을 운영

23) Caisse des Depots은 1816년 설립된 프랑스 국영의 공공부문 재정운영 기관임(Caisse des Depots 홈페이지 참조)

한다. ARCEP는 기금분담 대상과 기준을 결정하며, 메커니즘을 모니터링한다. 관련 법률(CPCE Article L.35-3)은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손실금이 부당한 부담(unfair burden)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보상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제공사업자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었을 경우에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호 주²⁴⁾

(1) 기금분담 사업자

현행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목적은 모든 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보편적서비스 기금을 분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면허를 인가받은 사업자들이 보편적서비스 기금을 분담한다.

(2) 기금분담 기준

1997/1998년 이전에는 통화량을 기준으로 분담하였으나, 1997/1998년부터 적격매출(eligible revenue)을 기준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총 매출액이 장관이 정한 일정금액보다 작은 사업자는 분담에서 제외된다. 최근 경쟁의 진전에 따라 시장구조가 변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면허인가 사업자 수도 함께 증가하였다. 1999/2000년에 45개이던 면허인가 사업자 수가, 2004/2005년에 139개, 2005/2006년에 167개, 2006/2007년에 182개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표 3-12〉 기금분담사업자 수와 적격매출액

년도	기금분담사업자 수	적격매출액 합계(\$10억)
2000/2001	75	22.09
2001/2002	94	22.80
2002/2003	101	22.94
2003/2004	108	23.68
2004/2005	139	24.12
2005/2006	167	24.66

24) DCITA(2007)와 OLD(1999)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기금분담사업자의 분담비율을 결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금분담사업자다 해당 기간의 적격매출액을 ACMA(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ACMA가 이를 평가(assess)한다. 분담사업자가 적격매출액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ACMA는 해당 사업자의 적격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ACMA가 모든 기금분담사업자의 적격매출액을 평가한 후, 각 분담사업자의 분담율(levy contribution factor)을 결정한다. 분담율은 각 사업자의 적격매출액을 모든 사업자의 적격매출액 합계로 나누어 결정한다.

(3) 기금운영

ACMA가 보편적서비스 기금을 평가하고, 징수하며 분배한다.

다. 영 국²⁵⁾

(1) 기금분담 사업자

현재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은 제공사업자인 BT와 Kingston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2) 기금분담 기준

2003년 통신법의 70조에서는 Ofcom이 때때로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재정적 인 부담 정도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Ofcom은 이러한 부담이 제공사업자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었는지를 결론 내려야 한다. 만일 Ofcom이 부당한 부담이 되었다고 결론내리면, 이러한 부담을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분담금에 대한 평가와 징수 및 부담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특정 통신사업자나 제공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경쟁과 수요의 왜곡을 최소화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Ofcom은 BT와 Kingston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Ofcom은 2006년 3월의 보고서²⁶⁾ BT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25) Ofcom(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26) Ofcom(2006), "Review of the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BT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3) 기금운영

2003년 통신법 71조에서는 조성된 기금을 Ofcom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지정된 제3자에 의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제공사업자와 분담사업자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 지정되어야 한다.

라. 기타 국가²⁷⁾

EU는 보편적서비스 보조를 위해 회원국의 특정 상황에 맞게 여러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편적서비스의 비용보전과 관련하여, 보편적서비스 지침(Directive 2002/22/EC) 13조에서 보편적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부당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의 일반예산 또는 사업자간 분담을 통해 순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간 분담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국 통신규제기관의 감독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분담제도를 설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독일은 2004년 통신법 제82조에서 보편적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편적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자는 보편적서비스 부담금으로써 그 손실보전을 분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사업자들의 부담금액은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정한다. 만일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 중 할당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그 금액은 다른 의무자들이 각자의 비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연도가 지난 후에 규제기관은 손실보전금의 액수와 이를 분담할 사업자들의 부담금을 확정하고, 이를 해당 사업자들에게 통지한다. 통신사업자들이 분담한 기금은 규제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연방의 특별재산(Sondervermogen)으로 운영되고 있다.²⁸⁾

이탈리아는 보편적서비스 제공이 제공사업자에게 부당한 부담이 된 경우, 면허를

27) EC(2002)와 박종수(2006), ITU(2007), ITU(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28) 박종수(2006) 재인용

인가받은 유선과 이동전화사업자가 기금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호접속과 회선임대, 로밍서비스를 제외한 매출의 1%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는 분담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편적서비스 제공에 따른 순비용(net cost)은 통신부가 운영하는 기금에 의해 보조된다.²⁹⁾

캐나다의 경우, 유선과 이동전화사업자가 통신서비스 적격매출액의 고정된 비율을 보편적서비스 보조를 위해 분담하며, 적격매출액이 천만달러(CAD) 미만인 사업자는 분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기관은 보편적서비스 보조를 위해 2007년에 유선과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적격매출액의 1.03%를 분담하도록 하였다.

뉴질랜드의 경우, 보편적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 Obligation)에 따른 순비용(net cost)을, 시장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총 소매매출액(gross retail revenue)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 정부의 통신발전기금(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을 통해 보편적서비스가 보조된다.

인도의 경우,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조정된 총 매출(adjusted gross revenue)의 5%를 보편적서비스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보편적서비스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다수 존재하며, 국가별로 상이한 주체에 의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와 콜롬비아의 경우 정부가 기금을 운영하며, 페루는 규제기관에 의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모리타니 등은 지정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3. 보편적 접근 및 서비스 기금(UASF)의 관리 및 운영 방안³⁰⁾

가. UASF 경영관리(management)

대부분의 국가에서 (독립적) 규제기관이 UASF를 관리·경영하는데, 이는 주로

29) Ovum(2007) 참조

30) 본 자료는 ITU의 Regulation Toolkit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

정부나 산업으로부터 상당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기술적 측면이나 규제적 측면에서 전문성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기관이 독립성 및 산업계의 신뢰를 확보할수록 UASF의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Infodev(Information for Development Program)는 우수한 보편적서비스 기금이 지니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꼽고 있다.

- 통신사업자와 관련이 없는 독립적 운영
- 투명한 자금운영
- 기존사업자나 신규사업자에게 편향되지 않은 시장 중립성
- 특정 수혜자를 타깃으로 하는 자금조달(예를 들어 고비용지역, 서비스 미제공 농촌지역, 저소득층, 교육 및 보건 부문 등)
- 민간이 하는 경우 비경제적인 부문으로만 최소화
- 경쟁적 입찰제도

규제기관이 전문 사무국(Secretariat)을 구성하고 특별 경영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를 통해 이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최적 방안이다. 이 때 특별 경영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는 규제기관의 전략적 방향 제시, 주요 프로젝트 승인, 펀드 배분, 적절한 집행 여부 및 재정적 안정성 확보(financial integrity)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게 된다.

□ 상임위원회(Board)

상임위원회는 고위직 공무원(senior executive)보다 높은 직위에 있게 되나,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 그 기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상임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은데, 아래 역할을 모두 보유하거나 일부만 보유하는 등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 운영방향 수립 또는 경영(Direction or management): 선임 관리자(senior manager) 고용, 예산 승인, UAS 운영계획 등 승인, 보조금 지급 최종 승인 등 다양한 이슈들의 집행을 위한 의사결정 수행
- 모니터링과 감독(monitors and oversight): 집행담당자와 해당 경영부서의 의사결정은 이해관련자들(stakeholder)의 이익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함
- 협의 또는 자문(consultative and advisory): 제안된 UAS 운영계획, 집행 결정 등

에 대한 검토를 의뢰 받음. 전문지식 및 조언을 제공

어떤 유형/모델이건 간에 위원회 위원은 전통적으로 이해관련자들의 권익을 조화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데,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원이 포함된다.

- 정보통신 관련 부처
- 통신규제기관
- 인터넷이나 정보통신기술 등과 관련한 부처나 기관
- 소비자 협회(존재시)
- 산업내 협의회
- 직접 소속된 사업자가 없는 경우 통신이나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있어서 전문가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다양한 이슈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도 다양한 옵션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경우(페루와 나이지리아 등), 사업자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업(상업) 부문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독립적 통신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달리 위원회의 역할이 주로 모니터링과 감시감독인 경우, 개방성, 공정성 및 적절한 자금 집행에 공헌했다는 산업계의 만족감 증진 등을 위해 위원회에 산업 대표가 일부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이다.

□ 인사행정(Staffing)

전반적인 운영 및 이행 계획을 책임지는 정규직/상임 국장(Manager, Director, 때때로 Administrator)에 추가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담당자가 필요하다.

- Project manager/
- Technical manager & staff for field inspections
- Research manager and data specialist
- Contracts & administrative manager
- Finance & accounts manager(전임 또는 파트타임)

한편, 임직원의 수는 기금의 규모에 의존하여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1차 년도에 1,50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기금 운영 관리(우간다 또는 몽골리아)는 4~5명의 전임 임직원 필요하다. 반면 연간 5,00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2~3배의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 페루 통신규제기관인 OSIPTEL은 UASF의 운영책임을 맡고 있다. OSIPTEL은 자금 운용 등 재정관리는 신뢰성 있는 외부기관에 아웃소싱하였으며, 기금의 전반적 운영을 위해서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영입했다.

※ 상세 규제(Detailed regulations)

- 보편적서비스 정책의 이행을 위해서는 상세한 규제가 필요
- 아래는 보편적 서비스 정책방안 마련시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슈임
 - 보편적 서비스 정책 이행에 있어 규제기관의 네트워크와 서비스 측면에서의 상세한 목적
 - 규제기관내 보편적 서비스 담당부서(department 또는 directorate)를 만들거나 또는 분리된 이행 기구를 만드는 등 상세한 기구 편성 계획 수립
 - 보편적서비스 제공 대상자 또는 대상지역 등을 정의, 설정 가능하도록 상세 보편적 서비스 프로그램 수립
 - 각종 관련 위원회와 보편적 서비스 이행의 가이드라인, 원칙, 절차 마련
 - 명확하고 공식적인 책임 소재(보편적 서비스 프로그램 승인 책임,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전에 있어서 공식적 결재권자, 기타 권한소재에 대한 상세한 규정)
 - 보편적 서비스 프로그램 연차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상세 계획 작성
 - 시장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추어 보편적 서비스 정책, 목표, 전략 등에 대한 주기적 검토
 - 한편, 보편적서비스 기금(UASF)이 마련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 규제가 필요
 - 기금 지출에 있어서의 적정성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 기금의 보유 및 투자, 적정 비용 및 지출, 운영 및 경상비용의 상한, 재무 관리/보고 및 독립적 감사 등을 포함한 재정 관련 특별 규정
 - 기금 부담자에 대한 올바른 부과를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세한 회계 규정(accounting rules) 마련

나. 기금 운영의 주요 기준: 책임감,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 보장

□ 회계 투명성(account transparency)

만일 규제기관(regulator)이 보편적 서비스 기금(UASF)을 담당한다면, 규제기관은 기금을 안정성이 확보된 선도은행에 독자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고유 목적에 한해서만 배타적으로 활용하여 다른 규제활동과 결부시켜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기금은 별도의 회계 시스템을 통해 운영하되, 정부나 규제기관은 수시로 기금 운영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기금이 분리된 독립적 회계로 운영되는 시스템은 재정상태 모니터링, 지출 추적 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기금 운영 등의 신뢰성 제고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달리 적절한 회계분리 및 표준이 없거나 또는 기금이 정부 회계에 포함되어 운영되는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착복되거나 초기 의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아울러, 독립적 회계법인이 기금의 재정을 매년 감사하여 해당 감사보고서를 정부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일반에 공개, 발간되어야 한다. 또한 기금의 모든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도 작성되고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

□ 행정비용의 최소화(keeping administrative costs to a minimum)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임 임직원을 보유하되 최소규모로 유지해야 한다. 행정적 경상비용의 실제 비율은 펀드 규모와 해당 국가의 물가 등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해당 예산 규모를 모니터해야 하고 상한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연간 기금 총액의 2~3%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기금이 설립된 첫 해의 경우, 해당 비용은 소폭 증가할 수 있다. 한편 가이드라인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된 경우라도, 프로젝트 준비, 관리 및 모니터링과 관련한 비행정적 비용도 높은 수준일 수 있다.

※ 페루 통신투자기금에 대한 평가는 본 기금을 통해 몇몇의 주요 프로젝트가 이루어진 이후인 2003년 9월 수행되었다. 초기 몇 년 동안에는 기금에서 행정적 경상지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 이상 되었으나 이후 '98년~'03년 기간 동안 대략 1%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기금의 행정 및 운영 경비와 관련된 구체적 규정은 운영 매뉴얼, 행정 규칙 또는 규제절차(기금의 행정적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에 기술되어야 하며, 비용 및 지출관련 항목도 구체적, 합법적 규정되어야 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항목은 기금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모든 재정관련 사항은 운영 매뉴얼 또는 규제, 그리고 계획된 예산 편성에 따라 기획된 규칙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만일 규제기관 내부의 부서 형태로 기금이 운영된다면, 재정(모든 기금과 관련된 모든 거래 행위 등)은 규제기관에 요구되는 재정 정책과 규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기금의 효율적 사용

효율적 보조금 추정뿐 아니라 효율적 관리, 그리고 기금 배분에 있어서의 시장 메카니즘은, 기금 충당금(required levy)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기금 낭비(비효율적 행정 및 관리 등)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연계될 수 있다.

※ 우간다는 2005/06 경쟁입찰과정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보편적접속부여)에 사용될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의 61% 수준에서 프로젝트 수행. 결국 금번 경쟁입찰과정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가져옴(기금 관리자가 사용가능한 보조금의 최대상한을 추정). 금번 입찰에서 미리 예정된 예산액 중 미사용된 39%는 다른 UAS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임. 1995~2000년 기간동안 칠레의 FDT 주요 지방 통신서비스 보조에 배분된 보조금의 54%를 사용한 반면 페루의 FITEL 프로그램은 1999~2003년에 단지 36% 사용, 결국 상기 3개의 보조 프로그램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또한 지급된 보조금 규모와 유사하거나 그 보다 더 큰 규모의 사적 투자를 유발했음

보조금 분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투자와 관리는 운영 매뉴얼에 규정되거나 또는 정부가 결정한 대로, 안전하거나 저위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를 규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적으로 기금의 자산은 승인된 은행과 더불어 (고정금리) 은행 저축에 투자(정부 국채나 증권)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UASF 연차보고서에서 공개적으로 보고되고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보편적 서비스 기금 운영시 제기되는 주요 이슈

- 고비용의 UAS 제공과 높은 이용대가 부과의 위험(Risks of high charges and high cost UAS orientation)

몇몇 국가의 경우 보편적 서비스 기금 집행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첫째, 보편 서비스로 지정된 유선서비스의 이용대가가 무선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기금의 지원이 유선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한정된 경우, 유선서비스가 원격지로 확대되어 고비용지역에서 제공되는 경우보다 경제적인 무선 옵션에 비해(유선이) 더욱 이용 대가가 높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보편적 서비스 기금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더 많은 축적될 수 있다. 몇몇 국가의 경우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기 이전, 제도 도입 초기에 사업자들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분담금을 부과했다. 이동전화의 예상 수익을 크게 벗어나 전례 없는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초기에 높게 설정된 분담금에 따라 기대수준 이상으로 기금이 축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사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기금 프로그램에서 해당 부문 매출액의 2% 이상을 부담하도록 한 개발도상국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의 5~6%를 기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보편적 서비스 기금 관련 조직을 설립한 인디아, 말레이시아, 콜롬비아와 같은 국가는 조성된 기금의 50% 이하를 해당 부문에 환원하도록 관리하였다. 인디아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비록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있어 현재 최적의 위치에 있다하더라도, 높은 유선전화망 구축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높게 설계된 초기 분담금은 시장 확대 및 변화에 따른 조정이 없다면, 당초 기금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예상한 수준이상으로 기금이 조성될 것이다.

인디아의 경우, 보편서비스 프로그램에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이상을 지출하기 위해 보편적 서비스 의무 기금(Universal Services Obligation Fund) 프로그램은 상당히 확대되고 다양화되어 왔다.

2001년 브라질은 National Telecommunications Fund(FUST)를 만들면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를 분담하도록 하여 재원을 마련하였다. 브라질의 큰 시장규모로 인해 정부는 대규모 기금 조성이 가능했다(2005년 6월 기준 17억 달러). 이 기금을 저소득층, 학교, 병원, 도서관과 농촌 등 원격지에 대한 통신서비스 제공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법 해석상에 있어서 의견충돌(주된 의견충돌은 고정서비스로 자금지원을 제한하고, 이동서비스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무력화한 것에 집중), 정치적 의지 및 합의 부족(정책담당자가 기금 집행/사용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으로 인해 자금이 분배될 수 없었다. FUST 운영상에 있어서 무능의 결과로 미사용 기금은 연방정부의 공공 부문 잉여 증가 또는 화폐 안정화(비록 국제적으로 기금 메카니즘의 일반적 신뢰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Anatel은 보편적 서비스 의무, 주파수 입찰과 보편적 서비스와의 연계를 포함한 새로운 면허 발행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기금운영 사례는 또 다른 시사점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상당히 낮게 부과하였으나 초기에 상당한 문제를 겪은 바 있다. 남아프리카의 보편적서비스 관리기관은 빈곤지역에 통신센터를 구축하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하였으나, 불충분한 연결성, 관리상의 어려움 및 유지가능성 등과 결합된 이유로 인해 대부분이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한편, 농촌지역에서 이동전화사업자의 빠른 성장을 간과하고 추정함에 따라, 많은 지역 사업자들이 이동망사업자로부터의 경쟁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규모 지역 사업자에 대한 면허부여와 서비스 제공이 미미한 지역에서 지역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불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이 야기되었다. 남아프리카의 보편적 서비스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지출되지 않은 채 적립금(reserve)으로 유지되었다.

상기 3가지 사례 모두에서, 지출되지 않은 징수액(levy)은 해당 부문에 있어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즉, 전체 경제적 효율성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망 구축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우간다 모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간다 모델은 아프리카와 그 밖의

지역에서 관료적 성격이 비교적 덜하고 기술중립적이며 보다 소규모이면서, 몇몇 새로운 형태인 첫 번째 사례이다. 우간다는 기금을 통해 전화단말기 입찰에 추가하여, 역내 모든 지역 중심지에 있어서 인터넷 POP의 경쟁도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2007년까지 사업자에 부과한 징수액(매출액 1%)의 지출액보다 세계은행(World Bank)로부터 더 많은 지원액(seed finance)을 확보하였으며, 실제로 해당 부문의 발전과 보편적 서비스에 더 많은 공헌을 하였다.

□ UASF 이행 추이보다 빠른 상업적 확산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남 아프리카와 그 밖의 많은 다른 국가들 뿐 아니라 우간다에서도 이동망의 발전이 UAS(보편적 접근 및 서비스 제공) 증대를 위한 규제기관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간다에서는 자금지원(funding)과 입찰 지원으로 인해 RCDF(Rural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공동체중 50%이상에서 이미 GSM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 접근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마을 전화 구축(village phone model)은 4천개 마을 이상에서 이미 구축되었다. 이는 실제적으로 선도 사업자가 가장 저렴한 보조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가능케하고 세계은행(World Bank)이 추정 보조금의 거의 40%를 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당국가의 북쪽지역의 경우, RCDF 프로그램은 정치적 불안과 반란 때문에 상업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지역에서 중요하면서도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많은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은 가장 적절한 지역으로 보조금을 배분하고 실제로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금을 충분히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규제기관이나 기금 관리담당자가 사업자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필요성과 보편적 서비스 프로그램 기획에 보다 강력한 구축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통해 상업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을 피하고 시장 효율성 증진을 위한 장애물 제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상업적 해결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prioritise the enabling of commercial solutions)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추세로 인해 정책담당자가 예측하고 기획하는 것보다 상업

적 해결방안이 오히려 더 빠르고, 보다 지속가능하며 효과적이다. 따라서 정책담당자 즉, 규제자와 UASF의 관리 담당자는 규제정책 개입없이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서비스와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 개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시간 및 노력 낭비 방지)

□ 적절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위한 예측은 매우 어려움(The smart subsidy zone is hard to predict)

우간다 사례에서 지적한 대로, 적절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 지역, 규모와 관련하여 일정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재정적 개입의 필요성이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비록 정부가 시장에서 제공되기 이전에 서비스가 제공되길 선호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상업적 서비스가 먼저 제공될 것이다. 다른 말로하면, 보편적 서비스 기금지원 프로그램이 이행되기 이전에 상업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동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동시장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통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것인가 또는 상용 이동망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 원격지의 접속(접근) 격차 지역이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존가능한 것으로 여기지지 않거나 또는 오늘날 덜 관심 있다고 판단되어 개입의 정당성이 입증된 망의 경우에도, 일부는 정책담당자가 이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상업적으로 생존가능할 수 있게 된다.³¹⁾

사업자들은 예상을 상회하는 사업자 성과, 경쟁압력 또는 기금제공 절차 지연 등에 따라, 기금을 통해 실제 보조금이 집행되기 이전에, 기금 지원 우선순위가 낮은

31) 일부 지역은 서비스제공사업자의 입장에서 경쟁적 이득을 달성하거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예를 들면, 인구밀도가 낮은 고속도로 주변 또는 여행자나 농경지 성장지역)하다. 또한, 망 비용을 낮추는 새롭고 보다 발전된 기술적 전략의 적용, 예를 들면 확장된 범위로 전송하거나 저전력 소비(본질적으로 경상비 지출은 낮춤)는 근본적으로 지역의 경제(economics of an area)를 변화시킬 것이다.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하게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맞추어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금 지출은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거나 상업적 제공이 생존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보조금 지급을 통해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개입은 특정 지역에서 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상업적 행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 기금 관리자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향후 2~3년 안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보조금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항상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명백하게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합리적으로 선정될 적정 보조금 지급 대상지역에서 만성적으로 제외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지역은 지속적 보조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또한 보다 복잡한 행정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대안으로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전력 공급 보조 또는 연료 보조와 같은 일시적 운영지원을 국가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전까지 제공하는 것이다.

시장이 여전히 빠르게 팽창하고 성장하는 단계에서 어떤 지역이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기금 관리자는 일단 시장이 일부 포화 단계 등에 도달한다면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보다 잘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라. UASF 운영의 평가 및 재평가(Evaluation and re-appraisal of UASF operation)

분담금 징수액(levy)에서 미사용분과 관련된 사안, 상업적 발전 단계, 적합한 보조금 지급 지역(smart subsidy zone) 식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사안, 기금 지속 여부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슈를 고려하여 평가와 재평가할 기회가 필요하다.

통신시장이 발전하고 성장해 감에 따라 정책목적이 이와 부합하기 위해서는 정책목적이 조정되거나 새로운 임무의 부여가 필요하다. 기금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규모는 상당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기금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조성 및 기금구조 그 자체, 정기적인(예를 들면 매3년마다) 전략적 정책이나 경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에 있어서는 다음 이슈가 고려되

어야 한다.

- ‘UASF의 역할, 관련성, 유용성’과 통신시장의 발전이, 해당국가의 UASF 목적과 부합하는지
- 예측대비 기금의 확보 및 배분과 계획, 목적과 차이에 대한 원인 조사
- 기금 운영/관리 및 관리 구조에 있어서 비용과 효과성 검토
-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의 향후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사항과 해당 부문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목적의 근본적 지속
- 새로운 정책목적에 달성을 위한 기금의 재정적 필요조건, 그리고 향후 분담금 규모 권고
- 만일 기금의 임무와 목적(그리고 관리담당자 규모)이 상당히 확대되지 않는다면, 시장이 성장하고 보편적 서비스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사업자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분담금은 줄어들 수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한편, NGN과 고도화된 ICT 서비스 전개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 정책, 보편적 서비스 기금 전략과 프로그램 작성이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와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는 기금의 주기적 평가에 따른 분석에서 통합되어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평가와 재감정에서 확인된 이러한 조정이 요구되는 사안을 고려함에 있어, 기금내의 의무화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금의 필요성에 관한 입법은 신축적이어야 한다.

4. 국내 실질 기금 도입 방안

가. 실질기금 도입의 경제적 합리성 검토

현재 우리나라의 보편적서비스 기금은 가상기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즉, 정부는 보편적서비스 기금의 전체 규모와 분담금만을 정하고 실제로 기금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마치 정부에 의해 상호접속료율이 정해지면 정산은 사업자 간에만 이루어지고 정부는 기금의 수수나 지출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이다. 더구나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통신기금은 사업자 자체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간 기금의 수수나 지출이 없다.

실질기금을 도입하게 되면 기금을 관리하는 행정기구가 설치·운영되어야 하므로 행정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실질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 최소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실질기금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그러한 행정비용보다도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기금을 분담하는 사업자의 수가 많아지면 거래를 해야 하는 횟수가 증가하므로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행정비용 대비 효율성의 증대가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거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행정기구의 설치가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고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영속적인 행정기구의 설립의 명분이 감소하게 된다.

우선 사업자의 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기금운영기구의 효율성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미국의 경우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내전화사업자의 수가 2,000여개사에 이르고 비용을 분담하는 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수가 그보다도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립적인 행정기구가 설치되어 사업자간의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 즉 n 개의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와 m 개의 보편적서비스기금 분담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간 일일이 정산을 한다면 서로 얼마를 주고 받아야 하는지 알 수도 없거니와 이론적으로 $n \times m$ 회의 거래가 필요하다. 반면 행정기구를 두어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면 거래의 회수가 $n + m$ 회로 변화한다.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수가 KT뿐이고 보편적서비스기금 분담사업자의 수가 14개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4개 사업자가 각각 KT에게 1개월에 1회 지불하는 거래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기금을 납부하게 하면 15회의 거래가 필요하여 오히려 현재보다 행정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는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하게 하는 실익이 없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1년에 400만회(보편적서비스기금 분담사업자의 수가 2,000개사라고 하는 경우)의 거래가 존재하여 실질기금을 운영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2,000개의 분담사업자가 행정기구에 분담금을 납입하고 행정기구는 이를 2,000개의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하게 되므로 총 4,000회의 거래만 하면 모든 거래를 끝낼 수 있으므로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여 기금을 운용하게 하는 경제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그 때마다 ad hoc한 전담반을 소집하거나 clearing house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거래비용도 줄이고 향후 전문성을 쌓아 비용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일시적으로 발생할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비용 등을 보전함에 있어서 별도의 행정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일수록 보편적서비스를 실질기금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예를 들어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서비스로 지정된다면 제공사업자는 100여개의 케이블TV SO들을 망라하게 되고 비용분담사업자도 수십개가 될 것이므로 사업자간 가상기금의 형태로 둔다면 거래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별도의 행정조직을 통해 분담사업자들로부터 기금을 거두어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실질기금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요금감면제도를 현재와 같이 사업자 자체가 부담하는 체제가 아니라 실질기금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업자 자체의 부담으로 장애인 및 저소득층 요금감면제도를 운영하는 현재 체제의 문제점은 후발사업자의 요금이 대체로 선발사업자에 비해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입자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 실제 요금감면액도 선발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면 보편적서비스 기금분담이 역진적(regressive)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05년~2007년간의 사업자별 복지통신 요금감면액을 살펴보면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의 요금감면액이 308억원으로서 KT의 1,086억원 대비 약 30%의 수준으로서 10% 이하인 매출액 시장점유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큰 부담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전화의 경우에는 KTF의 상대적 비중이 낮고 SKT의 상대적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2005		2006		2007	
	감면자수	감면금액	감면자수	감면금액	감면자수	감면금액
KT	1,551,301	85,368,956	1,683,194	95,618,105	1,886,949	108,593,037
하나로텔레콤	264,562	21,213,526	368,589	31,333,509	395,331	30,772,012
LG데이콤	92,244	2,357,474	38,043	1,787,045	37,589	1,286,069
온세통신	14,942	1,340,468	10,053	653,544	5,131	182,704
SK텔링크	1,504	14,702	1,606	40,680	1,640	36,887
SKT	750,032	107,914,249	834,698	118,780,857	914,048	128,207,009
KTF	298,523	37,537,155	374,842	41,578,670	390,077	41,708,939
LGT	236,382	27,226,072	252,710	30,274,322	313,116	35,287,174
LG과워콤			74,627	4,685,532	120,276	11,064,477
리얼텔레콤	273	4,513	502	20,668	216	3,889

따라서 사업자간 복지통신에 대한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실질기금제도를 도입하여 기금운용기관이 제공사업자로부터 비용을 청구 받아 분담금사업자들에게 기여분을 징수하여 제공사업자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이 보편적서비스제공사업자의 수가 적거나 사업자 각자가 비용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제도하에서는 실질기금을 운영하는 방안의 경제적 합리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서비스로 지정되는 등 제공사업자의 수가 급격히 많아진다면 복지통신에서 사업자간 수입과 비용분담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와 정산방식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기구가 실질기금을 운영하는 방안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적 논의와는 별도로 박종수(2006)은 투명한 재원조달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가상기금의 형태보다는 별도의 보편적서비스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수(2006)에 의하면 현행법제하에서는 보편적서비스손실보전금을 보전받고자 하는 보편적서비스제공사업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보편적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수입 및 손실 등이 포함된 보편적서비스제공 실적보고서를 정보통신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은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당해 손실분담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손실보전금을 부과할 때에는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 등 납부방법을 정하여 함께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부과받은 손실분담사업자는 통보받은 월의 익월말일까지 손실보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즉, 손실보전금은 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라는 창구를 중심으로 손실분담사업자로부터 부과·징수되어 보편적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지급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하에서는 손실보전에 사용되기 위한 재원이 분담금의 형태로 징수되고 이후 보편적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일정기간 축적될 것이 요구되는데, 현재와 같은 가상적 재원운영체계하에서는 재원운영의 투명성이 미약하고 자칫 규제기관과 사업자간의 자금과 관련한 유착관계를 야기할 소지도 내재한다. 따라서 주요국들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보편적서비스의 재원은 별도 기금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KT가 매월 접속료 정산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편적서비스적자분담금을 분담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하고 지불시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손실분담사업자로부터 부과·징수하거나 보편적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가상적 기금 제도 하에서도 규제기관과 사업자간 자금과 관련한 유착관계가 야기될 소지는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점이 실질적인 기금으로 전환하는 논거가 될 수 없다.

나. 법적 근거 설치 방안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분담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금전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인의 국가에 대한 금전급부의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조세국가에서는 그 특별한 정당성을 요구하고 이

를 위해서는 다른 공법상 금전급부 의무들과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검토하여 그 법적 성질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인(私人)의 국가에 대한 공법상 금전급부 의무는 크게 조세와 사용료·수수료 및 특별부담금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종수(2006)에 의하면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분담금은 사용료·수수료 등 수익 부담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세의 성격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분담금이 수익부담도 아니고 조세로서의 성격도 인정할 수 없다면,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특별부담금이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의 개념요소에서 반대급부인 특별한 경제적 이익의 보장이라는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부담금제도설정의 허용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의 일면을 가지지만, 특별부담금의 사용목적은 좀 더 상세하게 구체화되어 있고, 이것이 징수됨으로써 특별한 공적 과제의 수행이 실현된다는 점에서 조세, 특히 목적세와 구별된다. 보편적서비스손실보전분담금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할당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비조세 금전지급의무’로서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규정하는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보편적서비스손실보전분담금이 상정하는 특별한 공적과제인 기본적 통신서비스의 제공은 조세에 의하여 재원이 조달되는 일반적 국가과제와 구별된다.

수질개선부담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특별부담금의 종류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으로 나누고, 다시 후자는 부담금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 자체가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정책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유도적 부담금’)와 특정한 공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 그것을 이행

한 사람 사이 혹은 공공의 출연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얻은 사람과 그 외의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조정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조정적 부담금)로 나누고 있다.

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을 구별하는 의의는 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당성 요건을 요구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정당성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적용되는 점에 있다.

유도적 부담금이란 부담금납부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즉, 유도적 부담금은 재정수입의 획득에 정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분담금에서는 행위이행의무와 금전급부의무의 연결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법상의 보편적서비스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는 통상 행위이행(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가 아닌 금전급부의무로 나타난다. 즉, 대다수의 전기통신사업자들의 행위(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는 손실보전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소멸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보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보편적서비스손실보전분담금은 일정한 조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매출액에 따라 보편적서비스의 재원조달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편적서비스의 재원조달은 국가에 의해 야기된 부담불평등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서비스손실보전분담금은 사기업체인 보편적서비스제공사업자의 손실보전에 사용될 뿐이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서비스손실보전분담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보편적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마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그 재정조달목적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조세에 근접하는 특성 때문에 이러한 부담금이 납발될 경우 자칫 조세수입을 재정조달의 1차적 수단으로 명정한 헌법 제38조와 제59조의 취지를 공동화하고 공권력의 재정수입획득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통제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재정조달기능을 갖는 부담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당화요건이 충족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즉, 국가 등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라면 반드시 조세의 형식으로 해야 하지, 거기에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관련성은 당해 과제에 관하여 납부의무자 집단에게 특별한 재정책임이 인정되고 주로 그 부담금 수입이 납부의무자 집단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때 인정될 수 있다. 셋째, 이상과 같은 부담금의 예외적 성격과 특히 부담금이 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체계로부터 이탈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성을 감안할 때,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될 것이 요구된다.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분담금은 납부의무자 집단의 동질성(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 특별한 집단책임(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의 측면에서는 재정조달기능을 갖는 부담금이라고 볼 수 있는 한편, 집단의 유익을 위한 부담금사용(기금을 납부하는 의무자 집단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음), 시간적 제한성(임시적이지 않고 계속적임)의 측면에서는 재정조달기능을 갖는 부담금으로 볼 수 없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분담금의 법적 성질 문제는 그 정당성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나, 현재의 공법상 금전급부의무의 분류체계 속에서 제대로 그 법적 성질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보편적서

비스 손실보전분담금이 사용료,수수료와 같은 수익부담이나 조세가 아닌 것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종래 비조세 공과금과 동의어로 파악되던 특별부담금의 범주에 제대로 포함시키기도 어렵다. 정확하게 조정적 기능이나 유도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조달적 부담금의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도 아니다.

최근 방송·통신의 융합이 논의되면서 방송의 보편적서비스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방송의 보편적서비스를 위한 손실보전을 위해 별도 기금의 설치가 필요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통신분야의 보편적서비스기금과 방송분야의 보편적서비스기금을 통합하자는 논의도 제기될 수 있다. 이는 향후의 연구과제로서 보편적서비스의 정의를 새롭게 정할 필요성과도 맞물려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2 제4항은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 및 그 재원의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편적역무기금의 설치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서 규정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된 고시 내용도 개정하여야 한다.

다. 재원마련 방법

보편적역무 기금이 설치되면 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보편적역무 기금의 원천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 일반 정부세입으로부터의 지원(정부부담)
- 통신사업자들로부터의 지원(사업자부담)
- 통신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의 지원(이용자부담)
- 통신사업의 민영화, 주파수 경매, 면허료로부터의 지원
-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원

실현가능성에서 볼 때, 국제기구들로부터의 지원과 통신사업의 민영화, 주파수 경매, 면허료에서의 지원은 대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우리 경제상황으로 볼 때,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원을 받기는 어렵고 민영화나 주파수 경매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지속적 기금 확보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국, 정부, 사업자, 이용자 중

부담하는 방안이 실현가능성이 높다. 물론 세 주체가 나누어 부담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기금이 사업자나 이용자로부터 조달된다면 기금의 징수와 사용을 투명하게 하고 비차별적이고 경쟁중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이상으로 부담을 지워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현실적으로 기금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기획예산처가 새로운 기금의 창설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어서 기존의 (구)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인 정보통신진흥기금 외에 별도 기금을 신설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논리도 가능하므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보편적서비스손실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분담금의 재원이 되는 기금은 오로지 보편적서비스 제공에 대한 손실을 보전한다는 목적으로만 특정되어야 부담금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즉, 비조세 공과금인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분담금의 수입은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기금과 통합하여 운용·관리할 수 없으므로 보편적서비스만을 위한 기금은 별도로 신설하여야 한다.

라. 결 론

보편적서비스 기금이 가상기금이던 실질기금이던 법률적인 성격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역무의 보편적 서비스를 지정하거나 사업자에게 적자분담금 보전의무를 지우는 것은 매우 엄격한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제적으로도 현재의 보편적서비스 제도하에서 실질기금을 도입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다양한 서비스가 보편적서비스로 지정되고 사업자간 정산관계가 매우 복잡해질 경우 정부의 창구를 허브로 사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만 실질기금의 도입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종수(2006),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분담금의 법적 성질,”공법연구 제35집 제2호, pp.395 ~ 426.
- 여유진 · 김미곤(2007), 『2007년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외(2005),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정책보고서 2005-4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691 ~ 741.
- 통계청(2006), “가계조사연보”.
- _____(2007), “소비자물가지조사가격월보”.
- ARCEP(2008), “Annual Report 2007”.
- DCITA(2007), “Telecommunications Universal Service Obligation(USO) Review Issues Paper”.
- EC(2002), Directive 2002/2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universal service and user’s rights relating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Universal Service Directive), 2002. 4. 24.
- FCC(2006), “The FCC’s Universal Service Support Mechanisms”.
- _____(2006. 6. 27), “FCC updates approach for assessing contributions to the federal universal service fund”, FCC News.
- _____(2007), “Proposed Fourth Quarter 2007 Universal Service Contribution Factor”.
- Federal and State Staff(2007), “Universal Service Monitoring Report CC-Docket No.98-202”, Federal and State Joint Board on Universal Service Fund.
- ITU(2006), “Report on innovative solutions for the management and financing of universal service and universal access policies”.
- _____(2007), “Trends in Telecommunication Reform 2007”.

- Marron, D.B.(2006), “CBO TESTIMONY, Potential Future spending from the Universal Service Fund”, CONGRESSIONAL BUDGET OFFICE.
- Ofcom(2006), “Review of the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 Ovum(2007), “Italy(country regulation overview)”.
- OLDP, Telecommunications(Consumer Protection and Service Standards) Act 1999, 2007. 9. 25.
- USAC(2007), “Federal Universal Service Support Mechanisms Quarterly Contribution Base for the Fourth Quarter 2007”.
- _____(2007), “Total Quarterly Projections v. Disbursements-2003-2Q2007”.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USAC 홈페이지(<http://www.usac.org>)

호주 Telstra 홈페이지(www.telstra.com.au/accessforeveryone/index.htm)

BT Price List(<http://www.serviceview.bt.com>)

ITU 홈페이지([http://www.itu.int/ITU-D/icteye/Reports.aspx#\(ITU, BDT Country Profile, 2008\)](http://www.itu.int/ITU-D/icteye/Reports.aspx#(ITU, BDT Country Profile,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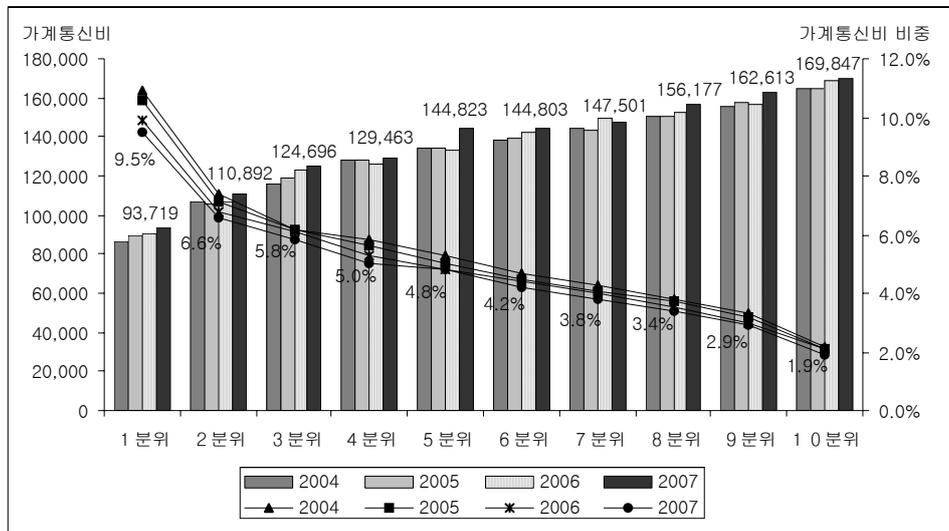
<첨부 1>

방송통신위원회의 보편적서비스 확대방안(2008. 6)

□ 저소득층 가계통신비 현황

- 소득하위 10% 가구의 소득대비 통신비 비중은 9.5%로 소득상위 10%가구 (1.9%) 보다 5배 높아 소득이 적을수록 부담이 높은 상황
- 가계통신비중 이동전화가 6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층에게 통신비 중 이동전화 요금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소득대비 가계통신비 비중(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구기준)]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월 소득(만원)	98	167	214	257	300	342	392	457	559	888

□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제도 현황 및 문제점

-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미만이거나 65세이상, 중증장애인, 근로곤란자에 한하여 통신요금 감면을 해주고 있음
- 감면서비스는 시내·외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번호안내 등으로 가입비 면제, 서비스별 월 이용요금의 30~50% 수준에서 감면

〈서비스별 저소득층 요금감면 현황('07년 말)〉

구 분	요금감면 내용	감면액(억원)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통화 225분 무료(장애인은 월 통화료의 50% 감면)	120
시외전화	- 시외통화 225분 무료	14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요금의 30%	107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표준 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데이터 월 통화료 각각 35%	59
무선호출	- 기본사용료의 30% 감면	-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4

-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감면대상자는 71만명이지만, 실제 감면을 받고 있는 자는 10%수준인 7만 3천명에 불과하며, 금액도 59억원 수준
 - 저소득층은 연령제한과 저소득으로 인해 실제적인 감면을 못 받고 있는 실정
- 경제활동 연령인 18세 이상 64세미만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감면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3만원이하로 이동통신비를 지불하는 이용자가 76.5%로, 일반가입자와 비교하면 저소득층 대부분이 소액이용자임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필요성

-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전기·가스, 의료서비스처럼 통신서비스도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서비스임
- 특히 독거노인 및 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층에게도 어떤 장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편리한 이동전화가 유선전화에 비해 가장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자리매겨짐
- 이처럼 이동전화는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사회로부터 점점 소외되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통신수단이란 점에서,
 - － 저소득층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이동전화 요금 감면 방안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저소득층 감면대상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및 가구
 - ※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 － 차상위 계층은 생계형편이 수급자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는 차상위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실정임
 - ※ 차상위 계층은 개별법률, 지자체 자체사업 등으로부터 영유아 보육비, 한부모 자녀 학비 보조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음
- 지원대상 저소득층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약 153만명, 차상위계층 약 263만명 등 총 416만명에 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효과〉

- 대상범위: 기초생활수급자 18세미만, 65세이상에서
→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감면방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감면에서
→ 기본료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유선전화 수준)
차상위계층은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합 계
예상감면자 수	137만명			236만명		373만명
요금감면방법	가입비 면제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감면	가입비 면제	기본료 통화료 35%감면	—
예상감면액(연간)	178억원	2,137억원	516억원	307억원	1,912억원	5,050억원

※ 예상감면자수 = 감면대상자 × 이동전화보급률(90%)

〈첨부 2〉

주요 통신사업자의 사회공헌 활동

1. KT

가. KT 사회공헌활동 현황(2008. 5. 16)

- KT그룹 사회공헌 테마: ‘나라사랑’
- 연도별 사회공헌 비용 내역

(단위: 억원)

주요항목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복지통신할인제공*	1,335	1,078	968	777
IT서포터즈운영	430			
문화예술후원	20	26	36	38
임직원자원봉사	18	17	12	15
공익사업운영	18	17	15	15
KT아트홀	11			
KT선수단	46	28	33	50
IT마스터장학금	8	10	10	9
계	1,886	1,176	1,074	904

* 보편적 의무 복지통신 요금감면 및 자발적 요금감면 포함

 KT 사랑의 봉사단

- 창단 시기: 2001. 3
- 운영규모(2008년): 234개 팀 24,000명(임직원의 35%)
- 활동실적(2007년): 연 인원 35,000명이 3,800회 실시
- 주요활동
 - 설 · 추석 · 연말/연시 지역사회 소외이웃돕기 활동
 - 재난재해 피해복구 지원 활동
 - 농촌일손돕기, 문화재지킴이, KT공부방 봉사활동, 어르신 휴대폰 교육 등

- KT 사랑나눔기금
 - 운영규모: 42억(2008년)
 - 참여현황: 임직원의 78%(29,500명 참여)
- 주요 공익사업(공익사업별 세부내역 참조)
 - IT서포터즈
 - 목적: 디지털 지식기반 사회 구축을 위하여 KT 직원의 IT 전문 기술을 기부
 - 주요활동: IT활용증진, IT역량배양, IT컨설팅 등
 - 정보화 역기능 해소
 - 목적: IT 기술 발전에 따른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확산
 - 주요활동: 정보화역기능 예방교육, 타임코디서비스, 클린아이 서비스, 인터넷 윤리포럼 개최
 - KT 청각장애아 소리 찾기
 - 목적: 청각장애 어린이에게 소리를 찾아 주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활동: 인공와우(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 치료비, 디지털 보청기 지원

[KT 공익사업별 세부내역]



- 저출산 해소
 - － 목적: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보육 및 교육 지원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
 - － 주요활동: KT 공부방 IT 업그레이드, KT어린이집 운영
- KT Art Hall
 - － 목적: KT의 자산을 사회에 기부하여 국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 주요활동: 각종 문화공연 및 사회공헌활동의 장

나. KT 사회공헌활동 세부 내용

□ IT나눔①: IT 서포터즈 활동

- 개요: 국민의 IT 활용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대한민국을 디지털 지식강국으로 선도해가기 위해 KT가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무료 봉사단체
- 출범일: 2007. 2. 21
- 운영현황: 전국 26개 권역 400명으로 구성(KT 업무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전일제로 국민들의 IT 지원을 위한 사회 봉사 활동 진행)하여 2007년 한 해 15만명에게 IT나눔 활동 진행
- 주요활동
 - － IT활용증진: 인터넷, 멀티미디어를 실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IT역량배양: 인터넷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 및 단체교육을 통하여 역량을 배가 시키기 위한 지원
 - － IT성능진단: 영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IT성능 진단으로 최적의 환경을 꾸밀 수 있도록 지원

□ IT나눔②: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확산

- ‘정보화 역기능 예방’ 전국 순회 교육(2002. 12~)
 - － 2003년부터 142회에 걸쳐 4만4천명에게 정보화역기능 예방 교육 진행
 - － 전국 초중고생 학부모 순회교육(시도 교육청 공동, 2007년 학부모 5천 명에게 교육완료)
 - － 청소년‘인터넷 윤리’교육(2007년 전국 19개 중학교에서 7천명 대상 실시)

- 인터넷 윤리포럼 개최(2005. 11~)
 - 건전한 인터넷 문화와 윤리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포럼 및 전문가 초청 좌담회를 월 1회 정기 개최(11회)
- ‘네티켓 지키기’ 공익포스터 공모전
 - 공익포스터 우수작 100편 공모
 - 전국 순회교육 장소 및 공공장소에서 전시(27회)
- 어르신 휴대폰 교육(2006. 9~2007. 6)
 - 60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문자메세지, 부가가능 사용법 교육
 - 2007년 수도권 25개 복지관에서 500명 대상 추진
 - 주1회 KT IT 전문봉사단원이 일대일 휴대폰 사용법 교육 봉사
- IT마스터 장학금(1988년~)
 - 전국 120개 대학 IT 전공 성적 우수 장학생(3, 4학년) 250여명대상 장학금 지원(2007년까지 20년간 4,900명을 선발, 125억원 지급)
- 글로벌 사랑나눔: 해외 IT자원봉사 활동
 - 해외 IT 자원봉사 및 정보격차 해소(2004년~)
 - 추진현황
 - ▶ 태국 푸켓 까말라 초등학교 이러닝 센터 구축 자원봉사
 - ▶ 우즈베키스탄, 알제리, 튀니지 등 정보통신 전문대학 IT장비 기증
 - ▶ 베트남, 과테말라, 몽골 등 저소득국가 대상 중고PC 기증
 - 한민족 IT 네트워크 지원 및 한민족 문화 교육 활동
 - 추진현황
 - ▶ 연해주 고려인 문화센터 PC 교육장 구축 지원
 - ▶ 우즈베키스탄 세종한글학교 PC 교육장 지원
- 사랑나눔①: 사회복지 분야
 - 청각장애인 소리찾기(2003년~)
 - 정보통신 세상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청각장애 청소년 대상 인공와우 수술

및 재활치료, 보청기 지원

- ▶ 2007년 지원현황: 인공와우수술 17명, 보청기 지원 68명

— 추진현황

- ▶ 인공와우 수술 및 언어치료 지원(1인당 1천만원 이내)
- ▶ 디지털 보청기 지원(1인당 200만원)
- ▶ 수혜자 수: 225명(2007년 현재)

○ 1사 1촌 자매결연 마을 농산물 구매 및 소외이웃 지원

- 전국 200개 농어촌 마을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마을의 일손 돕기 자원봉사와 함께 우리 농산물 구입 활동 진행
- 구입한 농산물은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여 나눔에 나눔을 더하는 사회공헌 활동 추진

○ 가출 청소년의 쉼터 ‘드림하우스’ 지원(2006년 12월~)

- YMCA 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지원 활동
- 개념: 고객 기부 콜보너스를 활용하여 KT도 1:1로 매칭하여 기금을 출연,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활동에 지원

□ 사랑나눔②: 저출산 해소

○ KT 공부방 업그레이드 활동

- 목적: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자녀의 방과후 교육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극복에 앞장서는 기업 역할 수행
- KT의 전국 110개 지사에서 이용환경이 열악한 110개 KT 공부방 지원활동 추진(2008년 현재 62개)
- 주요활동
 - ▶ 공부방 IT 시설과 학습환경을 업그레이드 및 학습지도 봉사
 - ▶ KT 방과 후 학교: 노는 토요일을 활용한 현장 체험 학습(부모를 대신하여 봉사단원들이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박물관, 공연장, 지역문화재를 방문하여 현장체험학습 지원)

- KT 어린이집 운영
 - － 목적: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자녀의 보육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
 - － 2010년까지 전국에 10개 KT 어린이집 시설 구축 운영
 - －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자녀 수용
 - － 차별화된 교육지원: 보육시설 모니터링(비즈메카 아이캠), 메가TV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지원 등
- 분당서울대병원 미숙아 치료 지원(2003년~): 매년 1,500만원 지원
- 문화나눔: 문화예술 복합공간 “KT Art Hall”
 - 목적: KT 방문고객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문화 휴식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KT의 시설을 사회에 환원하여 국민들에게 문화나눔의 장으로 제공
 - 주요내용
 -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공연의 장
 - － 낙도, 산간벽지, KT공부방 어린이 초청 문화나눔 활동
 - － 한국 방문 외국인을 위한 한국전통문화 체험 장소
 - 2007년 활동 실적
 - － ‘천원의 나눔’ 재즈 콘서트 공연 개최: 270회
 - － ‘천원의 나눔’ 입장료 활용 디지털 보청기 제공: 25명지원
 - － 시인작가 무료 대관 및 전시회 개최: 9회
- 그린나눔: 환경 및 문화유산 보호 활동
 - 동강 지킴이 활동(2003년~)
 - － (사) 한국 내셔널트러스트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환경보전 사업
 - － 동강 제장마을 전통가옥 복원사업 지원(자원봉사 및 기부)
 - － 동강 제장마을 전통가옥 준공(2005. 8. 28)
 - 강화매화마름 군락지 보존 활동(2003년~)
 - － 주요활동
 - ▶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한 목책 산책로 조성(2003년)

- ▶ 전통방식 모내기 및 추수 활동 지원(매년 4월, 10월)
- ▶ 일반인 대상 매화마름 관찰 행사 진행(매년 5월)
- KT와 함께하는 아름다운가게 분당이매점 오픈(2005. 3)
 - 성남, 분당지역에 아름다운가게 상설점 무상 제공
 - 성남, 분당지역 생활용품 재활용 환경운동 선도
 - 국내 아름다운 가게 중 매출 2위, 주민 물품 기부 1위
- ‘문화재 지킴이’ 나라사랑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
 - 덕수궁, 독도 등 전국 12개 문화재 대상 환경정화 봉사활동
 - 지역별 정기 봉사활동 추진(가족봉사활동 병행)
 - 주요활동: 문화재 주변 청소, 안내판 설치 및 보수, 고건물 창호지 바르기 등

2. SK텔레콤

가. 소외청소년 지원

□ 1318해피존

- ‘1318해피존’은 기존의 초등학생 위주로 구성된 지역아동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대상을 사각지대에 있던 1318세대(13~18세 청소년) 소외 청소년들에 맞추어 설립된 지원센터로 자립·상담 프로그램과 함께 급식도 제공하는 종합적인 교육·복지 사업
- 2006년부터 시작된 ‘1318해피존’사업은 현재 전국 86개 도시 및 88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지역특성에 따라 도시형과 농산어촌형으로 구분하여 전국 29개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도시형 20개소(강원춘천, 경기성남, 경기용인, 경남진해, 서울관악, 서울서대문, 서울송파, 울산, 강원강릉, 경기부천, 경기평택, 경기하남, 경남김해, 광주, 대전, 부산, 서울광진, 인천, 전북군산, 제주도)
 - 농산어촌형 9개소(강원홍천, 경남거창, 경북영덕, 전남곡성, 전북장수, 충남서천, 충북단양, 전남강진, 전남함평) 등 전국 하고 있다.

- 1318 해피존은 지역사회 복지력을 향상시키는 복지 인프라 구축 형태로 운영되어 129명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325명의 운영위원 및 375명 전문영역교사, 961명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함께 활동하고 있음
- 1318해피존 사업은 청소년을 위해 ▲학습지원 ▲자립지원 ▲문화지원 ▲안전 및 급식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지역 특화프로그램 제공 ▲Skids 프로그램 제공 등 7대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
 - 특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영어, 수학, 논술 등 학습지원과 SK자원봉사단과 연계한 IT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수 청소년을 선발하여 체계적 진학과 취업지원까지 제공

□ 해피 뮤직 스쿨

- 해피뮤직스쿨은 SK텔레콤과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들이 뜻을 모아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음악 체험의 기회 제공은 물론, 음악 영재를 발굴하여 이들을 세계적인 연주자로 키워내고자 하는 새로운 차원의 클래식 음악교육 프로그램임
-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의 단계를 거쳐 2007년 2월 45명을 선발했으며, 이 학생들은 총 26주간 2학기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강사의 개인 레슨, 앙상블 및 그룹레슨을 받았음
 - 2008년에는 60명을 선발 교육중
- 해피뮤직스쿨은 미국 줄리어드 음악대학에서 199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MAP (Music Advancement Program)을 한국 현실에 맞게 벤치마킹 한 것으로 줄리어드 음대의 교육복지 디렉터인 엘리슨 스콧 윌리엄스가 고문을 맡았으며, 줄리어드 음대 출신의 정상급 첼리스트인 송영훈 연주자가 음악감독을 맡았음
-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의 3개 파트로 진행되며 각 음악파트장 역시 백주영 서울대 음대교수, 현민자 연세대 음대 명예교수, 주희성 서울대 음대교수 등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들이 맡고, 13명의 각 파트별 전문강사가 개인 레슨을 담당하는 등 최고 수준의 음악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해피 뮤지컬 스쿨

- SK텔레콤은 2007년 8월부터 밝은청소년지원센터·(사)공연예술아카데미와 함께 서울·경기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뮤지컬 스쿨을 진행하고 있음
 - － 뮤지컬에 관심이 있는 저소득·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생관확립과 특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기초교육을 통한 오디션을 진행 중이며 그 중 역량이 뛰어난 20여 명의 청소년은 6개월 일정으로 뮤지컬 배우 출신 강사들로부터 전문교육을 받을 예정
 - － 평소 뮤지컬 등 문화활동을 접하기 힘든 청소년에게 단순 일회성 체험 수준을 넘어 전문적인 뮤지컬 교육을 지원하고 재능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청소년 모바일 상담

- 국가청소년위원회, 동서남북 모바일 커뮤니티와 공동으로 SMS를 통한 ‘청소년 모바일 상담’은 2007년 4월 18일, 협약식을 갖고 정식 서비스 시작
 - － 청소년들이 신변노출의 부담 없이 무료 SMS를 통해 24시간 고민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용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다운받아 컴퓨터 채팅 형태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수신 번호를 #1388으로 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언제든지 고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모바일 상담’ 서비스는 SK텔레콤에서는 상담 문자메시지 요금 등 모든 통신요금을 무료로 지원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전문 상담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사)동서남북 모바일 커뮤니티는 사업주체로서 시스템 개발 및 사업 운영을 맡음
 - － 심층상담이 필요할 경우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전국 142개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하이티처

- ‘하이티처(Hi-Teacher)’는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가 각 지역 보육원 및 공부방 아동, 청소년의 학습 및 IT활용, 예/체능 교육을 도울 뿐만 아니라 멘토활동까지 하는 1:1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상/하반기 각각 450명, 총 900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16주간씩 자원봉사를 전개

□ 프로젝트 I

- 디지털 문화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이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를 발견,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새로운 자원봉사 프로그램
 - 2006년에는 새터민(탈북자) 아동을 대상으로, 2005년과 2007년에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소외지역 아동들이 문화적 경험을 나누며 긍정적인 삶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갖도록 도왔음
 - SK텔레콤은 디지털카메라·캠코더 등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작품 제작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상작품 전시회는 물론 향후 해외 작품 출전, 견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 Caring at Columbia

- SK텔레콤은 2006년부터 콜롬비아대학 메디컬센터 내 ‘Caring at Columbia’ 센터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상호 무상교환 협약을 맺고, 2006년 8월부터 국내 상황과 정서에 맞게 재구성한 ‘Caring at Columbia’ 프로그램을 아동과 청소년,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학교 및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음
 - 2007년에는 전문 아트 테라피스트들의 지도 아래 서울과 성남지역 초·중·고등학교 7개교 및 청소년기관 2개소에서 정서치료대상 아동 및 청소년 106명에게 실시

3. KTF

가. KTF의 사회공헌 소개자료(2008. 5월 사회공헌팀)

1) 고객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활동

□ 『Think Korea! 요금기금 사업』

- KTF는 고객들과 함께 펼치는 나라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각종 Think Korea 요금을 출시하여 NGO 및 공익 단체들의 나라사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 Think Korea 요금은 현재 고구려, 독도는 우리땅, 한민족사랑 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고객 1명당 월 500원을 KTF가 Think Korea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매년 90만 명 이상이 Think Korea 요금 제도를 활용한 역사 지키기 사업에 동참하고 있음
 - 이렇게 적립된 기금은 국민들의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역사 바로 지키기 캠페인에 사용되고 있으며, 역사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청소년들이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해외와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역사탐방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 KTF는 이러한 활동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문화재청과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을 맺고 “고구려 지킴이”로서 고구려 역사 알리기와 유적보호에 앞장서고 있음

□ 『SHOW로 나누는 고객 봉사활동』

- KTF는 2007년 3월 국내 최초로 SHOW 전국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SHOW를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 우선 2007년에는 5월부터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영상만남을 신청한 사연신청자와 면회대상자를 찾아가 화상통화를 주선해 주는 ‘SHOW천사’ 활동을 펼쳐 110여건의 따뜻한 사연을 처리
 - 이어 2008년부터는 SHOW사이트(www.show.co.kr)를 활용하여 고객들이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SHOW 나누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

으며, 그 첫번째 활동으로 4월초 중국의 쿠부치 사막을 찾아 황사 방지를 위한 식목 프로그램을 진행

-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입양아이를 위한 행복한 SHOW 나누기 축제와 함께 그동안 디지털 문화에서 소외되었던 (조)부모님과 휴대폰을 활용한 문화 공감 및 가족간 의사소통 기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어르신 휴대폰 교육 체험행사를 진행

- 앞으로도 KTF는 ‘SHOW 나누기’ 활동을 통해 고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

□ 「청소년 희망나눔기금」

- 고객의 다양한 사회 참여활동을 꾸며내고 있는 KTF에서는 2006년 5월부터 고객들이 매월 본인의 요금납부를 통해 손쉽게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예술, 과학, 인문사회,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재능과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KTF 고객들은 매월 본인의 요금 납부액을 1,000원 단위로 올림하고 그 차액만큼을 ‘청소년 희망나눔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KTF에서는 그간 4천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고객들의 대신해 청소년단체 협의회와 공동으로 각 분야에서 재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지원하고 있음

나. 청소년과 함께 지키는 우리의 역사문화

□ 「도전, 골든벨 Think Korea!」

- KTF는 2005년부터 청소년 참여 인기 방송 프로그램인 KBS ‘도전,골든벨’에 ‘우리역사 바로 지키기 Think Korea’ 문제를 고정적으로 출제하여 청소년들의 역사의식 고취에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이 문제를 통과한 학생들에게는 여름과 겨울방학 시기를 활용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민족의 역사현장을 찾아 그 의미와 함께 우리나라

가 처해 있는 현실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이 사회에서 지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인재들에게 바른 역사의식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여름에는 제7기 Think Korea 해외 역사탐방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 「청소년 역사지킴이 톡코(thinkkorea.ktf.com)」

○ ‘청소년 역사지킴이 톡코’는 청소년들이 직접 구상한 역사 수호 활동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프로그램임. 청소년들이 역사 분야의 조사연구, 탐방, 봉사활동 등 계획을 접수하고, 활동준비, 실행,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2007년 처음으로 청소년 역사지킴이 1기를 선발하였으며, 온라인 공간(thinkkorea.ktf.com)을 마련해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 올해에는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역사탐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다양한 체험기회를 준비하고 있음

□ 「세계 속 한민족 청소년 육성」

○ KTF는 2005년부터 매년 해외동포 청소년들이 우리의 얼과 문화, 국토를 직접 느껴 볼 수 있도록 한민족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아울러 2006년부터 ‘동북아평화연대’와 같은 전문기관과 함께 중국 조선족, 러시아 고려인, 재일교포 등 한민족 청소년들이 한국과 한민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현지 ‘KTF 한민족 문화교실’ 설치, 역사·문화 온라인 학습사이트(www.ourac.com) 운영, IT 교육실 지원 등 활발한 한민족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음

－ 2008년에는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러시아와 중국의 소·중학교 4곳에 7~10호 문화교실을 설치하고, 한민족의 문화를 전파시킨다는 계획 아래 현지 방문단을 준비하고 있음

○ 이밖에 ‘사이버외교관 반크’와 공동으로 한국의 역사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

하는 민간 청소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아시아 평화 대사(Asia Peace Maker)’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으며, 현재 300여명의 청소년 지역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이와 함께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UCC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

□ 「KTF IT 공부방」

- KTF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과 함께 정보통신 No.1 Korea의 희망을 키운다’는 취지로 ‘KTF IT공부방’ 활동을 펼치고 있음
- ‘KTF IT공부방’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 또는 타 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시설, 비인가 대안학교, 청소년 자활기관, 도서 및 격오지 공부방 등을 정기적으로 선정하여 PC 및 OA기기를 설치하고, KTF 임직원들이 해당 지역 청소년들과 교류활동을 진행하는 IT봉사활동으로, 2003년 8월 1호 지원을 시작해 2008년 말까지 65호를 목표로 매월 1개소씩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음

□ 「KTF 청소년 합창단」

- KTF는 2006년 9월 ‘KTF 청소년 합창단’을 창단, ‘소리’를 통해 소통과 화합, 사랑의 메세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음
- KTF 청소년 합창단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문화를 경험하고,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통해 미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 기회와 함께 우수 강사진의 음악 교육, 다양한 예술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합창단은 서울 강남에 연습실을 마련하고, 수도권 소재 초·중학생 50여명을 선발하여 정기적인 공연 및 방문연주 등 문화나눔활동을 펼치고 있음
- 올해에는 북경 올림픽 기간 중 하얼빈, 연길 등 조선족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동북지역을 찾아 한중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콘서트 투어를 가짐

다. 임직원 봉사 커뮤니티, 'KTF 희망봉사단'

- KTF는 지난 2002년 2월 임직원봉사단을 발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으며, 2004년 10월에는 사회공헌팀을 조직, 직원들의 봉사활동을 전담 지원하고 있음
 - － 현재 월 평균 100여팀 800여명이 자발적으로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회사의 전략적 사회공헌 Think Korea 활동과 보조를 맞추어 새로운 봉사분야를 개척하고 있음
- 「실천하는 사랑, Think Korea 봉사」
 - 현재 KTF 임직원들은 첨단 정보통신회사인 KTF의 자원과 임직원들이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 KTF만의 차별화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음
 - － 이를 위해 “1. 청소년 미래가치 교육활동 2. 세계 리더 청소년 양성·지원 활동 3. 청소년의 바른 국가·역사관 정립 4. 한민족 청소년 교류 자원 봉사 5. 청소년 건전문화 전파와 비전 상담” 이라는 5대 봉사활동방향을 정했으며, 회사에서도 임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봉사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봉사활동비 지원을 통하여 임직원들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 「Think Korea 장학사업」
 - KTF 임직원봉사단을 지칭하는 'KTF 희망봉사단'은 지난 1997년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밝은 미래의 희망을 준다는 취지에서 급여의 일정액을 매달 공제해 전국의 소년소녀가장, 독립유공자 후손 자녀 및 재외동포 청소년 2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 － 2002년부터 펼치고 있는 이 장학사업에는 직원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여 매년 2억원 가량을 모금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도 직원 모금액과 동일한 Think Korea 매칭펀드를 조성해 청소년들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나라의 미래를 떠받칠 기둥으로 자라나도록 돕고 있음

4. LG텔레콤

가. LG텔레콤 사회공헌 현황(2008년 5월)

- 국가유공자,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자 등에 가입비 면제
 -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기준의 기본료, 국내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청각/언어 장애인의 경우 SMS 요금 35% 추가 감면)
 - 청각장애인을 위한 손문자요금제(SMS 1,200건/월과 영상통화 60분 무료 제공)
 - 감면실적 및 제공계획

(단위: 억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계획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요금 감면	90	114	143	178	228	301	303	353	427

- 천재지변 대상 가입자 요금감면
 - 태풍, 집중호우, 산불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가입자에 요금 감면
 - 감면실적

(단위: 만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천재지변 요금감면	7,045	6,405	90	30	1,035	110

- 폰 앤 러브 행사
 - “폰앤편 사랑의 중고휴대폰 기부 캠페인”(2005. 9. 7~12. 31)
 - 고객들로부터 사용하지 않고 버려진 폐휴대폰을 기부받아 재활용 과정을 거쳐 사용가능한 단말기는 고객 임대폰으로 활용
 -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기증

○ 기부실적

(단위: 억원)

구 분	'03년	'05년	'06년	'0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	5	6	9

□ बैं크온 사랑의 자선냄비

- 구세군과 함께 बैं크온을 이용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집
- 자선냄비 모금활동과 더불어 자선냄비에 기부한 모든 사람에게 포토인화서비스(1000~2000원/장)를 무료로 이용하고 포토인화 키오스크에서 발생한 포토인화서비스 수익금 전액을 구세군에 기부
- LG텔레콤 임직원의 구세군 자선 성금 기부
- 기부실적

(단위: 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자선냄비	500	500	2,176

□ 100원의 기적

- 굿네이버스(구 한국이웃사랑회)와 함께 '100원의 기적' 프로젝트에 참여(2006. 2~현재, 당사는 배너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참여)
- 매월 100원의 기부금이 자동결제되는 방식으로 전세계 빈곤아동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임

□ 백혈병 및 소아암으로 투병중인 어린이 지원

- 정치, 정보통신, 문화/예술, 방송/연예, 스포츠 등 총 5개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유명인사(Korea Mover)를 네티즌이 선발
- Korea Mover가 사용한 통화요금을 전액 적립하여 백혈병 및 소아암으로 투병중인 아동에 기부
- 또한, 기분좋은 10원 사랑 실천 사내 캠페인이라는 사내 모금활동 전개

○ 기부실적

(단위: 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기분좋은통화	1,677	1,699	1,698	1,700

사랑나눔 헌혈행사

- 한마음 행사 일환으로 헌혈행사 진행
- 2008년 10월까지 교환국사와 지점이 있는 각 지방사업장까지 확대
- LG텔레콤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도 행사에 동참하도록 확대

인천공항초교 신도분교에 피아노·책걸상 지원

- 2007년 10월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인천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에 디지털 피아노와 책·걸상 기증(총 750만원)

농촌지역과 자매 결연

- 일사일촌 행사를 통해 농촌지역과 자매 결연을 맺어 농촌지역의 일손을 돕는 행사
- 결연지역

구 분	'05년	'07. 6월	'07. 11월
지 역	충북 진천 마두마을	전남 무안군 일로읍 산정 3리 도덕지 마을	경북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마을

500원 천사 사랑회

- 대리점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재학중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
 - 강남지점 상권내의 '은성중학교' 결식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
- 은성중학교 축구부 유니폼 및 전교생 학용품 세트 지급
- 2007년 분기별 300만원씩 약 1,200만원 지원

〈첨부 3〉 요금감면 통신서비스 이용실태 조사(2008. 7. 10)³²⁾

목 차

제 1 장 조사개요	121
제 2 장 주요결과 요약	124
제 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과 분석	133
1. 통신서비스 이용률	133
2. 통신서비스 이용용도(Base = 통신서비스 이용가구)	134
1) 유선전화 이용용도(Base = 유선전화 이용가구, N = 533명)	134
2) 이동전화 이용용도(Base = 이동전화 이용가구, N = 444명)	136
3) 인터넷 이용용도(Base = 인터넷 이용가구, N = 297명)	137
3. 통신서비스 월평균 이용요금(Base = 통신서비스 이용가구)	139
1) 유선전화 월평균 이용요금(Base = 유선전화 이용가구, N = 533명)	139
2) 이동전화 월평균 이용요금(Base = 이동전화 이용가구, N = 444명)	141
3) 인터넷 월평균 이용요금(Base = 인터넷 이용가구, N = 297명)	142
4. 통신서비스 미이용 이유(Base = 통신서비스 미이용가구)	144
1) 유선전화 미이용 이유(Base = 유선전화 미이용가구, N = 67명)	144
2) 이동전화 미이용 이유(Base = 이동전화 미이용 가구, N = 156명)	145
3) 인터넷 미이용 이유(Base = 인터넷 미이용 가구, N = 303명)	147
5. 가구 이동전화 구입방법(Base = 이동전화 이용가구, N = 444명)	148
6. 가구 이동전화 구입금액(Base = 이동전화 이용가구, N = 444명)	150
7. 통신비 요금감면 인지도	151
8. 요금감면 혜택중인 통신서비스 종류	153
9. 통신비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이유(Base = 인지자 중 요금감면 미혜택자, N = 42명)	154

32) 본 내용은 현대리서치가 KISDI의 위탁용역을 수행한 결과물임

10. 향후 이용 의향률(Base = 통신서비스 이용자, 미혜택자, N = 428명)	156
11. 자녀의 이동전화 이용금액	157
12. 국민기초생활보조금액	159
13. 가구 월평균 소득(국민기초생활보조금 포함)	161
14. 고객의 소리	162
제 4 장 차상위계층 결과 분석	164
1. 통신서비스 이용률	164
2. 통신서비스 이용용도(Base = 통신서비스 이용가구)	165
1) 유선전화 이용용도(Base = 유선전화 이용가구, N = 526명)	165
2) 이동전화 이용용도(Base = 이동전화 이용가구, N = 511명)	167
3) 인터넷 이용용도(Base = 인터넷 이용가구, N = 344명)	168
3. 통신서비스 월평균 이용요금(Base = 통신서비스 이용가구)	170
1) 유선전화 월평균 이용요금(Base = 유선전화 이용가구, N = 526명)	170
2) 이동전화 월평균 이용요금(Base = 이동전화 이용가구, N = 511명)	171
3) 인터넷 월평균 이용요금(Base = 인터넷 이용가구, N = 344명)	173
4. 통신서비스 미이용 이유(Base = 통신서비스 미이용가구)	174
1) 유선전화 미이용 이유(Base = 유선전화 미이용가구, N = 74명)	174
2) 이동전화 미이용 이유(Base = 이동전화 미이용 가구, N = 89)	176
3) 인터넷 미이용 이유(Base = 인터넷 미이용 가구, N = 256명)	177
5. 가구 이동전화 구입방법(Base = 이동전화 이용 가구, N = 511명)	179
6. 가구 이동전화 구입금액(Base = 이동전화 이용 가구, N = 511명)	180
7. 자녀의 이동전화 이용금액	182
8. 통신비 요금감면 혜택 이용의향	182
9. 보조금 종류	184
10. 보조금 금액	185
11. 가구 월평균 소득(보조금 포함)	187
12. 고객의 소리	188

제 1 장 조사개요

I. 조사목적

본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통신접근권 향상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시내전화, 이동전화 등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해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에 필요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II. 조사방법

1. 조사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유효표본: 1,200명(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00명, 차상위계층 600명)
3.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
4. 표본추출방법: 지역별 가구 비례 확률추출
5. 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4.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동일)
6. 조사기간: 2008년 6월 26일~6월 30일

III.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1.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Key · in-Programm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 PC for Win에 의해 분석됨

IV. 응답자특성(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전 체		600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구분	일반세대	281	46.8
	노인세대	144	24.0
	장애인세대	36	6.0
	노인 + 장애인 세대	30	5.0
	소년소녀가장세대	13	2.2
	모부자가정세대	96	16.0
권역별	서울	79	13.2
	경기/인천	112	18.7
	대전/충청	69	11.5
	광주/전라	118	19.7
	대구/경북	87	14.5
	부산/경남/울산	108	18.0
	강원/제주	27	4.5
성 별	남성	230	38.3
	여성	370	61.7
연령별	20대 미만	13	2.2
	20대	44	7.3
	30대	58	9.7
	40대	115	19.2
	50대	92	15.3
	60대 이상	278	46.3

V. 응답자 특성(차상위 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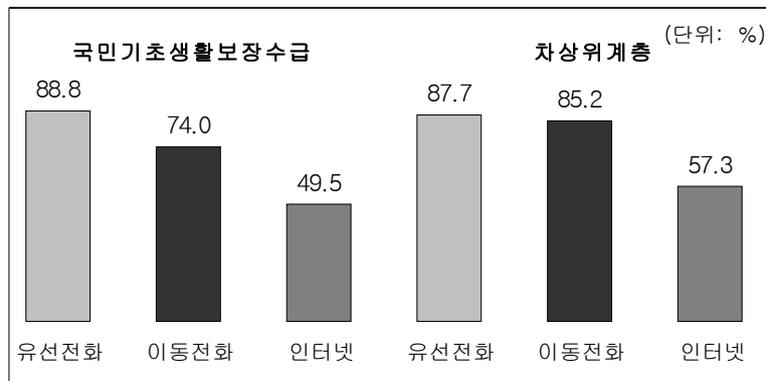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전 체		600	100.0
권역별	서울	129	21.5
	경기/인천	143	23.8
	대전/충청	62	10.3
	광주/전라	72	12.0
	대구/경북	71	11.8
	부산/경남/울산	102	17.0
	강원/제주	21	3.5
성 별	남성	219	36.5
	여성	381	63.5
연령별	20대 미만	2	0.3
	20대	44	7.3
	30대	107	17.8
	40대	148	24.7
	50대	97	16.2
	60대 이상	202	33.7
학생 여부	있다	277	46.2
	없다	323	53.8
노인층 여부	있다	234	39.0
	없다	366	61.0
장애인 여부	있다	217	36.2
	없다	383	63.8

제 2 장 주요결과 요약

1. 통신서비스 이용실태

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률은 유선전화가 88.8%, 이동전화가 74.0%, 초고속 인터넷이 49.5%로 나타났고, 차상위계층 가구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현황은 유선전화가 87.7%, 이동전화 85.2%, 초고속 인터넷이 57.3%로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보다 차상위계층의 이동전화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② 유선전화 이용용도(Base = 유선전화 이용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두 유선전화이용용도로 ‘가족 등 주변인과의 통화’가 주 목적인 것으로 나타남

조사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유선전화 이용용도	• 가족 등 주변인과 통화	92.9%	86.7%
	• 개인용무	5.3%	9.3%
	• 경제활동	1.1%	3.0%
	• 기타	0.8%	1.0%

③ 이동전화 이용용도(Base = 이동전화 이용가구)

- 이동전화의 이용용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75.7%)과 차상위계층(63.6%) 모두 ‘가족 등 주변인과의 통화’가 7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조사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이용용도	가족 등 주변인과의 통화	75.7%	63.6%
	개인용무	14.2%	17.0%
	경제활동	8.8%	19.0%
	기타	1.4%	0.4%

④ 인터넷 이용용도(Base = 인터넷 이용가구)

- 인터넷 이용용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학업 또는 업무용’이 4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여가활동’(27.9%), ‘가사 및 개인용무’(1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차상위계층은 ‘학업 또는 업무용’이 4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여가활동’(25.3%), ‘가사 및 개인용무’(2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조사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인터넷 이용용도	학업 또는 업무용	46.5%	44.2%
	여가활동	27.9%	25.3%
	가사 및 개인용무	13.5%	21.2%
	동호회나 모임 등 사회활동	2.7%	2.9%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교제활동	2.7%	2.3%
	기 타	2.4%	2.0%
	모름/ 무응답	4.4%	2.0%

⑤ 통신서비스 월평균 이용요금(Base = 통신서비스 이용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통신서비스 월평균 이용요금은 이동전화가 3.1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터넷(2.6만원), 유선전화(1.5만원)의 순으로 나타남
- 차상위계층의 통신서비스 월평균 이용요금은 이동전화가 4.1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터넷(2.8만원), 유선전화(1.7만원)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만원)

월평균 이용요금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	3.1	2.6
차상위계층	1.7	4.1	2.8

⑥ 유선전화 미이용 이유(Base = 유선전화 미이용가구)

- 유선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미이용 이유로 ‘요금부담’에 대한 의견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5.4%로 차상위계층(18.9%) 보다 높게 나타남

조사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유선전화 미이용 이유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68.7%	77.0%
	요금이 부담돼서	25.4%	18.9%
	기타	6.0%	4.1%

⑦ 이동전화 미이용이유(Base = 이동전화 미이용가구)

- 이동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69.2%), 차상위계층(64.0%) 모두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이 가장 높음
- 한편, ‘요금부담’에 대한 의견은 차상위계층이 34.8%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8.2%) 보다 높음

조사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미이용 이유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69.2%	64.0%
	요금이 부담돼서	28.2%	34.8%
	기타	1.9%	1.1%
	모름/ 무응답	0.6%	—

⑨ 인터넷 미이용이유(Base = 인터넷 미이용가구)

-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이용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이 45.2%로 가장 높고, 차상위계층은 ‘이용할 줄 모름’(46.1%)이 가장 높게 나타남

조사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인터넷 미이용 이유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45.2%	32.8%
	이용할 줄 모름	40.9%	46.1%
	요금이 부담돼서	9.9%	15.6%
	기타	4.0%	5.5%

2. 통신비 감면혜택 현황

① 통신비 요금감면 혜택 인지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통신비 요금감면 혜택에 대한 인지율은 35.7%로 나타남

(비인지: 64.3%)

조사 항목	조사 결과	
인지도	• 인지	35.7%
	• 비인지	64.3%

② 요금감면 혜택 중인 통신서비스 종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 대부분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71.3%)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한편, 요금감면 혜택 서비스를 받고 있는 통신서비스는 유선전화(2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이동전화(14.7%), 인터넷(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조사 항목	조사 결과	
요금감면 혜택 중인 통신서비스 종류	• 유선전화	21.7%
	• 이동전화	14.7%
	• 인터넷	12.5%
	•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3.5%
	• 없음	71.3%

③ 통신비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이유(Base = 인지도중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 통신비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이유로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가 54.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19.0%), ‘신청절차가 복잡해서’(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조사 항목	조사 결과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이유	•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	54.8%
	•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19.0%
	•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7.1%
	• 혜택 규모가 적어서	4.8%
	• 기타	14.3%

④ 향후 이용의향

- 요금감면 혜택에 적용될 경우 향후 이용의향률은 차상위계층이 84.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77.8%로 나타남

조사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이용의향	• 있다	77.8%	84.0%
	• 없다	22.2%	16.0%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통신서비스 요금감면혜택 이용자, 통신서비스 요금감면혜택 미이용자 중 미적용 대상자

⑤ 보조금 종류(차상위계층 대상)

- 차상위계층이 받고 있는 보조금 종류로는 ‘의료비 지원’이 19.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애수당 지원’(19.3%), ‘교통비 지원’(13.8%), ‘육아지원’(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조사 항목	조사 결과	
보조금 종류	• 의료비 지원	19.7%
	• 장애수당 지원	19.3%
	• 교통비 지원	13.8%
	• 육아지원	9.5%
	• 모부자 가정 지원	9.0%
	• 통신비 지원	5.7%
	• 노령연금 지원	4.8%
	• 교육비 지원	3.5%
	• 연료비 지원	3.0%
	• 생계비 지원	1.7%
	• 기타	4.0%
	• 모름/ 무응답	36.2%

⑥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금액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고 있는 지원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30만원 미만’이 21.8%로 가장 높고, 차상위계층은 ‘10만원 미만’이 39.8%로 가장 높음
- 한편, 차상위계층의 경우 ‘금액 외 기타 지원’을 받는 의견이 13.8%로 나타남

조사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부 지원금액	• 10만원 미만	12.3%	39.8%
	• 10~20 만원 미만	13.7%	17.2%
	• 20~30 만원 미만	21.8%	7.2%
	• 30~50 만원 미만	18.8%	4.3%
	• 50만원 이상	7.8%	1.8%
	• 금액외 기타지원	—	13.8%
	• 모름/ 무응답	25.5%	15.8%

㉓ 지원금 포함 월평균 소득

- 지원금을 포함한 가구 월평균 소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55.2%), 차상위계층(39.2%) 모두 '50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조사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월평균 가구 소득	• 50만원 미만	55.2%	39.2%
	• 50~100 만원 미만	22.3%	26.2%
	• 100~150 만원 미만	5.7%	12.7%
	• 150만원 이상	7.2%	8.3%
	• 모름/ 무응답	9.7%	13.7%

3. 이동전화 이용현황

㉑ 이동전화 구입

- 이동전화를 구입한 가구의 대부분은 '새것으로 구입하였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조사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구입	• 새것으로 구입	92.1%	96.1%
	• 중고폰 구입	5.2%	2.9%
	• 모름/ 무응답	2.7%	1.0%

② 이동전화 구입금액

- 이동전화 구입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가 24.5%로 가장 높고, 차상위계층은 20만원 이상이 29.5%로 가장 높음

조사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구입금액	• 5만원 미만	12.6%	10.6%
	• 5만원~10만원 미만	10.4%	10.0%
	• 10만원~15만원 미만	7.9%	6.5%
	• 15만원~20만원 미만	4.1%	3.9%
	• 20만원 이상	23.0%	29.5%
	• 무료	24.5%	22.7%
	• 모름/ 무응답	17.6%	16.8%

③ 자녀의 이동전화 월평균 이용금액

- 자녀의 이동전화 월평균 이용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 자녀의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단위: 만원)

조사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자녀 월평균 요금	• 초등학생	2.1	1.8
	• 중학생	2.4	2.4
	• 고등학생	2.5	3.0
	• 대학생	3.6	3.6

4. 고객의 소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통신비 요금관련 의견으로 모두 ‘통신서비스 요금인하 관련’ 의견이 높으며, 대상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통신비 요금감면에 대한 자유의견으로는 ‘통신서

비스 요금인하 관련'의견이 20.5%(n = 123명)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감면혜택 대상 및 범위 증가관련'(6.5%, n=39명), '제도·절차·홍보 관련'(2.5%, n=15명) 등의 의견이 많음

세부 항목으로는 '통신요금이 비싸다-기본료·통화료 인하'(16.0%, n=96명),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3.2%, 19명), '핸드폰 관련 요금이 비싸다-기본요금·통화료'(2.3%, n = 14명)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응답내용	사례수(명)	비율(%)
[통신서비스 요금인하관련]	123	20.5
[감면혜택 대상 및 범위 증가관련]	39	6.5
[제도, 절차, 홍보 관련]	15	2.5
[기타]	12	2.0
[없음/모름/무응답]	411	68.5

- 차상위계층의 통신비 요금감면에 대한 자유의견으로는 '통신서비스 요금인하 관련'의견이 24.3%(n = 146명)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감면혜택 대상 및 범위 증가관련'(8.5%, n = 51명), '제도·절차·홍보 관련'(1.0%, n = 6명) 등의 의견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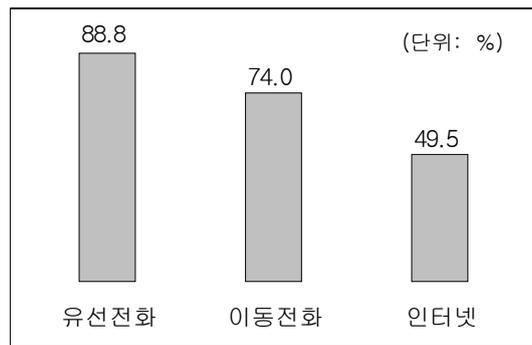
세부 항목으로는 '통신요금이 비싸다-기본료·통화료 인하'(15.8%, n=95명), '핸드폰 관련 요금이 비싸다-기본요금·통화료'(5.8%, n=35명),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3.0%, n = 18명)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응답내용	사례수(명)	비율(%)
[통신서비스 요금인하관련]	146	24.3
[감면혜택 대상 및 범위 증가관련]	51	8.5
[제도, 절차, 홍보 관련]	6	1.0
[기타]	15	2.5
[없음/모름/무응답]	382	63.7

제 3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과 분석

1. 통신서비스 이용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률은 유선전화가 88.8%, 이동전화 74.0%, 초고속 인터넷이 49.5%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세대별 유선전화 이용률은 장애인세대가 61.1%로 상대적으로 낮고 다른 세대는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대별 이동전화 이용률은 노인세대가 48.6%로 가장 낮고, 모부자가정세대(92.7%) · 소년소녀가장세대(92.3%)에서 높게 나타남.
- 세대별 인터넷 이용률은 노인세대(2.1%) · 노인+장애인세대(6.7%) · 장애인세대(33.3%)에서 가장 낮음.

〈응답자 특성별 통신서비스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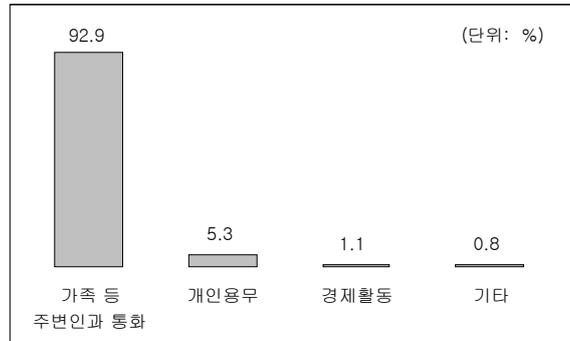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전 체		600	88.8	74.0	49.5
세대구분	일반세대	281	90.0	80.1	64.4
	노인세대	144	91.7	48.6	2.1
	장애인세대	36	61.1	83.3	33.3
	노인 + 장애인 세대	30	90.0	60.0	6.7
	소년소녀가장세대	13	92.3	92.3	92.3
	모부자가정세대	96	90.6	92.7	90.6
권역별	서울	79	83.5	78.5	49.4
	경기/인천	112	86.6	72.3	46.4
	대전/충청	69	81.2	63.8	39.1
	광주/전라	118	92.4	75.4	57.6
	대구/경북	87	97.7	77.0	47.1
	부산/경남/울산	108	92.6	77.8	49.1
	강원/제주	27	74.1	63.0	63.0
성 별	남성	230	85.2	75.2	49.6
	여성	370	91.1	73.2	49.5
연령별	20대 미만	13	92.3	92.3	92.3
	20대	44	88.6	86.4	93.2
	30대	58	91.4	96.6	89.7
	40대	115	83.5	92.2	81.7
	50대	92	83.7	85.9	53.3
	60대 이상	278	92.1	55.0	17.6

2. 통신서비스 이용용도(Base = 통신서비스 이용가구)

1) 유선전화 이용용도(Base = 유선전화 이용가구, N = 533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유선전화 이용용도로 ‘가족 등 주변인과의 통화’(92.9%)가 주목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유선전화의 이용용도로 ‘가족 등 주변인과의 통화’가 높게 나타남.
- 한편, ‘개인용무’가 주 이용용도인 응답자는 장애인세대(13.6%), 30대(9.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유선전화 이용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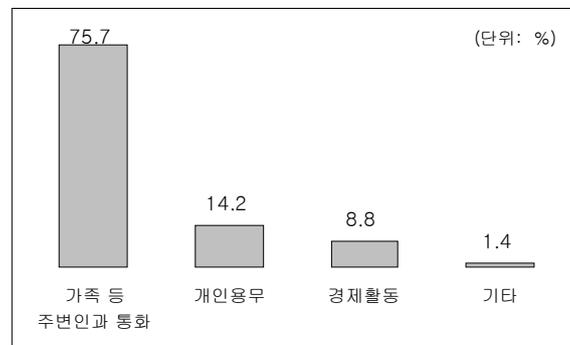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가족 등 주변인과 통화	개인용무	경제활동	기타
전 체		533	92.9	5.3	1.1	0.8
세대구분	일반세대	253	92.5	5.5	1.6	0.4
	노인세대	132	94.7	4.5	0.0	0.8
	장애인세대	22	72.7	13.6	4.5	9.1
	노인 + 장애인 세대	27	96.3	3.7	0.0	0.0
	소년소녀가장세대	12	91.7	8.3	0.0	0.0
	모부자가정세대	87	95.4	3.4	1.1	0.0
권역별	서울	66	93.9	3.0	3.0	0.0
	경기/인천	97	93.8	4.1	2.1	0.0
	대전/충청	56	94.6	5.4	0.0	0.0
	광주/전라	109	92.7	4.6	0.9	1.8
	대구/경북	85	91.8	8.2	0.0	0.0
	부산/경남/울산	100	93.0	4.0	1.0	2.0
	강원/제주	20	85.0	15.0	0.0	0.0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가족 등 주변인과 통화	개인용무	경제활동	기타
전 체		533	92.9	5.3	1.1	0.8
성별	남성	196	91.3	6.1	1.5	1.0
	여성	337	93.8	4.7	0.9	0.6
연령별	20대 미만	12	91.7	8.3	0.0	0.0
	20대	39	92.3	7.7	0.0	0.0
	30대	53	90.6	9.4	0.0	0.0
	40대	96	95.8	2.1	1.0	1.0
	50대	77	89.6	5.2	5.2	0.0
	60대 이상	256	93.4	5.1	0.4	1.2

2) 이동전화 이용용도(Base = 이동전화 이용가구, N=444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이동전화 이용용도로 ‘가족 등 주변인과의 통화’가 7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이동전화의 이용용도로 ‘가족 등 주변인과의 통화’가 높게 나타남.
- 한편, ‘개인용무’가 주 이용용도인 응답자는 장애인세대(30.0%), 20대(26.3%), 남성(18.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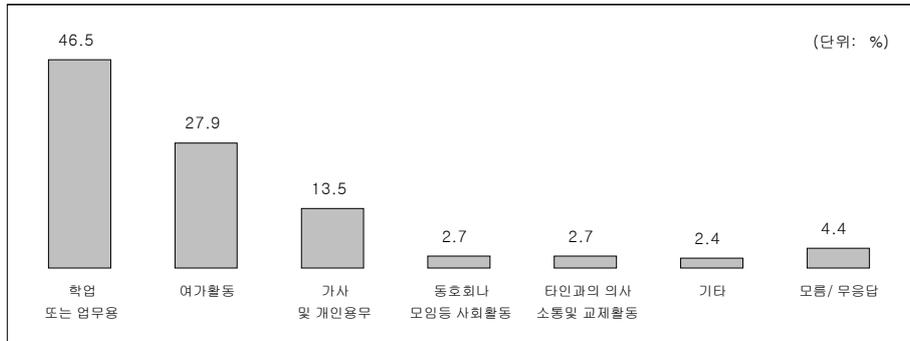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이동전화 이용용도〉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가족 등 주변인과 통화	개인용무	경제활동	기타
전 체		444	75.7	14.2	8.8	1.4
세대구분	일반세대	225	72.4	15.1	11.1	1.3
	노인세대	70	84.3	10.0	1.4	4.3
	장애인세대	30	60.0	30.0	10.0	0.0
	노인+ 장애인 세대	18	94.4	5.6	0.0	0.0
	소년소녀가장세대	12	100.0	0.0	0.0	0.0
	모부자가정세대	89	75.3	13.5	11.2	0.0
권역별	서울	62	77.4	11.3	11.3	0.0
	경기/인천	81	79.0	9.9	11.1	0.0
	대전/충청	44	61.4	20.5	11.4	6.8
	광주/전라	89	79.8	14.6	5.6	0.0
	대구/경북	67	76.1	13.4	9.0	1.5
	부산/경남/울산	84	71.4	17.9	8.3	2.4
	강원/제주	17	88.2	11.8	0.0	0.0
성 별	남성	173	67.6	18.5	12.1	1.7
	여성	271	80.8	11.4	6.6	1.1
연령별	20대 미만	12	100.0	0.0	0.0	0.0
	20대	38	71.1	26.3	2.6	0.0
	30대	56	62.5	16.1	21.4	0.0
	40대	106	70.8	17.0	11.3	0.9
	50대	79	68.4	15.2	13.9	2.5
	60대 이상	153	86.9	9.2	2.0	2.0

3) 인터넷 이용용도(Base = 인터넷 이용가구, N = 297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인터넷 이용용도로 ‘학업 또는 업무용’이 4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여가활동’(27.9%), ‘가사 및 개인용무’(1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인터넷 이용 용도로 ‘학업 또는 업무용’으로 이용한다는 의견은 모부자가정세대(52.9%) · 일반세대(47.0%), 40대(64.9%), 여성(51.9%) 등의 응답자에게 높게 나타남.
- 한편, ‘여가활동용’으로 주로 이용한다는 의견은 남성(35.1%), 20대미만(50.0%, n = 12명) · 20대(48.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인터넷 이용 용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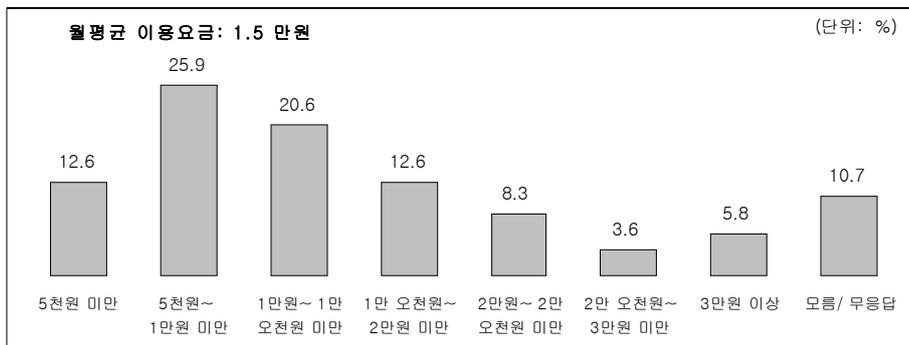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사례수 (명)	학업 또는 업무용	여가 활동	가사 및 개인 용무	동호회나 모임 등 사회 활동	타인 과의 의사 소통 및 교제 활동	기타	모름/ 무응답
전 체		297	46.5	27.9	13.5	2.7	2.7	2.4	4.4
세대 구분	일반세대	181	47.0	26.5	13.8	3.3	3.9	2.2	3.3
	노인세대	3	33.3	0.0	0.0	0.0	0.0	0.0	66.7
	장애인세대	12	25.0	25.0	41.7	0.0	0.0	8.3	0.0
	노인+ 장애인 세대	2	0.0	0.0	50.0	0.0	0.0	0.0	50.0
	소년소녀가장세대	12	25.0	50.0	25.0	0.0	0.0	0.0	0.0
	모부자가정세대	87	52.9	29.9	6.9	2.3	1.1	2.3	4.6
권역 별	서울	39	56.4	23.1	12.8	2.6	2.6	0.0	2.6
	경기/인천	52	44.2	21.2	15.4	7.7	1.9	1.9	7.7
	대전/충청	27	55.6	11.1	22.2	0.0	7.4	3.7	0.0
	광주/전라	68	39.7	35.3	13.2	1.5	4.4	2.9	2.9

응답자 특성		사례수 (명)	학업 또는 업무용	여가 활동	가사 및 개인 용무	동호회나 모임 등 사회 활동	타인과의 의사 소통 및 교제 활동	기타	모름/ 무응답
권역 별	대구/경북	41	48.8	31.7	7.3	2.4	0.0	2.4	7.3
	부산/경남/울산	53	45.3	32.1	11.3	1.9	0.0	3.8	5.7
	강원/제주	17	41.2	35.3	17.6	0.0	5.9	0.0	0.0
성별	남성	114	37.7	35.1	15.8	2.6	3.5	3.5	1.8
	여성	183	51.9	23.5	12.0	2.7	2.2	1.6	6.0
연령 별	20대 미만	12	25.0	50.0	25.0	0.0	0.0	0.0	0.0
	20대	41	24.4	48.8	17.1	0.0	9.8	0.0	0.0
	30대	52	40.4	28.8	23.1	3.8	0.0	1.9	1.9
	40대	94	64.9	21.3	6.4	3.2	2.1	1.1	1.1
	50대	49	46.9	16.3	16.3	4.1	2.0	8.2	6.1
	60대 이상	49	40.8	28.6	8.2	2.0	2.0	2.0	16.3

3. 통신서비스 월평균 이용요금(Base = 통신서비스 이용가구)

1) 유선전화 월평균 이용요금(Base = 유선전화 이용가구, N = 533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유선전화 월평균 이용요금은 1.5만원이며, 구간별로는 5천원 ~ 1만원 미만이 25.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유선전화 월평균 이용요금은 세대별로 모부자 가정세대가 2.0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반세대(1.6만원), 장애인세대(1.3만원)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응답자 특성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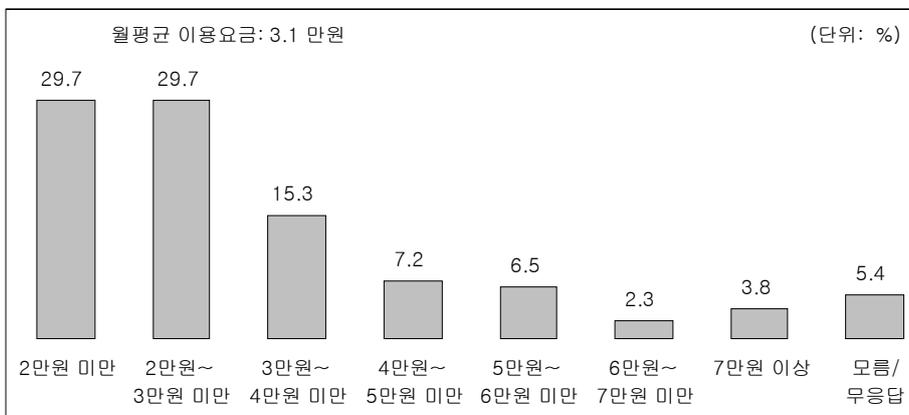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유선전화 월평균 이용요금〉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명)	5천원 미만	5천원~ 1만원 미만	1만원~ 1만 오천원 미만	1만 오천원~ 2만원 미만	2만원~ 2만 오천원 미만	2만 오천원~ 3만원 미만	3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평균 (만원)
전 체		533	12.6	25.9	20.6	12.6	8.3	3.6	5.8	10.7	1.5
세대 구분	일반세대	253	7.9	24.5	21.3	15.4	11.1	3.2	5.9	10.7	1.6
	노인세대	132	26.5	31.8	17.4	8.3	2.3	1.5	2.3	9.8	1.0
	장애인세대	22	13.6	50.0	9.1	4.5	0.0	4.5	9.1	9.1	1.3
	노인+장애인 세대	27	14.8	40.7	18.5	14.8	7.4	3.7	0.0	0.0	1.1
	소년소녀가장세대	12	0.0	8.3	41.7	8.3	0.0	0.0	0.0	41.7	1.3
	모부자가정세대	87	5.7	12.6	24.1	12.6	12.6	8.0	12.6	11.5	2.0
권역 별	서울	66	13.6	28.8	19.7	6.1	10.6	7.6	4.5	9.1	1.4
	경기/인천	97	12.4	23.7	21.6	16.5	7.2	1.0	6.2	11.3	1.5
	대전/충청	56	19.6	23.2	16.1	14.3	5.4	3.6	7.1	10.7	1.5
	광주/전라	109	7.3	22.9	21.1	9.2	11.0	3.7	6.4	18.3	1.5
	대구/경북	85	10.6	31.8	20.0	18.8	5.9	3.5	3.5	5.9	1.3
	부산/경남/울산	100	14.0	29.0	22.0	11.0	7.0	3.0	7.0	7.0	1.5
	강원/제주	20	20.0	10.0	25.0	10.0	15.0	5.0	5.0	10.0	1.5
성 별	남성	196	12.2	28.1	19.4	10.7	8.7	3.1	4.1	13.8	1.4
	여성	337	12.8	24.6	21.4	13.6	8.0	3.9	6.8	8.9	1.5
연 령 별	20대 미만	12	0.0	8.3	41.7	8.3	0.0	0.0	0.0	41.7	1.3
	20대	39	5.1	15.4	12.8	0.0	10.3	2.6	12.8	41.0	2.2
	30대	53	9.4	20.8	13.2	22.6	11.3	1.9	13.2	7.5	1.8
	40대	96	10.4	26.0	27.1	9.4	10.4	9.4	2.1	5.2	1.4
	50대	77	2.6	20.8	19.5	19.5	16.9	2.6	13.0	5.2	2.0
	60대 이상	256	18.8	30.9	20.3	11.7	4.3	2.3	2.7	9.0	1.2

2) 이동전화 월평균 이용요금(Base = 이동전화 이용가구, N = 444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이동전화 월평균 이용요금은 3.1만원이며, 구간별로는 2만원 미만(29.7%) · 2만원~3만원 미만(29.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이동전화 월평균 이용요금은 세대별로 장애인세대가 3.8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모부자가정세대(3.6만원), 일반세대(3.3만원)의 순으로 나타남.
- 자녀의 학생 유무에 따른 이동전화 이용요금 분포는 학생이 있는 가구에서 3.4만원으로 학생이 없는 가구(2.9만원)보다 높게 나타남.
- 한편, 노인층 거주 여부와 장애인 거주여부에 따른 이용요금 분포는 노인층이 없는 가구(3.7만원), 장애인이 없는 가구(3.2만원)에서 높게 나타남.
(노인층 있는 가구: 2.2만원, 장애인 있는 가구: 3.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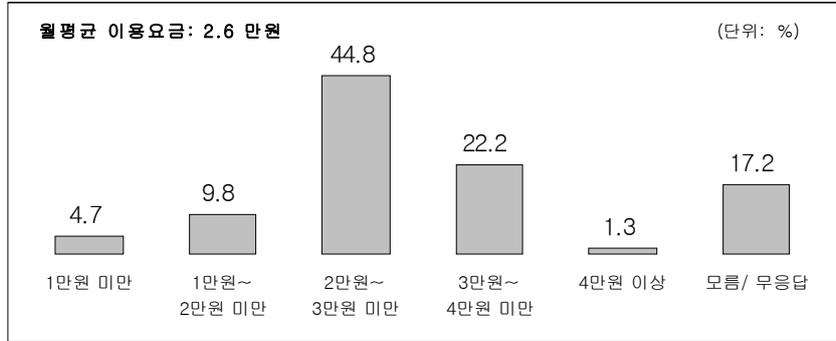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이동전화 월평균 이용요금〉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 수(명)	2만원 미만	2만원~3만원 미만	3만원~4만원 미만	4만원~5만원 미만	5만원~6만원 미만	6만원~7만원 미만	7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평균 (만원)
전 체		444	29.7	29.7	15.3	7.2	6.5	2.3	3.8	5.4	3.1
세대 구분	일반세대	225	24.4	30.7	20.0	7.1	7.1	3.6	4.9	2.2	3.3
	노인세대	70	61.4	15.7	2.9	1.4	1.4	0.0	0.0	17.1	1.8
	장애인세대	30	36.7	30.0	13.3	3.3	6.7	3.3	3.3	3.3	3.8
	노인+ 장애인 세대	18	61.1	27.8	0.0	0.0	0.0	0.0	0.0	11.1	1.8
	소년소녀가장세대	12	16.7	41.7	16.7	8.3	0.0	0.0	0.0	16.7	2.7
	모부자가정세대	89	11.2	37.1	16.9	14.6	11.2	1.1	5.6	2.2	3.6
지역별	서울	62	29.0	25.8	16.1	12.9	8.1	0.0	1.6	6.5	3.0
	경기/인천	81	27.2	37.0	12.3	7.4	3.7	2.5	1.2	8.6	2.8
	대전/충청	44	22.7	22.7	20.5	9.1	9.1	4.5	6.8	4.5	3.6
	광주/전라	89	24.7	32.6	16.9	4.5	6.7	6.7	3.4	4.5	3.6
	대구/경북	67	35.8	29.9	13.4	4.5	7.5	0.0	3.0	6.0	2.7
	부산/경남/울산	84	39.3	25.0	15.5	7.1	3.6	0.0	6.0	3.6	3.0
	강원/제주	17	17.6	35.3	11.8	5.9	17.6	0.0	11.8	0.0	3.7
성별	남성	173	30.6	25.4	16.2	7.5	8.1	4.0	6.4	1.7	3.5
	여성	271	29.2	32.5	14.8	7.0	5.5	1.1	2.2	7.7	2.8
연령별	20대 미만	12	16.7	41.7	16.7	8.3	0.0	0.0	0.0	16.7	2.7
	20대	38	10.5	21.1	21.1	15.8	10.5	7.9	7.9	5.3	4.1
	30대	56	8.9	32.1	17.9	12.5	16.1	1.8	8.9	1.8	4.0
	40대	106	19.8	37.7	17.0	6.6	11.3	2.8	4.7	0.0	3.6
	50대	79	21.5	29.1	27.8	7.6	3.8	3.8	5.1	1.3	3.3
	60대 이상	153	54.2	24.8	5.2	3.3	0.7	0.0	0.0	11.8	2.0

3) 인터넷 월평균 이용요금(Base = 인터넷 이용가구, N = 297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인터넷 월평균 이용요금은 2.6만원이며, 구간별로는 2만원~3만원 미만이 4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인터넷 월평균 이용요금은 세대별로 모부자가정세대(2.8만원), 일반세대(2.6만원)에서 높게 나타남.
- 기타 응답자 특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인터넷 월평균 이용요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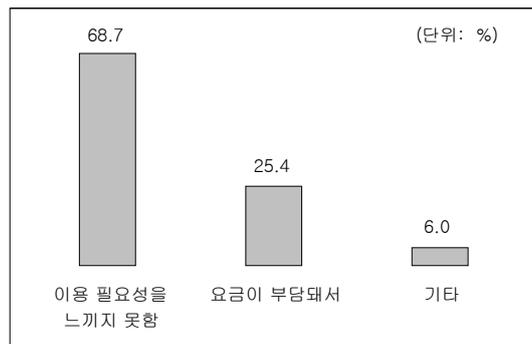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사례수 (명)	1만원 미만	1만원~ 2만원 미만	2만원~ 3만원 미만	3만원~ 4만원 미만	4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평균 (만원)
전 체		297	4.7	9.8	44.8	22.2	1.3	17.2	2.6
세 대 구 분	일반세대	181	5.0	10.5	46.4	21.5	1.1	15.5	2.6
	노인세대	3	0.0	33.3	0.0	0.0	0.0	66.7	1.5
	장애인세대	12	0.0	25.0	50.0	16.7	0.0	8.3	2.4
	노인+장애인 세대	2	0.0	0.0	50.0	0.0	0.0	50.0	2.5
	소년소녀가장세대	12	8.3	0.0	25.0	8.3	0.0	58.3	2.4
	모부자가정세대	87	4.6	6.9	44.8	27.6	2.3	13.8	2.8
권 역 별	서울	39	10.3	5.1	43.6	25.6	0.0	15.4	2.6
	경기/인천	52	3.8	15.4	34.6	28.8	1.9	15.4	2.8
	대전/충청	27	11.1	3.7	48.1	18.5	7.4	11.1	2.7
	광주/전라	68	4.4	8.8	38.2	23.5	0.0	25.0	2.6
	대구/경북	41	2.4	17.1	46.3	17.1	0.0	17.1	2.5
	부산/경남/울산	53	1.9	7.5	54.7	20.8	0.0	15.1	2.6
	강원/제주	17	0.0	5.9	64.7	11.8	5.9	11.8	2.7

응답자 특성		사례수 (명)	1만원 미만	1만원~ 2만원 미만	2만원~ 3만원 미만	3만원~ 4만원 미만	4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평균 (만원)
성 별	남성	114	2.6	11.4	45.6	18.4	2.6	19.3	2.6
	여성	183	6.0	8.7	44.3	24.6	0.5	15.8	2.6
연 령 별	20대 미만	12	8.3	0.0	25.0	8.3	0.0	58.3	2.4
	20대	41	0.0	7.3	48.8	9.8	2.4	31.7	2.6
	30대	52	5.8	9.6	48.1	28.8	3.8	3.8	2.8
	40대	94	6.4	11.7	44.7	29.8	1.1	6.4	2.6
	50대	49	4.1	8.2	53.1	22.4	0.0	12.2	2.6
	60대 이상	49	4.1	12.2	34.7	14.3	0.0	34.7	2.4

4. 통신서비스 미이용 이유(Base = 통신서비스 미이용가구)

1) 유선전화 미이용 이유(Base = 유선전화 미이용가구, N = 67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서 유선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68.7%로 가장 높고, ‘요금이 부담돼서’는 25.4%로 나타남.(기타: 6.0%)



□ 응답자 특성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유선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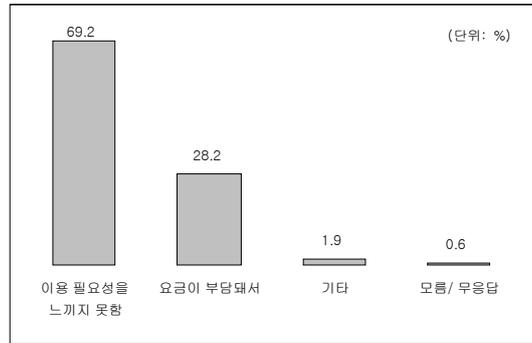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유선전화 미이용 이유〉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요금이 부담돼서	기타
전체		67	68.7	25.4	6.0
세대구분	일반세대	28	75.0	25.0	0.0
	노인세대	12	58.3	33.3	8.3
	장애인세대	14	71.4	21.4	7.1
	노인+ 장애인 세대	3	33.3	66.7	0.0
	소년소녀가장세대	1	100.0	0.0	0.0
	모부자가정세대	9	66.7	11.1	22.2
권역별	서울	13	92.3	7.7	0.0
	경기/인천	15	53.3	46.7	0.0
	대전/충청	13	69.2	30.8	0.0
	광주/전라	9	55.6	22.2	22.2
	대구/경북	2	50.0	0.0	50.0
	부산/경남/울산	8	50.0	37.5	12.5
	강원/제주	7	100.0	0.0	0.0
성별	남성	34	82.4	14.7	2.9
	여성	33	54.5	36.4	9.1
연령별	20대 미만	1	100.0	0.0	0.0
	20대	5	100.0	0.0	0.0
	30대	5	40.0	60.0	0.0
	40대	19	78.9	15.8	5.3
	50대	15	66.7	26.7	6.7
	60대 이상	22	59.1	31.8	9.1

2) 이동전화 미이용 이유(Base = 이동전화 미이용 가구, N = 156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서 이동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69.2%로 가장 높고, ‘요금이 부담돼서’는 28.2%로 나타남(기타: 1.9%, 모름/무응답: 0.6%).



□ 응답자 특성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이동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이동전화 미이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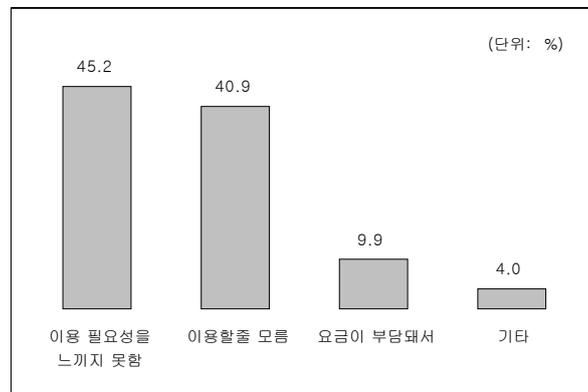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요금 부담돼서	기타	모름/무응답	
전 체	156	69.2	28.2	1.9	0.6	
세대 구분	일반세대	56	62.5	33.9	1.8	1.8
	노인세대	74	78.4	20.3	1.4	0.0
	장애인세대	6	66.7	33.3	0.0	0.0
	노인+장애인 세대	12	58.3	33.3	8.3	0.0
	소년소녀가장세대	1	100.0	0.0	0.0	0.0
	모부자가정세대	7	42.9	57.1	0.0	0.0
권역별	서울	17	64.7	35.3	0.0	0.0
	경기/인천	31	67.7	32.3	0.0	0.0
	대전/충청	25	76.0	16.0	8.0	0.0
	광주/전라	29	55.2	37.9	3.4	3.4
	대구/경북	20	80.0	20.0	0.0	0.0
	부산/경남/울산	24	70.8	29.2	0.0	0.0
	강원/제주	10	80.0	20.0	0.0	0.0
성별	남성	57	68.4	29.8	1.8	0.0
	여성	99	69.7	27.3	2.0	1.0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요금이 부담돼서	기타	모름/무응답
연령별	20대 미만	1	100.0	0.0	0.0	0.0
	20대	6	66.7	33.3	0.0	0.0
	30대	2	50.0	50.0	0.0	0.0
	40대	9	44.4	55.6	0.0	0.0
	50대	13	61.5	30.8	7.7	0.0
	60대 이상	125	72.0	25.6	1.6	0.8

3) 인터넷 미이용 이유(Base = 인터넷 미이용 가구, N = 303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45.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이용할 줄 모름’(40.9%), ‘요금이 부담돼서’(9.9%)의 순으로 나타남(기타: 4.0%).



□ 응답자 특성

-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과 ‘이용할 줄 모름’ 의견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노인세대, 장애인세대에서 두 가지 성향이 골고루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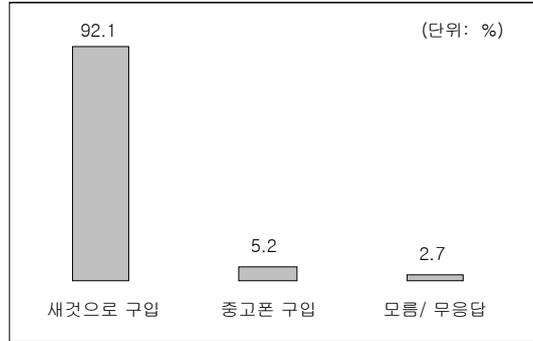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인터넷 미이용 이유〉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이용할줄 모름	요금이 부담돼서	기타	
전 체	303	45.2	40.9	9.9	4.0	
세대구분	일반세대	100	46.0	32.0	14.0	8.0
	노인세대	141	46.1	46.1	6.4	1.4
	장애인세대	24	33.3	45.8	12.5	8.3
	노인+ 장애인 세대	28	50.0	46.4	3.6	0.0
	소년소녀가장세대	1	0.0	100.0	0.0	0.0
	모부자가정세대	9	44.4	22.2	33.3	0.0
권역별	서울	40	52.5	37.5	2.5	7.5
	경기/인천	60	48.3	45.0	6.7	0.0
	대전/충청	42	47.6	35.7	7.1	9.5
	광주/전라	50	42.0	32.0	24.0	2.0
	대구/경북	46	32.6	52.2	10.9	4.3
	부산/경남/울산	55	50.9	38.2	9.1	1.8
	강원/제주	10	30.0	60.0	0.0	10.0
성별	남성	116	39.7	46.6	7.8	6.0
	여성	187	48.7	37.4	11.2	2.7
연령별	20대 미만	1	0.0	100.0	0.0	0.0
	20대	3	33.3	0.0	66.7	0.0
	30대	6	0.0	0.0	83.3	16.7
	40대	21	33.3	23.8	23.8	19.0
	50대	43	48.8	37.2	7.0	7.0
	60대 이상	229	47.2	44.5	6.6	1.7
학생 거주여부	있다	23	34.8	30.4	21.7	13.0
	없다	280	46.1	41.8	8.9	3.2
노인층 거주여부	있다	234	47.4	42.3	8.1	2.1
	없다	69	37.7	36.2	15.9	10.1
장애인 거주여부	있다	109	47.7	34.9	12.8	4.6
	없다	194	43.8	44.3	8.2	3.6

5. 가구 이동전화 구입방법(Base = 이동전화 이용가구, N = 444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이동전화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중고폰’ 구입은 5.2%이나, ‘새 폰을 구입’한 경우는 92.1%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이동전화 구입시 ‘중고폰’ 보다는 ‘새 것으로 구입’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이동전화 구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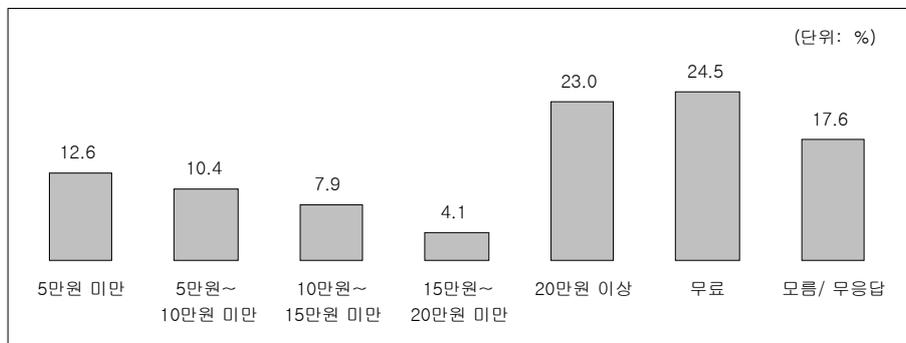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새것으로 구입	중고폰 구입	모름/ 무응답
전 체		444	92.1	5.2	2.7
세대구분	일반세대	225	97.8	1.3	0.9
	노인세대	70	77.1	11.4	11.4
	장애인세대	30	90.0	10.0	0.0
	노인 + 장애인 세대	18	72.2	22.2	5.6
	소년소녀가장세대	12	91.7	8.3	0.0
	모부자가정세대	89	94.4	4.5	1.1
권역별	서울	62	87.1	11.3	1.6
	경기/인천	81	91.4	6.2	2.5
	대전/충청	44	93.2	4.5	2.3
	광주/전라	89	95.5	2.2	2.2
	대구/경북	67	91.0	3.0	6.0
	부산/경남/울산	84	94.0	3.6	2.4
	강원/제주	17	88.2	11.8	0.0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새것으로 구입	중고폰 구입	모름/ 무응답
성별	남성	173	94.8	4.6	0.6
	여성	271	90.4	5.5	4.1
연령별	20대 미만	12	91.7	8.3	0.0
	20대	38	100.0	0.0	0.0
	30대	56	96.4	3.6	0.0
	40대	106	97.2	2.8	0.0
	50대	79	93.7	5.1	1.3
	60대 이상	153	84.3	8.5	7.2

6. 가구 이동전화 구입금액(Base = 이동전화 이용가구, N = 444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이동전화 구입금액으로 ‘무료’(24.5%), ‘20만원 이상’(23.0%)이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응답자 특성별로 이동전화 구입시 ‘무료’ 구입은 모부자가정세대(29.2%), 학생층 거주 가구(27.0%), 노인층거주 가구(26.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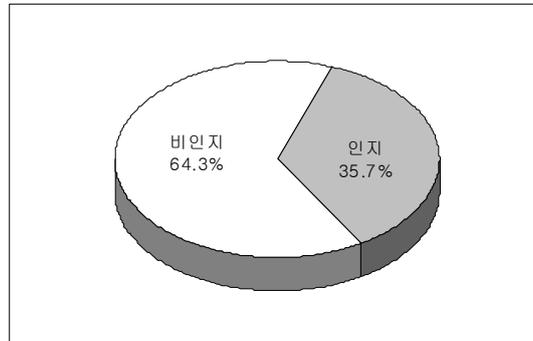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이동전화 구입금액〉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명)	5만원 미만	5만원~10 만원 미만	10만원~ 15만원 미만	15만원~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무료	모름/ 무응답
전 체		444	12.6	10.4	7.9	4.1	23.0	24.5	17.6
세 대 구 분	일반세대	225	13.8	12.4	6.7	5.3	24.4	23.1	14.2
	노인세대	70	10.0	4.3	1.4	1.4	22.9	27.1	32.9
	장애인세대	30	10.0	6.7	20.0	3.3	33.3	13.3	13.3
	노인+장애인 세대	18	11.1	16.7	5.6	5.6	5.6	27.8	27.8
	소년소녀가장세대	12	16.7	8.3	8.3	16.7	0.0	25.0	25.0
	모부자가정세대	89	12.4	10.1	12.4	1.1	22.5	29.2	12.4
권 역 별	서울	62	8.1	6.5	8.1	6.5	27.4	19.4	24.2
	경기/인천	81	12.3	11.1	6.2	7.4	25.9	21.0	16.0
	대전/충청	44	13.6	27.3	4.5	2.3	20.5	18.2	13.6
	광주/전라	89	14.6	9.0	9.0	2.2	20.2	25.8	19.1
	대구/경북	67	9.0	9.0	4.5	1.5	22.4	37.3	16.4
	부산/경남/울산	84	13.1	6.0	13.1	3.6	21.4	27.4	15.5
	강원/제주	17	29.4	11.8	5.9	5.9	23.5	5.9	17.6
성 별	남성	173	12.7	9.8	5.8	4.0	34.1	20.8	12.7
	여성	271	12.5	10.7	9.2	4.1	15.9	26.9	20.7
연 령 별	20대 미만	12	16.7	8.3	8.3	16.7	0.0	25.0	25.0
	20대	38	10.5	21.1	7.9	5.3	26.3	21.1	7.9
	30대	56	16.1	12.5	7.1	7.1	23.2	28.6	5.4
	40대	106	15.1	12.3	10.4	1.9	23.6	27.4	9.4
	50대	79	12.7	11.4	10.1	7.6	26.6	17.7	13.9
	60대 이상	153	9.8	5.2	5.2	1.3	21.6	25.5	31.4

7. 통신비 요금감면 인지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통신비 요금감면 혜택에 대한 인지율은 35.7%로 나타남(비인지: 64.3%).



□ 응답자 특성

- 통신비 감면혜택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는 경우는 노인+장애인 세대가46.7%로 가장 높고, 소년소녀가장세대는 7.7%(n = 13명)로 가장 낮음.
- 권역별로는 부산/경남/울산(42.6%) · 대구/경북(40.2%)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강원/제주(29.6%) · 서울(30.4%)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응답자 특성별 통신비 요금감면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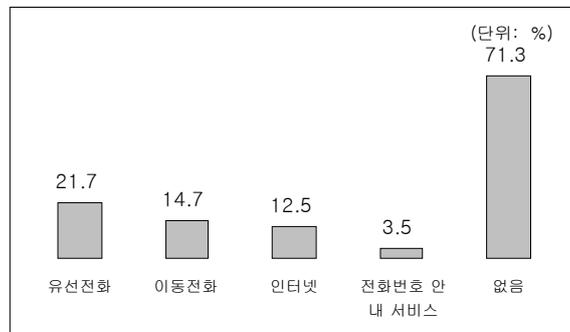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알고 있다	모른다
전 체		600	35.7	64.3
세대구분	일반세대	281	35.6	64.4
	노인세대	144	36.8	63.2
	장애인세대	36	36.1	63.9
	노인+ 장애인 세대	30	46.7	53.3
	소년소녀가장세대	13	7.7	92.3
	모부자가정세대	96	34.4	65.6
권역별	서울	79	30.4	69.6
	경기/인천	112	39.3	60.7
	대전/충청	69	33.3	66.7
	광주/전라	118	28.8	71.2
권역별	대구/경북	87	40.2	59.8
	부산/경남/울산	108	42.6	57.4
	강원/제주	27	29.6	70.4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알고 있다	모른다
성별	남성	230	31.3	68.7
	여성	370	38.4	61.6
연령별	20대 미만	13	7.7	92.3
	20대	44	11.4	88.6
	30대	58	24.1	75.9
	40대	115	47.8	52.2
	50대	92	34.8	65.2
	60대 이상	278	38.5	61.5

8. 요금감면 혜택 중인 통신서비스 종류

- 대부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71.3%)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한편, 요금감면 혜택 서비스를 받고 있는 통신서비스는 유선전화(2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이동전화(14.7%), 인터넷(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요금감면 통신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특히, ‘받고 있지 않다’는 의견은 세대별로 소년소녀가장세대(92.3%, n = 13명) · 모부자가정세대(76.0%) · 노인세대(72.9%)에서 높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7.1%) · 서울(75.9%) 등에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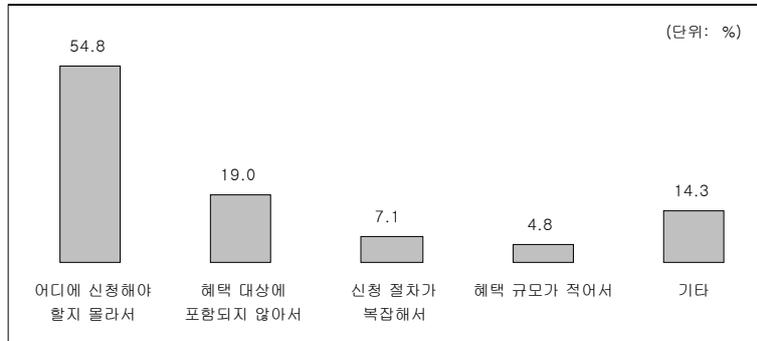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요금감면 혜택 중인 통신서비스 종류〉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없음
전 체		600	21.7	14.7	12.5	3.5	71.3
세대 구분	일반세대	281	23.5	17.4	18.1	5.0	69.4
	노인세대	144	24.3	9.0	0.7	0.0	72.9
	장애인세대	36	19.4	16.7	11.1	2.8	69.4
	노인+ 장애인 세대	30	30.0	30.0	0.0	6.7	60.0
	소년소녀가장세대	13	0.0	0.0	7.7	0.0	92.3
	모부자가정세대	96	13.5	11.5	18.8	4.2	76.0
권역 별	서울	79	21.5	15.2	8.9	3.8	75.9
	경기/인천	112	25.9	17.0	9.8	2.7	67.9
	대전/충청	69	21.7	11.6	10.1	4.3	71.0
	광주/전라	118	16.1	7.6	14.4	4.2	77.1
	대구/경북	87	24.1	21.8	19.5	4.6	65.5
	부산/경남/울산	108	21.3	17.6	12.0	2.8	70.4
성별	강원/제주	27	22.2	7.4	11.1	0.0	70.4
	남성	230	20.9	12.2	11.3	2.2	73.9
	여성	370	22.2	16.2	13.2	4.3	69.7
연령 별	20대 미만	13	0.0	0.0	7.7	0.0	92.3
	20대	44	2.3	2.3	4.5	0.0	93.2
	30대	58	12.1	12.1	12.1	1.7	79.3
	40대	115	26.1	26.1	33.0	9.6	59.1
	50대	92	20.7	10.9	15.2	3.3	75.0
	60대 이상	278	26.3	14.4	4.7	2.2	69.1

9. 통신비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이유(Base = 인지자 중 요금감면 미혜택자, N = 42명)

- 통신비 요금감면 혜택 서비스 인지자 중 통신비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이유로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가 54.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19.0%), ‘신청절차가 복잡해서’(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이유로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통신비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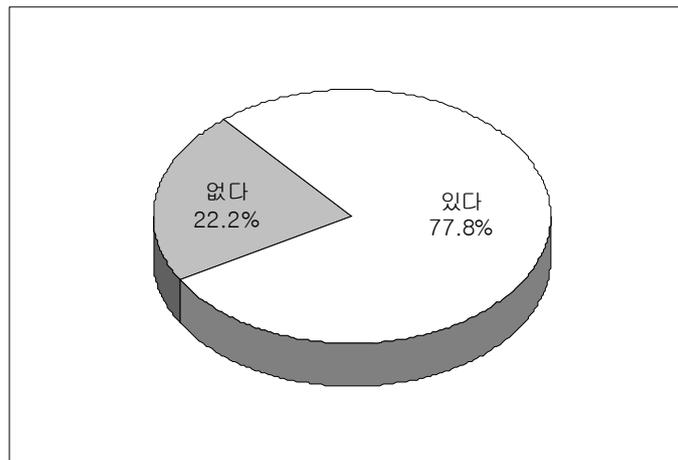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혜택 규모가 적어서	기타	
전 체	42	54.8	19.0	7.1	4.8	14.3	
세대구분	일반세대	14	50.0	14.3	7.1	0.0	28.6
	노인세대	14	64.3	14.3	7.1	7.1	7.1
	장애인세대	2	0.0	0.0	50.0	0.0	50.0
	노인+장애인 세대	2	100.0	0.0	0.0	0.0	0.0
	모부자가정세대	10	50.0	40.0	0.0	10.0	0.0
권역별	서울	5	60.0	0.0	0.0	40.0	0.0
	경기/인천	8	62.5	25.0	0.0	0.0	12.5
	대전/충청	3	33.3	33.3	0.0	0.0	33.3
	광주/전라	7	57.1	28.6	0.0	0.0	14.3
	대구/경북	5	60.0	20.0	20.0	0.0	0.0
성별	부산/경남/울산	14	50.0	14.3	14.3	0.0	21.4
	남성	12	58.3	16.7	0.0	8.3	16.7
여성	30	53.3	20.0	10.0	3.3	13.3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혜택 규모가 적어서	기타
연령별	20대	2	0.0	50.0	0.0	0.0	50.0
	30대	2	0.0	100.0	0.0	0.0	0.0
	40대	8	25.0	37.5	0.0	12.5	25.0
	50대	9	66.7	0.0	22.2	0.0	11.1
	60대 이상	21	71.4	9.5	4.8	4.8	9.5

10. 향후 이용 의향률(Base = 통신서비스 이용자, 미혜택자, N = 428명)

- 통신서비스 요금감면 혜택 이용자 및 통신서비스 요금감면 혜택 미이용자 중 미대상자의 통신비 요금감면 혜택에 포함될 경우, 향후 이용 의향률은 77.8%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향후 이용 의향률이 높게 나타남.
- 특히, 세대별로 소년소녀가장세대(100.0%, n=12명) · 장애인세대(92.0%), 모부자가정세대(90.4%) 등에서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향후 이용 의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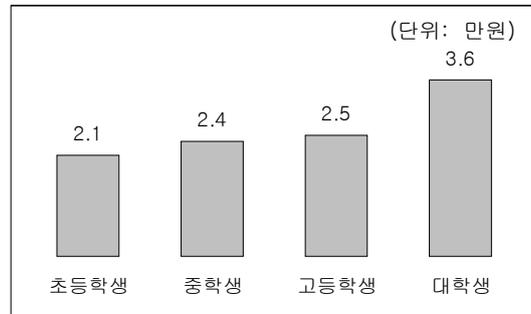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있다	없다
전 체		428	77.8	22.2
세대구분	일반세대	195	76.4	23.6
	노인세대	105	66.7	33.3
	장애인세대	25	92.0	8.0
	노인 + 장애인 세대	18	72.2	27.8
	소년소녀가장세대	12	100.0	0.0
	모부자가정세대	73	90.4	9.6
권역별	서울	60	83.3	16.7
	경기/인천	76	80.3	19.7
	대전/충청	49	81.6	18.4
	광주/전라	91	75.8	24.2
	대구/경북	57	75.4	24.6
	부산/경남/울산	76	71.1	28.9
	강원/제주	19	84.2	15.8
성별	남성	170	79.4	20.6
	여성	258	76.7	23.3
연령별	20대 미만	12	100.0	0.0
	20대	41	90.2	9.8
	30대	46	93.5	6.5
	40대	68	83.8	16.2
	50대	69	76.8	23.2
	60대 이상	192	68.2	31.8

11. 자녀의 이동전화 이용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자녀의 이동전화 월평균 이용금액은 고학력 자녀일수록 이용요금이 높게 나타남.

(대학생: 3.6만원 > 고등학생: 2.5만원 > 중학생: 2.4만원 > 초등학생: 2.1만원)



□ 응답자 특성

-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n=25명)의 이동전화 월평균 이용요금은 일반세대(2.1만원, n=15명), 모부자가정세대(2.1만원, n=7명), 소년소녀가장세대(1.7만원, n=3명)으로 나타남.
- 중학생 자녀를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n=74명)의 이동전화 월평균 이용요금은 소년소녀가장세대(3.0만원, n=5명), 모부자가정세대(2.4만원), 일반세대(2.2만원)으로 나타남.
- 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n=80명)의 이동전화 월평균 이용요금은 소년소녀가장세대(3.3만원, n=7명), 모부자가정세대(2.6만원), 일반세대(2.2만원)로 나타남.
- 대학생 자녀를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n=53명)의 이동전화 월평균 이용요금은 일반세대(3.9만원), 모부자가정세대(3.2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2.0만원, n=2명)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자녀의 이동전화 이용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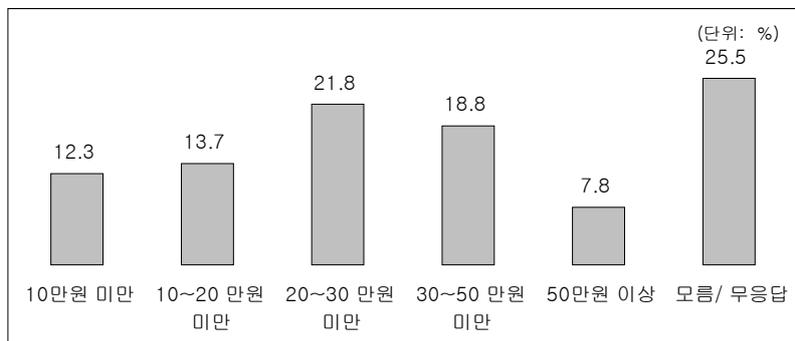
(단위: 만원, 명)

응답자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전 체		2.1(25)	2.4(74)	2.5(80)	3.6(53)
세대구분	일반세대	2.1(15)	2.2(32)	2.2(40)	3.9(36)
	소년소녀가장세대	1.7(3)	3.0(5)	3.3(7)	2.0(2)
	모부자가정세대	2.1(7)	2.4(37)	2.6(33)	3.2(15)

응답자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권역별	서울	2.0(4)	2.3(11)	3.0(11)	2.3(3)
	경기/인천	1.7(3)	2.2(13)	2.1(11)	3.3(12)
	대전/충청	3.4(2)	2.5(6)	2.4(6)	5.4(5)
	광주/전라	2.1(5)	2.4(22)	2.1(19)	3.2(11)
	대구/경북	1.5(4)	2.4(9)	2.2(14)	3.7(9)
	부산/경남/울산	2.1(7)	2.2(11)	3.1(13)	3.8(12)
	강원/제주	—	3.0(2)	2.4(6)	—
성별	남성	1.8(10)	2.4(25)	2.4(28)	3.7(20)
	여성	2.3(15)	2.3(49)	2.5(52)	3.6(33)
연령별	20대 미만	1.7(3)	3.0(5)	3.3(7)	2.0(2)
	20대	4.8(2)	3.4(8)	3.0(13)	4.2(17)
	30대	2.0(5)	2.2(15)	2.6(6)	2.5(1)
	40대	1.8(13)	1.9(27)	2.3(33)	2.7(14)
	50대	—	2.4(9)	2.1(10)	3.8(14)
	60대 이상	1.8(1)	2.5(10)	2.5(11)	4.7(5)

12. 국민기초생활보조금액

-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30만원 미만이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응답자 특성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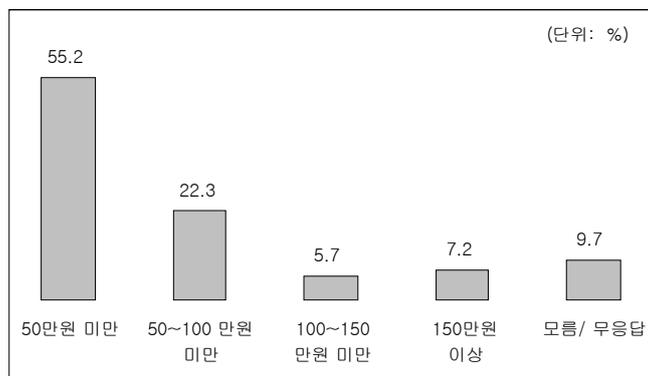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국민기초생활보조금액〉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명)	10만원 미만	10~20 만원 미만	20~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전 체		600	12.3	13.7	21.8	18.8	7.8	25.5
세대 구분	일반세대	281	13.9	11.7	17.1	14.6	9.3	33.5
	노인세대	144	14.6	19.4	31.9	20.8	2.8	10.4
	장애인세대	36	2.8	11.1	30.6	33.3	2.8	19.4
	노인+장애인 세대	30	10.0	6.7	30.0	36.7	3.3	13.3
	소년소녀가장세대	13	0.0	7.7	23.1	7.7	7.7	53.8
	모부자가정세대	96	10.4	14.6	14.6	18.8	14.6	27.1
권역 별	서울	79	8.9	13.9	22.8	24.1	6.3	24.1
	경기/인천	112	12.5	12.5	23.2	21.4	7.1	23.2
	대전/충청	69	8.7	15.9	20.3	18.8	8.7	27.5
	광주/전라	118	11.9	11.0	21.2	16.1	9.3	30.5
	대구/경북	87	21.8	14.9	25.3	9.2	6.9	21.8
	부산/경남/울산	108	9.3	14.8	20.4	24.1	9.3	22.2
성 별	강원/제주	27	14.8	14.8	14.8	14.8	3.7	37.0
	남성	230	12.2	9.6	19.6	20.4	8.3	30.0
연 령 별	여성	370	12.4	16.2	23.2	17.8	7.6	22.7
	20대 미만	13	0.0	7.7	23.1	7.7	7.7	53.8
	20대	44	13.6	4.5	9.1	9.1	2.3	61.4
	30대	58	12.1	10.3	17.2	12.1	10.3	37.9
	40대	115	9.6	13.0	18.3	18.3	19.1	21.7
	50대	92	13.0	13.0	23.9	15.2	6.5	28.3
60대 이상	278	13.7	16.5	25.5	23.7	4.0	16.5	

13. 가구 월평균 소득(국민기초생활보조금 포함)

- 보조금을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0만원 미만 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월평균 소득의 경우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 50만원 미만인 비율이 일반세대 (39.5%), 소년소녀가장세대(30.8%), 모부자가정세대(27.1%) 보다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가구 월평균 소득〉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전 체		600	55.2	22.3	5.7	7.2	9.7
세대 구분	일반세대	281	39.5	27.8	8.2	13.9	10.7
	노인세대	144	91.7	3.5	0.0	0.0	4.9
	장애인세대	36	88.9	5.6	0.0	0.0	5.6
	노인+장애인 세대	30	86.7	6.7	0.0	0.0	6.7
	소년소녀가장세대	13	30.8	15.4	15.4	7.7	30.8
	모부자가정세대	96	27.1	46.9	9.4	3.1	13.5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권역별	서울	79	57.0	20.3	5.1	3.8	13.9
	경기/인천	112	64.3	21.4	0.9	7.1	6.3
	대전/충청	69	53.6	20.3	5.8	11.6	8.7
	광주/전라	118	46.6	25.4	11.0	6.8	10.2
	대구/경북	87	51.7	25.3	3.4	9.2	10.3
	부산/경남/울산	108	60.2	21.3	7.4	4.6	6.5
	강원/제주	27	44.4	18.5	3.7	11.1	22.2
성별	남성	230	55.2	19.1	6.5	9.6	9.6
	여성	370	55.1	24.3	5.1	5.7	9.7
연령별	20대 미만	13	30.8	15.4	15.4	7.7	30.8
	20대	44	13.6	22.7	11.4	25.0	27.3
	30대	58	22.4	31.0	15.5	22.4	8.6
	40대	115	30.4	48.7	7.8	7.0	6.1
	50대	92	48.9	27.2	7.6	6.5	9.8
	60대 이상	278	82.0	8.3	0.7	1.4	7.6

14. 고객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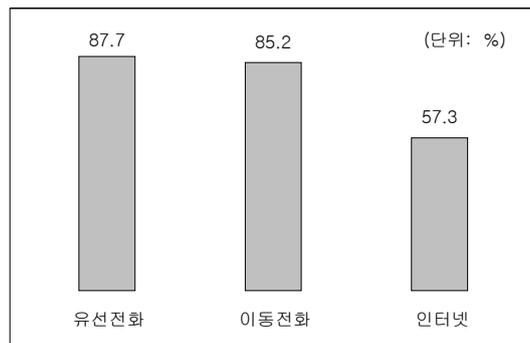
- 통신비 요금감면에 대한 자유의견으로는 ‘통신서비스 요금인하 관련’의견이 20.5% (n = 123명)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감면혜택 대상 및 범위 증가관련’(6.5%, n = 39명), ‘제도 · 절차 · 홍보 관련’(2.5%, n = 15명) 등의 의견이 많음.
세부 항목으로는 ‘통신요금이 비싸다— 기본료 · 통화료 인하’(16.0%, n = 96명),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3.2%, 19명), ‘핸드폰 관련 요금이 비싸다— 기본요금 · 통화료’(2.3%, n = 14명)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응답내용	사례수(명)	비율(%)
[통신서비스 요금인하관련]	123	20.5
통신요금이 비싸다/ 기본료,통화료 인하	96	16.0
핸드폰- 비싸다/요금 인하(기본요금 + 통화료)	14	2.3
인터넷- 비싸다/요금 인하	5	0.8
일반 전화- 비싸다	5	0.8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저렴한 요금제	2	0.3
지역 케이블 할인	1	0.2
[감면혜택 대상 및 범위 증가관련]	39	6.5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19	3.2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 부족	6	1.0
보조금 지원 확대 바람	6	1.0
가족간 통화 감면 혜택	1	0.2
기초생활 수급자 모두 혜택 바람	5	0.8
장기 사용자에게 대한 혜택	1	0.2
일반전화/핸드폰 중 하나 비용 면제	1	0.2
[제도, 절차, 홍보 관련]	15	2.5
홍보 부족하다	9	1.5
감면 혜택 받는 방법을 모른다	2	0.3
지원 자격이 까다롭다	1	0.2
간편한 신청 절차	1	0.2
현주소와 다를 경우 혜택 못 받음	2	0.3
[기타]	12	2.0
실질적인 도움 바란다	3	0.5
인터넷 종량제 반대	1	0.2
기본에 충실	1	0.2
일시적 소득으로 전화 끊지 말아야 한다	1	0.2
컴퓨터가 없다	1	0.2
통신사로 인한 피해 없도록	1	0.2
만족/감사한다	4	0.7
[없음/모름/무응답]	411	68.5

제 4 장 차상위계층 결과 분석

1. 통신서비스 이용률

- 차상위계층 가구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률은 유선전화가 87.7%, 이동전화 85.2%, 초고속 인터넷이 57.3%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유선전화 이용률은 서울(79.8%), 65세 이상 노인층이 없는 가구(83.3%), 장애인이 없는 가구(84.6%)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 이동전화 이용률은 광주/전라(70.8%), 학생층이 없는 가구(79.9%), 65세 이상 노인층이 있는 가구(70.9%), 장애인이 있는 가구(82.0%)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 인터넷 이용률은 광주/전라(38.9%), 학생층이 없는 가구(34.1%), 65세 이상 노인층이 있는 가구(30.3%), 장애인이 있는 가구(46.5%)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응답자 특성별 통신서비스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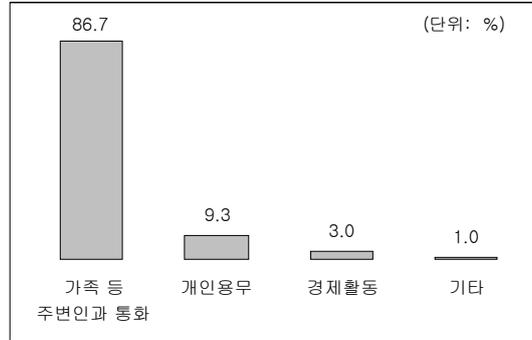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전 체		600	87.7	85.2	57.3
지역구분	서울	129	79.8	86.8	58.9
	경기/인천	143	89.5	90.9	60.1
	대전/충청	62	83.9	87.1	45.2
	광주/전라	72	94.4	70.8	38.9
	대구/경북	71	88.7	83.1	59.2
	부산/경남/울산	102	90.2	86.3	65.7
	강원/제주	21	95.2	81.0	81.0
성별	남성	219	86.3	87.7	49.8
	여성	381	88.5	83.7	61.7
연령별	20대 미만	2	100.0	100.0	50.0
	20대	44	81.8	95.5	75.0
	30대	107	81.3	97.2	86.9
	40대	148	87.8	92.6	78.4
	50대	97	84.5	97.9	64.9
	60대 이상	202	93.6	64.9	18.8
학생 유무	있다	277	89.5	91.3	84.5
	없다	323	86.1	79.9	34.1
노인 유무	있다	234	94.4	70.9	30.3
	없다	366	83.3	94.3	74.6
장애인 유무	있다	217	93.1	82.0	46.5
	없다	383	84.6	86.9	63.4

2. 통신서비스 이용용도(Base = 통신서비스 이용가구)

1) 유선전화 이용용도(Base = 유선전화 이용가구, N = 526명)

- 차상위계층 가구의 유선전화 이용용도로 ‘가족 등 주변인과의 통화’(86.7%)가 주목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유선전화의 이용용도로 ‘가족 등 주변인과의 통화’가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유선전화 이용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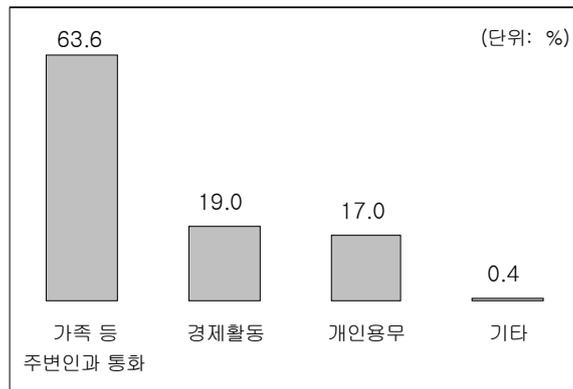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가족 등 주변인과 통화	개인용무	경제활동	기타	
전 체	526	86.7	9.3	3.0	1.0	
지역구분	서울	103	91.3	4.9	2.9	1.0
	경기/인천	128	89.1	10.2	0.0	0.8
	대전/충청	52	82.7	11.5	3.8	1.9
	광주/전라	68	88.2	7.4	2.9	1.5
	대구/경북	63	84.1	7.9	6.3	1.6
	부산/경남/울산	92	83.7	14.1	2.2	0.0
	강원/제주	20	75.0	10.0	15.0	0.0
성별	남성	189	80.4	14.3	3.7	1.6
	여성	337	90.2	6.5	2.7	0.6
연령별	20대 미만	2	100.0	0.0	0.0	0.0
	20대	36	75.0	16.7	5.6	2.8
	30대	87	87.4	11.5	1.1	0.0
	40대	130	83.1	10.8	5.4	0.8
	50대	82	86.6	11.0	2.4	0.0
	60대 이상	189	91.0	5.3	2.1	1.6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가족 등 주변인과의 통화	개인용무	경제활동	기타
학생 유무	있다	248	86.7	8.9	3.6	0.8
	없다	278	86.7	9.7	2.5	1.1
노인층 유무	있다	221	87.8	7.7	3.6	0.9
	없다	305	85.9	10.5	2.6	1.0
장애인 유무	있다	202	89.6	6.9	2.0	1.5
	없다	324	84.9	10.8	3.7	0.6

2) 이동전화 이용용도(Base = 이동전화 이용가구, N = 511명)

- 차상위계층 가구의 이동전화 이용용도로 ‘가족 등 주변인과의 통화’가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이동전화의 이용용도로 ‘가족 등 주변인과의 통화’가 높게 나타남.
- 한편, ‘경제활동’이 주 이용용도인 응답자는 학생층이 있는 가구(26.9%), 65세 이상 노인층이 없는 가구(22.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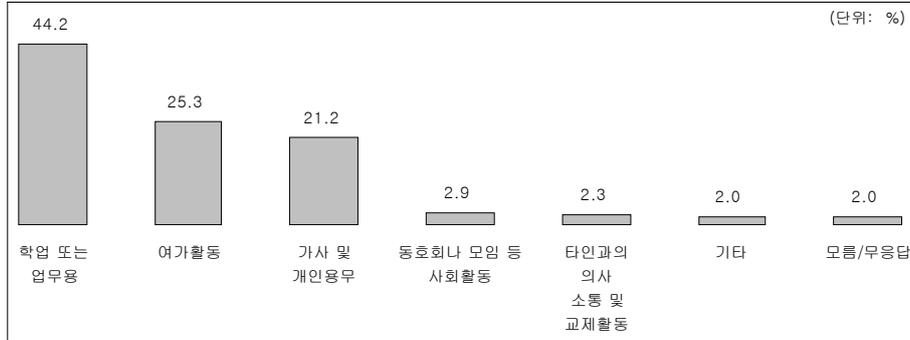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이동전화 이용용도〉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가족 등 주변인과 통화	경제활동	개인용무	기타	
전 체	511	63.6	19.0	17.0	0.4	
지역구분	서울	112	59.8	17.9	21.4	0.9
	경기/인천	130	63.8	19.2	16.9	0.0
	대전/충청	54	66.7	24.1	9.3	0.0
	광주/전라	51	66.7	17.6	13.7	2.0
	대구/경북	59	71.2	16.9	11.9	0.0
	부산/경남/울산	88	61.4	15.9	22.7	0.0
	강원/제주	17	52.9	35.3	11.8	0.0
성별	남성	192	53.1	26.6	19.3	1.0
	여성	319	69.9	14.4	15.7	0.0
연령별	20대 미만	2	100.0	0.0	0.0	0.0
	20대	42	71.4	9.5	19.0	0.0
	30대	104	58.7	22.1	19.2	0.0
	40대	137	48.2	35.8	16.1	0.0
	50대	95	60.0	18.9	18.9	2.1
	60대 이상	131	83.2	2.3	14.5	0.0
학생 유무	있다	253	56.1	26.9	16.2	0.8
	없다	258	70.9	11.2	17.8	0.0
노인 유무	있다	166	72.3	12.0	15.7	0.0
	없다	345	59.4	22.3	17.7	0.6
장애인 유무	있다	178	71.3	15.2	13.5	0.0
	없다	333	59.5	21.0	18.9	0.6

3) 인터넷 이용용도(Base = 인터넷 이용가구, N = 344명)

- 차상위계층 가구의 인터넷 이용용도로 ‘학업 또는 업무용’이 4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여가활동’(25.3%), ‘가사 및 개인용무’(2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인터넷 이용용도로 ‘학업 또는 업무용’으로 이용한다는 의견은 학생층이 있는 가구(50.4%), 65세 이상 노인층이 없는 가구(45.4%), 대전/충청(57.1%), 서울(47.4%), 40대(51.7%) 등에서 높게 나타남.
- 한편, ‘여가활동용’으로 주로 이용한다는 의견은 학생층이 있는 가구(26.9%), 40대(28.4%), 30대(28.0%) 등에서, ‘가사 및 개인용무’에 대한 의견은 학생층이 없는 가구(30.9%), 20대(33.3%) · 30대(25.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인터넷 이용용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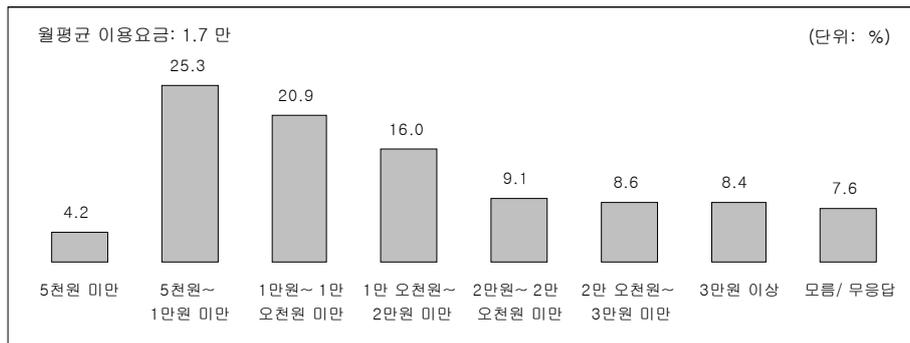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사례수 (명)	학업 또는 업무용	여가 활동	가사 및 개인 용무	동호회나 모임 등 사회 활동	타인 과의 의사 소통 및 교제 활동	기타	모름/ 무응답
전 체		344	44.2	25.3	21.2	2.9	2.3	2.0	2.0
지역 구분	서울	76	47.4	21.1	14.5	2.6	6.6	5.3	2.6
	경기/인천	86	43.0	23.3	27.9	2.3	1.2	1.2	1.2
	대전/충청	28	57.1	28.6	10.7	0.0	0.0	0.0	3.6
	광주/전라	28	46.4	25.0	21.4	3.6	0.0	0.0	3.6
	대구/경북	42	45.2	14.3	23.8	7.1	4.8	2.4	2.4
	부산/경남/울산	67	34.3	38.8	22.4	1.5	0.0	1.5	1.5
	강원/제주	17	47.1	23.5	23.5	5.9	0.0	0.0	0.0
성별	남성	109	53.2	21.1	17.4	3.7	2.8	0.9	0.9
	여성	235	40.0	27.2	23.0	2.6	2.1	2.6	2.6

응답자 특성		사례수 (명)	학업 또는 업무용	여가 활동	가사 및 개인 용무	동호회나 모임 등 사회 활동	타인 과의 의사 소통 및 교제 활동	기타	모름/ 무응답
연령별	20대 미만	1	100.0	0.0	0.0	0.0	0.0	0.0	0.0
	20대	33	30.3	27.3	33.3	6.1	3.0	0.0	0.0
	30대	93	36.6	28.0	25.8	4.3	2.2	3.2	0.0
	40대	116	51.7	28.4	15.5	1.7	0.9	0.9	0.9
	50대	63	44.4	17.5	23.8	3.2	3.2	3.2	4.8
	60대 이상	38	50.0	21.1	13.2	0.0	5.3	2.6	7.9
학생 유무	있다	234	50.4	26.9	16.7	1.3	1.3	2.6	0.9
	없다	110	30.9	21.8	30.9	6.4	4.5	0.9	4.5
노인 유무	있다	71	39.4	23.9	19.7	7.0	5.6	0.0	4.2
	없다	273	45.4	25.6	21.6	1.8	1.5	2.6	1.5
장애인 유무	있다	101	44.6	22.8	16.8	6.9	4.0	1.0	4.0
	없다	243	44.0	26.3	23.0	1.2	1.6	2.5	1.2

3. 통신서비스 월평균 이용요금(Base = 통신서비스 이용가구)

1) 유선전화 월평균 이용요금(Base = 유선전화 이용가구, N = 526명)

- 차상위계층 가구의 유선전화 월평균 이용요금은 1.7만원이며, 구간별로는 5천 원~1만원 미만이 25.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유선전화 월평균 이용요금은 학생층이 있는 가구(1.8만원), 65세 이상 노인층

이 없는 가구(1.8만원), 장애인이 없는 가구(1.8만원), 등에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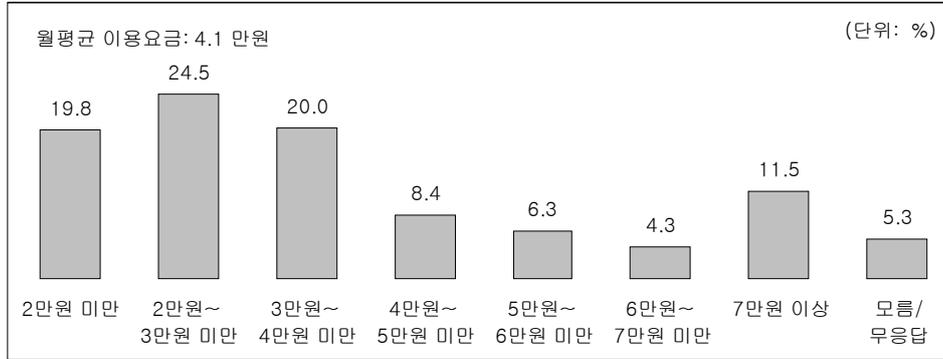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유선전화 월평균 이용요금〉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명)	5천원 미만	5천원~1 만원 미만	1만원~1 만 오천원 미만	1만 오천 원~2만 원 미만	2만원~2 만 오천원 미만	2만 오천 원~3만 원 미만	3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평균 (만원)
전 체		526	4.2	25.3	20.9	16.0	9.1	8.6	8.4	7.6	1.7
지역 구분	서울	103	0.0	26.2	23.3	11.7	11.7	6.8	11.7	8.7	1.8
	경기/인천	128	7.0	19.5	25.0	18.0	7.8	8.6	7.8	6.3	1.6
	대전/충청	52	3.8	36.5	15.4	19.2	3.8	7.7	5.8	7.7	1.4
	광주/전라	68	4.4	33.8	11.8	14.7	10.3	10.3	7.4	7.4	1.6
	대구/경북	63	6.3	27.0	17.5	19.0	7.9	4.8	11.1	6.3	1.7
	부산/경남/울산	92	4.3	20.7	23.9	16.3	13.0	10.9	1.1	9.8	1.6
	강원/제주	20	0.0	15.0	25.0	10.0	0.0	15.0	30.0	5.0	2.5
성별	남성	189	4.8	24.3	17.5	12.2	12.2	9.5	9.5	10.1	1.7
	여성	337	3.9	25.8	22.8	18.1	7.4	8.0	7.7	6.2	1.6
연령별	20대 미만	2	0.0	50.0	0.0	0.0	0.0	0.0	0.0	50.0	0.8
	20대	36	2.8	22.2	16.7	16.7	8.3	13.9	11.1	8.3	2.0
	30대	87	2.3	21.8	26.4	23.0	8.0	9.2	9.2	0.0	1.7
	40대	130	3.1	20.8	23.8	19.2	7.7	14.6	8.5	2.3	1.7
	50대	82	2.4	24.4	14.6	12.2	11.0	6.1	18.3	11.0	2.0
	60대 이상	189	6.9	30.7	20.1	12.2	10.1	4.2	3.2	12.7	1.4
학생 유무	있다	248	2.8	18.5	23.4	20.2	9.3	10.1	10.5	5.2	1.8
	없다	278	5.4	31.3	18.7	12.2	9.0	7.2	6.5	9.7	1.5
노인 유무	있다	221	5.0	30.8	21.7	13.1	8.6	5.9	4.5	10.4	1.4
	없다	305	3.6	21.3	20.3	18.0	9.5	10.5	11.1	5.6	1.8
장애인 유무	있다	202	6.9	31.2	19.8	13.4	6.9	7.4	5.9	8.4	1.4
	없다	324	2.5	21.6	21.6	17.6	10.5	9.3	9.9	7.1	1.8

2) 이동전화 월평균 이용요금(Base = 이동전화 이용가구, N = 511명)

- 차상위계층 가구의 이동전화 월평균 이용요금은 4.1만원이며, 구간별로는 2만원~3만원 미만(24.5%) · 3만원~4만원 미만(20.0%)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이동전화 월평균 이용요금은 학생층이 있는 가구(4.5만원), 65세 이상 노인층이 없는 가구(4.4만원), 장애인이 없는 가구(4.3만원), 서울(4.8만원), 대전/충청(4.5만원) 등에서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이동전화 월평균 이용요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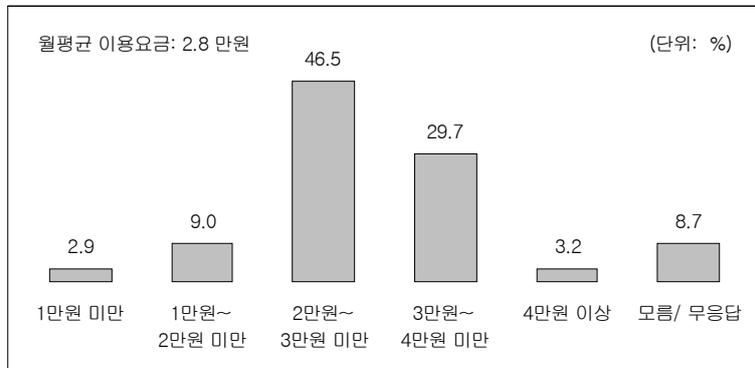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 수(명)	2만원 미만	2만원~3만원 미만	3만원~4만원 미만	4만원~5만원 미만	5만원~6만원 미만	6만원~7만원 미만	7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평균 (만원)	
전 체	511	19.8	24.5	20.0	8.4	6.3	4.3	11.5	5.3	4.1	
지역 구분	서울	112	15.2	18.8	19.6	9.8	7.1	4.5	19.6	5.4	4.8
	경기/인천	130	15.4	28.5	20.0	10.8	4.6	5.4	10.0	5.4	4.0
	대전/충청	54	25.9	24.1	14.8	1.9	7.4	5.6	13.0	7.4	4.5
	광주/전라	51	25.5	25.5	13.7	5.9	7.8	2.0	11.8	7.8	4.2
	대구/경북	59	25.4	22.0	28.8	6.8	3.4	1.7	10.2	1.7	3.7
	부산/경남/울산	88	23.9	26.1	18.2	10.2	5.7	4.5	5.7	5.7	3.4
	강원/제주	17	5.9	29.4	35.3	5.9	17.6	5.9	0.0	0.0	3.7
성별	남성	192	18.2	22.4	18.2	10.4	6.3	1.0	17.7	5.7	4.7
	여성	319	20.7	25.7	21.0	7.2	6.3	6.3	7.8	5.0	3.7
연령별	20대 미만	2	0.0	50.0	50.0	0.0	0.0	0.0	0.0	0.0	3.0
	20대	42	4.8	14.3	26.2	19.0	4.8	9.5	21.4	0.0	5.6
	30대	104	9.6	18.3	26.0	13.5	10.6	5.8	16.3	0.0	4.9

응답자 특성		사례 수(명)	2만원 미만	2만원~3만원 미만	3만원~4만원 미만	4만원~5만원 미만	5만원~6만원 미만	6만원~7만원 미만	7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평균 (만원)
연령별	40대	137	10.2	27.7	21.9	7.3	8.8	6.6	15.3	2.2	4.7
	50대	95	17.9	32.6	18.9	7.4	6.3	3.2	9.5	4.2	3.6
	60대 이상	131	44.3	22.9	11.5	3.1	0.8	0.0	2.3	15.3	2.5
학생 유무	있다	253	11.5	21.3	23.7	12.3	9.1	5.9	13.8	2.4	4.5
	없다	258	27.9	27.5	16.3	4.7	3.5	2.7	9.3	8.1	3.7
노인 유무	있다	166	35.5	18.7	16.3	6.6	2.4	1.2	7.8	11.4	3.3
	없다	345	12.2	27.2	21.7	9.3	8.1	5.8	13.3	2.3	4.4
장애인 유무	있다	178	29.8	25.8	15.7	5.1	5.1	1.1	10.7	6.7	3.6
	없다	333	14.4	23.7	22.2	10.2	6.9	6.0	12.0	4.5	4.3

3) 인터넷 월평균 이용요금(Base = 인터넷 이용가구, N = 344명)

- 차상위계층 가구의 인터넷 월평균 이용요금은 2.8만원이며, 구간별로는 2만원~3만원 미만이 46.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인터넷 월평균 이용요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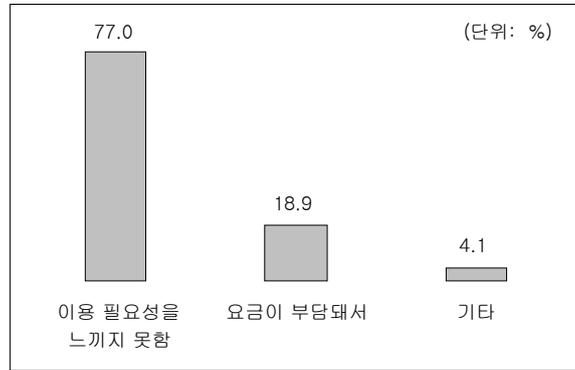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명)	1만원 미만	1만원~2만 원 미만	2만원~3만 원 미만	3만원~4만 원 미만	4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평균 (만원)
전 체		344	2.9	9.0	46.5	29.7	3.2	8.7	2.8
지역 구분	서울	76	2.6	10.5	40.8	31.6	3.9	10.5	2.8
	경기/인천	86	1.2	4.7	52.3	30.2	3.5	8.1	2.9
	대전/충청	28	3.6	10.7	35.7	42.9	3.6	3.6	2.9
	광주/전라	28	0.0	10.7	64.3	21.4	0.0	3.6	2.6
	대구/경북	42	7.1	16.7	42.9	23.8	2.4	7.1	2.5
	부산/경남/울산	67	3.0	9.0	46.3	26.9	3.0	11.9	2.7
	강원/제주	17	5.9	0.0	41.2	35.3	5.9	11.8	2.9
성별	남성	109	0.9	7.3	45.9	30.3	5.5	10.1	2.9
	여성	235	3.8	9.8	46.8	29.4	2.1	8.1	2.7
연령별	20대 미만	1	0.0	100.0	0.0	0.0	0.0	0.0	1.5
	20대	33	0.0	6.1	57.6	33.3	0.0	3.0	2.8
	30대	93	4.3	10.8	51.6	28.0	3.2	2.2	2.7
	40대	116	4.3	7.8	46.6	36.2	2.6	2.6	2.8
	50대	63	0.0	9.5	42.9	28.6	4.8	14.3	2.9
	60대 이상	38	2.6	7.9	31.6	13.2	5.3	39.5	2.7
학생 유무	있다	234	4.3	7.7	46.6	31.6	2.6	7.3	2.8
	없다	110	0.0	11.8	46.4	25.5	4.5	11.8	2.8
노인 유무	있다	71	1.4	8.5	43.7	22.5	5.6	18.3	2.8
	없다	273	3.3	9.2	47.3	31.5	2.6	6.2	2.8
장애인 유무	있다	101	2.0	8.9	50.5	20.8	4.0	13.9	2.7
	없다	243	3.3	9.1	44.9	33.3	2.9	6.6	2.8

4. 통신서비스 미이용 이유(Base = 통신서비스 미이용가구)

1) 유선전화 미이용 이유(Base = 유선전화 미이용가구, N = 74명)

-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유선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77.0%로 가장 높고, ‘요금이 부담돼서’는 18.9%로 나타남.(기타: 4.1%)



□ 응답자 특성

-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유선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유선전화 미이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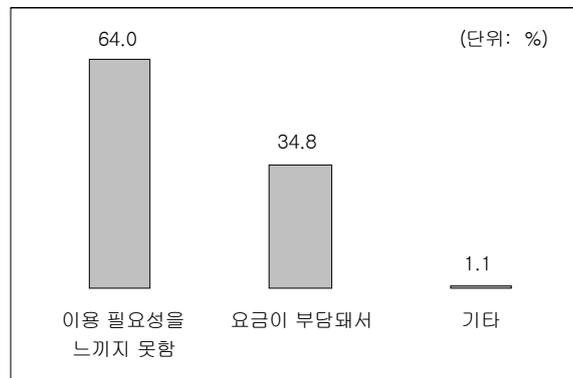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요금이 부담돼서	기타
전 체		74	77.0	18.9	4.1
지역구분	서울	26	73.1	26.9	0.0
	경기/인천	15	86.7	13.3	0.0
	대전/충청	10	80.0	0.0	20.0
	광주/전라	4	75.0	25.0	0.0
	대구/경북	8	62.5	37.5	0.0
	부산/경남/울산	10	80.0	10.0	10.0
	강원/제주	1	100.0	0.0	0.0
성별	남성	30	66.7	26.7	6.7
	여성	44	84.1	13.6	2.3
연령별	20대	8	87.5	12.5	0.0
	30대	20	85.0	10.0	5.0
	40대	18	72.2	22.2	5.6
	50대	15	53.3	40.0	6.7
	60대 이상	13	92.3	7.7	0.0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요금이 부담돼서	기타
학생 유무	있다	29	72.4	20.7	6.9
	없다	45	80.0	17.8	2.2
노인 유무	있다	13	84.6	7.7	7.7
	없다	61	75.4	21.3	3.3
장애인 유무	있다	15	53.3	33.3	13.3
	없다	59	83.1	15.3	1.7

2) 이동전화 미이용 이유(Base = 이동전화 미이용 가구, N = 89명)

-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이동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64.0%로 가장 높고, ‘요금이 부담돼서’는 34.8%로 나타남.(기타: 1.1%)



□ 응답자 특성

-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이동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한편, ‘이용요금이 부담돼서’는 학생층이 없는 가구(36.9%), 65세 이상 노인층이 없는 가구(42.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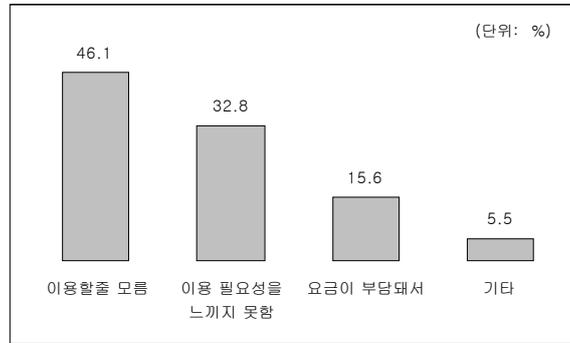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이동전화 미이용 이유〉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요금이 부담돼서	기타	
전 체	89	64.0	34.8	1.1	
지역구분	서울	17	64.7	35.3	0.0
	경기/인천	13	76.9	23.1	0.0
	대전/충청	8	75.0	25.0	0.0
	광주/전라	21	57.1	38.1	4.8
	대구/경북	12	58.3	41.7	0.0
	부산/경남/울산	14	57.1	42.9	0.0
	강원/제주	4	75.0	25.0	0.0
성별	남성	27	66.7	33.3	0.0
	여성	62	62.9	35.5	1.6
연령별	20대	2	0.0	100.0	0.0
	30대	3	66.7	33.3	0.0
	40대	11	72.7	27.3	0.0
	50대	2	100.0	0.0	0.0
	60대 이상	71	63.4	35.2	1.4
학생 유무	있다	24	70.8	29.2	0.0
	없다	65	61.5	36.9	1.5
노인 유무	있다	68	66.2	32.4	1.5
	없다	21	57.1	42.9	0.0
장애인 유무	있다	39	64.1	33.3	2.6
	없다	50	64.0	36.0	0.0

3) 인터넷 미이용 이유(Base = 인터넷 미이용 가구, N = 256명)

-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할 줄 모름’이 46.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32.8%), ‘요금이 부담돼서’(15.6%)의 순으로 나타남.(기타: 5.5%)



□ 응답자 특성

-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할 줄 모른다’는 의견은 학생층이 없는 가구(49.3%), 노인층이 있는 가구(51.5%) 등에서 높고, ‘이용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은 학생층이 없는 가구(33.8%), 노인층이 없는 가구(37.6%), 장애인 이 없는 가구(36.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한편, ‘이용 요금이 부담돼서’는 학생층이 있는 가구(32.6%)에서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인터넷 미이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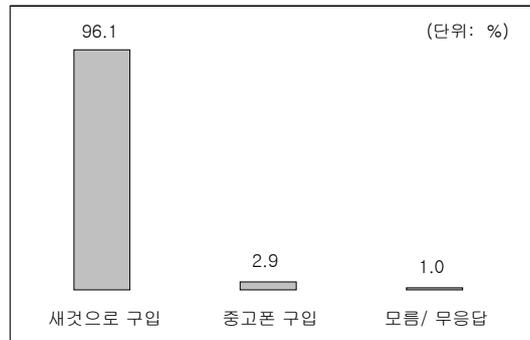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이용할 줄 모름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요금이 부담돼서	기타	
전 체	256	46.1	32.8	15.6	5.5	
지역 구분	서울	53	49.1	43.4	3.8	3.8
	경기/인천	57	43.9	29.8	19.3	7.0
	대전/충청	34	50.0	20.6	23.5	5.9
	광주/전라	44	47.7	31.8	18.2	2.3
	대구/경북	29	48.3	34.5	13.8	3.4
	부산/경남/울산	35	40.0	37.1	17.1	5.7
	강원/제주	4	25.0	0.0	25.0	50.0
성별	남성	110	40.0	35.5	20.0	4.5
	여성	146	50.7	30.8	12.3	6.2
연령별	20대 미만	1	0.0	0.0	100.0	0.0
	20대	11	9.1	54.5	36.4	0.0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이용할줄 모름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요금이 부담돼서	기타
연령별	30대	14	0.0	28.6	35.7	35.7
	40대	32	28.1	34.4	28.1	9.4
	50대	34	44.1	38.2	14.7	2.9
	60대 이상	164	56.7	30.5	9.8	3.0
학생 유무	있다	43	30.2	27.9	32.6	9.3
	없다	213	49.3	33.8	12.2	4.7
노인 유무	있다	163	51.5	30.1	12.3	6.1
	없다	93	36.6	37.6	21.5	4.3
장애인 유무	있다	116	46.6	28.4	18.1	6.9
	없다	140	45.7	36.4	13.6	4.3

5. 가구 이동전화 구입방법(Base = 이동전화 이용 가구, N = 511명)

- 차상위계층 가구의 이동전화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중고폰’ 구입은 2.9%이나, ‘새 폰을 구입’한 경우는 96.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92.1%)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이동전화 구입시 ‘중고폰’ 보다는 ‘새 것으로 구입’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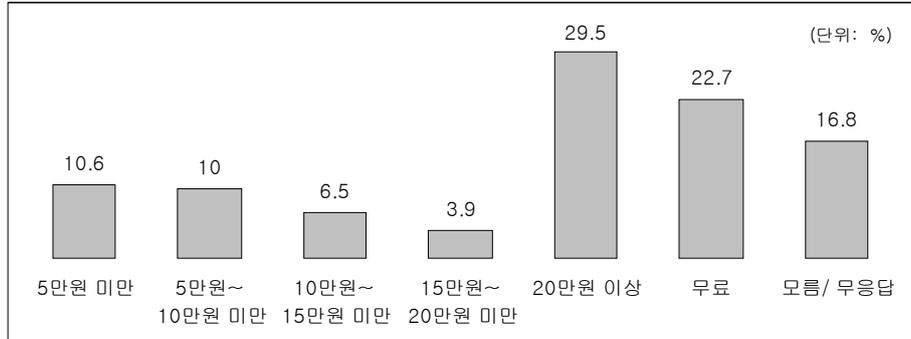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가구 이동전화 구입방법]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새것으로 구입	중고폰 구입	모름/ 무응답
전 체		511	96.1	2.9	1.0
지역구분	서울	112	95.5	4.5	0.0
	경기/인천	130	97.7	2.3	0.0
	대전/충청	54	96.3	1.9	1.9
	광주/전라	51	94.1	3.9	2.0
	대구/경북	59	98.3	1.7	0.0
	부산/경남/울산	88	93.2	3.4	3.4
	강원/제주	17	100.0	0.0	0.0
성별	남성	192	94.8	4.2	1.0
	여성	319	96.9	2.2	0.9
연령별	20대 미만	2	0.0	0.0	100.0
	20대	42	97.6	2.4	0.0
	30대	104	95.2	3.8	1.0
	40대	137	97.8	1.5	0.7
	50대	95	96.8	3.2	0.0
	60대 이상	131	95.4	3.8	0.8
학생 유무	있다	253	95.7	2.4	2.0
	없다	258	96.5	3.5	0.0
노인 유무	있다	166	95.8	3.6	0.6
	없다	345	96.2	2.6	1.2
장애인 유무	있다	178	96.6	3.4	0.0
	없다	333	95.8	2.7	1.5

6. 가구 이동전화 구입금액(Base = 이동전화 이용 가구, N = 511명)

- 차상위계층 가구의 이동전화 구입금액으로 '20만원이상'이 29.5%로 가장 높고, '무료'구입도 22.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응답자 특성별로 이동전화 구입시는 전체 결과와 마찬가지로 ‘20만원 이상’과 ‘무료구입’이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가구 이동전화 구입금액〉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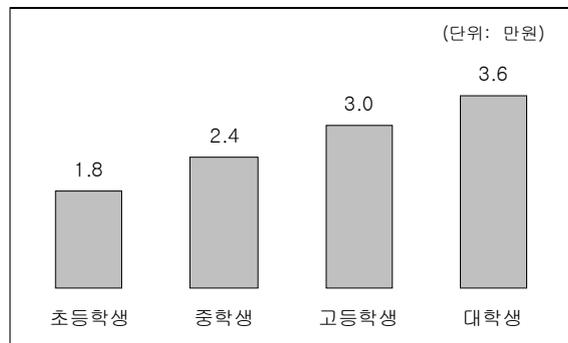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사례수 (명)	5만원 미만	5만원~10만원 미만	10만원~15만원 미만	15만원~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무료	모름/무응답
전 체		511	10.6	10.0	6.5	3.9	29.5	22.7	16.8
지역구분	서울	112	10.7	11.6	8.0	1.8	34.8	19.6	13.4
	경기/인천	130	10.8	8.5	5.4	5.4	25.4	23.8	20.8
	대전/충청	54	3.7	9.3	5.6	1.9	33.3	25.9	20.4
	광주/전라	51	17.6	3.9	5.9	2.0	37.3	13.7	19.6
	대구/경북	59	11.9	11.9	5.1	6.8	23.7	22.0	18.6
	부산/경남/울산	88	10.2	12.5	8.0	4.5	23.9	28.4	12.5
	강원/제주	17	5.9	11.8	5.9	5.9	41.2	23.5	5.9
성별	남성	192	10.9	8.9	6.3	3.6	37.0	21.9	11.5
	여성	319	10.3	10.7	6.6	4.1	25.1	23.2	20.1
연령별	20대 미만	2	0.0	0.0	0.0	0.0	0.0	0.0	100.0
	20대	42	11.9	11.9	9.5	4.8	38.1	19.0	4.8
	30대	104	10.6	14.4	6.7	2.9	28.8	29.8	6.7
	40대	137	13.9	12.4	4.4	3.6	29.9	28.5	7.3
	50대	95	12.6	5.3	9.5	6.3	29.5	20.0	16.8
	60대 이상	131	5.3	6.9	5.3	3.1	27.5	14.5	37.4

응답자 특성		사례수 (명)	5만원 미만	5만원~ 10만원 미만	10만원~ 15만원 미만	15만원~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무료	모름/ 무응답
학생 유무	있다	253	13.0	11.5	5.1	3.6	32.0	24.9	9.9
	없다	258	8.1	8.5	7.8	4.3	27.1	20.5	23.6
노인 유무	있다	166	7.8	7.2	4.8	3.6	28.9	20.5	27.1
	없다	345	11.9	11.3	7.2	4.1	29.9	23.8	11.9
장애인 유무	있다	178	7.3	8.4	5.1	2.2	30.3	22.5	24.2
	없다	333	12.3	10.8	7.2	4.8	29.1	22.8	12.9

7. 자녀의 이동전화 이용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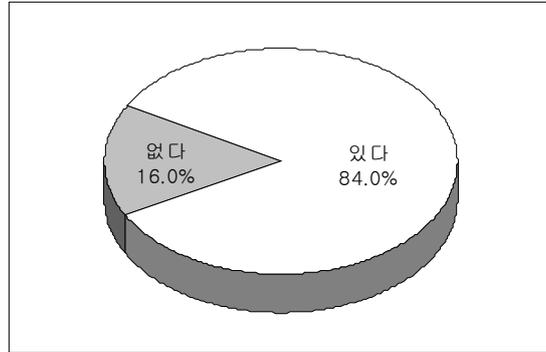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의 이동전화 월평균 이용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마찬가지로 고학력 자녀일수록 이용요금이 높게 나타남.

(대학생: 3.6만원 > 고등학생: 3.0만원 > 중학생: 2.4만원 > 초등학생: 1.8만원)



8. 통신비 요금감면 혜택 이용의향

- 통신비 요금감면 혜택에 포함될 경우, 향후 이용 의향률은 84.0%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77.8%)보다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향후 이용 의향률이 높게 나타남.
- 특히, 학생층이 있는 가구(89.9%), 65세 노인층이 없는 가구(87.7%), 장애인이 있는 가구(89.4%)에서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통신비 요금감면 혜택 이용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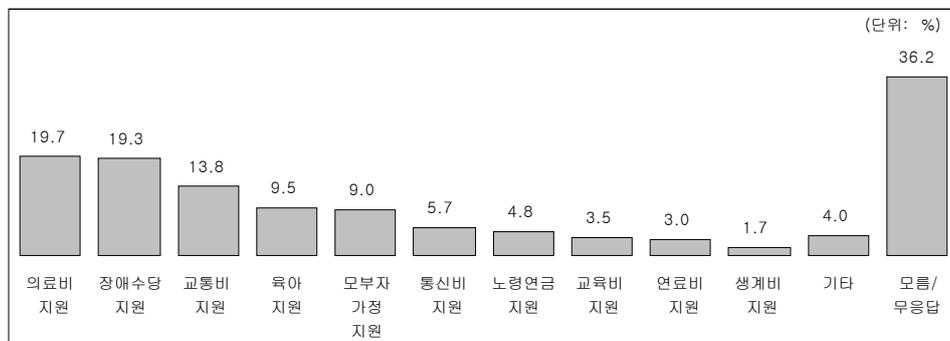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있다	없다	
전 체	600	84.0	16.0	
지역구분	서울	82.2	17.8	
	경기/인천	80.4	19.6	
	대전/충청	74.2	25.8	
	광주/전라	88.9	11.1	
	대구/경북	87.3	12.7	
	부산/경남/울산	90.2	9.8	
	강원/제주	21	90.5	9.5
성별	남성	219	82.6	17.4
	여성	381	84.8	15.2
연령별	20대 미만	2	100.0	0.0
	20대	44	93.2	6.8
	30대	107	90.7	9.3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있다	없다
연령별	40대	148	87.8	12.2
	50대	97	84.5	15.5
	60대 이상	202	75.2	24.8
학생 유무	있다	277	89.9	10.1
	없다	323	78.9	21.1
노인 유무	있다	234	78.2	21.8
	없다	366	87.7	12.3
장애인 유무	있다	217	89.4	10.6
	없다	383	80.9	19.1

9. 보조금 종류

- 차상위계층에서 받고 있는 보조금으로는 ‘의료비 지원’(19.7%), ‘장애수당 지원’(19.3%), ‘교통비지원’(13.8%) 등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응답자 특성별 보조금 종류로 65세 노인층이 있는 가구의 경우 ‘교통비 지원’(30.8%), ‘장애수당지원’(28.2%), ‘의료비지원’(25.1%) 등을 지원받는 의견이 높고, 학생층이 있는 가구의 경우 ‘의료비지원’(17.3%), ‘모부자가정지원’(17.3%)

등을 지원받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보조금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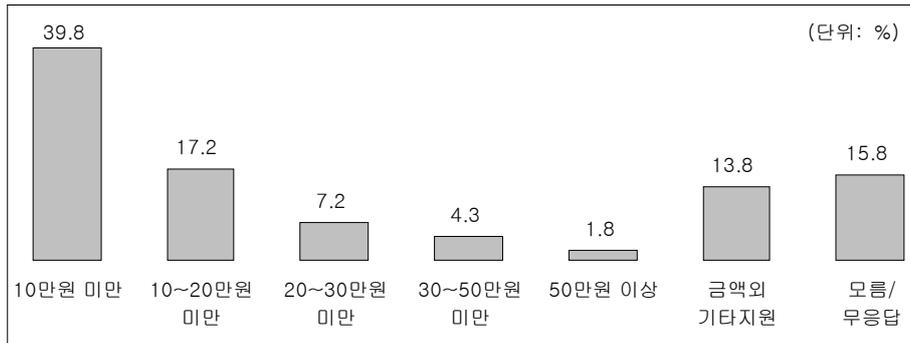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명)	의료비 지원	장애수 당 지원	교통비 지원	육아 지원	모부자 가정 지원	통신비 지원	노령연 금 지원	교육비 지원	연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600	19.7	19.3	13.8	9.5	9.0	5.7	4.8	3.5	3.0	1.7	4.0	36.2	
지역 구분	서울	129	19.4	11.6	20.9	10.9	14.0	6.2	6.2	3.9	3.9	4.7	3.9	30.2
	경기/인천	143	23.8	21.7	9.1	8.4	9.8	1.4	2.1	3.5	5.6	0.0	4.9	37.1
	대전/충청	62	19.4	17.7	14.5	6.5	14.5	12.9	3.2	4.8	1.6	0.0	4.8	35.5
	광주/전라	72	30.6	41.7	11.1	5.6	4.2	6.9	13.9	1.4	1.4	2.8	0.0	26.4
	대구/경북	71	21.1	11.3	11.3	12.7	1.4	7.0	0.0	4.2	0.0	1.4	7.0	46.5
	부산/경남/울산	102	8.8	20.6	14.7	10.8	8.8	4.9	4.9	3.9	2.9	1.0	2.9	36.3
	강원/제주	21	4.8	0.0	14.3	14.3	0.0	4.8	4.8	0.0	0.0	0.0	4.8	66.7
성 별	남성	219	18.7	24.7	15.5	4.1	7.3	5.5	5.5	3.7	3.7	1.4	5.0	35.6
	여성	381	20.2	16.3	12.9	12.6	10.0	5.8	4.5	3.4	2.6	1.8	3.4	36.5
연 령 별	20대 미만	2	0.0	0.0	0.0	0.0	50.0	0.0	0.0	0.0	0.0	0.0	0.0	50.0
	20대	44	9.1	6.8	4.5	20.5	11.4	4.5	0.0	4.5	6.8	2.3	4.5	45.5
	30대	107	18.7	14.0	2.8	25.2	15.0	7.5	0.0	1.9	0.9	0.0	3.7	38.3
	40대	148	14.2	13.5	6.1	10.1	17.6	6.8	0.7	8.8	2.7	2.7	2.0	45.9
	50대	97	21.6	21.6	5.2	1.0	5.2	2.1	1.0	3.1	3.1	2.1	4.1	43.3
	60대 이상	202	25.7	28.2	31.7	2.5	0.5	5.9	13.4	0.5	3.5	1.5	5.4	22.3
학생 유무	있다	277	17.3	13.0	7.2	12.3	17.3	5.4	1.1	6.9	2.2	2.2	2.9	40.8
	없다	323	21.7	24.8	19.5	7.1	1.9	5.9	8.0	0.6	3.7	1.2	5.0	32.2
노인 유무	있다	234	25.2	26.5	30.8	5.1	3.0	6.8	12.4	1.7	4.7	3.0	6.4	20.9
	없다	366	16.1	14.8	3.0	12.3	12.8	4.9	0.0	4.6	1.9	0.8	2.5	45.9
장애인 유무	있다	217	26.3	53.5	14.7	4.6	3.2	12.0	7.4	1.8	4.6	2.3	4.1	19.8
	없다	383	15.9	0.0	13.3	12.3	12.3	2.1	3.4	4.4	2.1	1.3	3.9	45.4

10. 보조금 금액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금액으로 10만원 미만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금액 외 기타지원을 받는 경우는 13.8%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보조금으로 10만원 미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금액외 기타 지원’을 받는 의견은 학생층이 있는 가구(16.6%), 65세 이상 노인층이 없는 가구(17.5%), 장애인이 없는 가구(19.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응답자 특성별 보조금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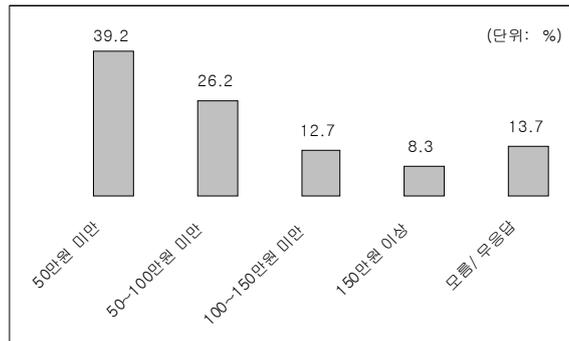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명)	10만원 미만	10~20 만원 미만	20~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금액외 기타 지원	모름/ 무응답
전 체		600	39.8	17.2	7.2	4.3	1.8	13.8	15.8
지역 구분	서울	129	44.2	12.4	8.5	7.0	3.1	11.6	13.2
	경기/인천	143	32.9	20.3	5.6	4.9	1.4	14.0	21.0
	대전/충청	62	48.4	17.7	8.1	1.6	1.6	12.9	9.7
	광주/전라	72	37.5	18.1	9.7	2.8	1.4	9.7	20.8
	대구/경북	71	42.3	12.7	5.6	4.2	2.8	19.7	12.7
	부산/경남/울산	102	38.2	20.6	6.9	3.9	1.0	15.7	13.7
	강원/제주	21	42.9	19.0	4.8	0.0	0.0	14.3	19.0
성별	남성	219	39.3	18.7	7.3	4.1	2.3	13.7	14.6
	여성	381	40.2	16.3	7.1	4.5	1.6	13.9	16.5

응답자 특성		사례수 (명)	10만원 미만	10~20 만원 미만	20~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금액외 기타 지원	모름/ 무응답
연령별	20대 미만	2	0.0	50.0	0.0	0.0	0.0	0.0	50.0
	20대	44	31.8	15.9	6.8	2.3	2.3	22.7	18.2
	30대	107	33.6	21.5	14.0	1.9	3.7	11.2	14.0
	40대	148	33.8	17.6	5.4	6.1	1.4	15.5	20.3
	50대	97	33.0	15.5	3.1	6.2	2.1	19.6	20.6
	60대 이상	202	53.0	15.3	6.9	4.0	1.0	9.4	10.4
학생 유무	있다	277	34.7	16.6	7.9	4.3	1.4	16.6	18.4
	없다	323	44.3	17.6	6.5	4.3	2.2	11.5	13.6
노인 유무	있다	234	52.1	15.8	5.6	3.4	1.7	8.1	13.2
	없다	366	32.0	18.0	8.2	4.9	1.9	17.5	17.5
장애인 유무	있다	217	41.9	24.4	5.1	6.9	3.2	4.1	14.3
	없다	383	38.6	13.1	8.4	2.9	1.0	19.3	16.7

11. 가구 월평균 소득(보조금 포함)

- 보조금을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0만원 미만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

- 보조금 포함 월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가구는 학생층이 없는 가구(54.2%), 65세

이상 노인층이 있는 가구(59.4%), 장애인이 있는 가구(48.8%)에서 높음.

〈응답자 특성별 가구 월평균 소득〉

(단위: %)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전 체		600	39.2	26.2	12.7	8.3	13.7
지역구분	서울	129	41.1	29.5	13.2	7.0	9.3
	경기/인천	143	29.4	32.2	11.2	9.1	18.2
	대전/충청	62	45.2	30.6	9.7	8.1	6.5
	광주/전라	72	61.1	15.3	6.9	5.6	11.1
	대구/경북	71	49.3	15.5	9.9	7.0	18.3
	부산/경남/울산	102	26.5	28.4	22.5	7.8	14.7
	강원/제주	21	28.6	14.3	9.5	28.6	19.0
성별	남성	219	43.4	24.2	11.9	8.7	11.9
	여성	381	36.7	27.3	13.1	8.1	14.7
연령별	20대 미만	2	0.0	50.0	0.0	0.0	50.0
	20대	44	29.5	27.3	13.6	15.9	13.6
	30대	107	15.0	30.8	26.2	19.6	8.4
	40대	148	25.0	33.1	16.9	8.1	16.9
	50대	97	28.9	30.9	14.4	4.1	21.6
	60대 이상	202	69.8	15.8	1.5	3.0	9.9
학생 유무	있다	277	21.7	35.0	20.6	10.8	11.9
	없다	323	54.2	18.6	5.9	6.2	15.2
노인 유무	있다	234	59.4	19.7	5.1	4.7	11.1
	없다	366	26.2	30.3	17.5	10.7	15.3
장애인 유무	있다	217	48.8	23.0	13.4	6.5	8.3
	없다	383	33.7	27.9	12.3	9.4	16.7

12. 고객의 소리

- 통신비 요금감면에 대한 자유의견으로는 ‘통신서비스 요금인하 관련’의견이 24.3%(n = 146명)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감면혜택 대상 및 범위 증가관

련'(8.5%, n = 51명), '제도·절차·홍보 관련'(1.0%, n = 6명) 등의 의견이 많음. 세부 항목으로는 '통신요금이 비싸다-기본료·통화료 인하'(15.8%, n = 95명), '핸드폰 관련 요금이 비싸다-기본요금·통화료'(5.8%, n = 35명),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3.0%, n = 18명)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응답내용	사례수(명)	비율(%)
[통신서비스 요금인하관련]	146	24.3
통신요금이 비싸다/ 기본료,통화료 인하	95	15.8
[핸드폰] 비싸다/요금 인하(기본요금 + 통화료)	35	5.8
[인터넷] 비싸다/요금 인하	8	1.3
[일반 전화] 비싸다	6	1.0
[핸드폰] 부가서비스 비싸다	1	0.2
현실성 있는 요금제	1	0.2
[감면혜택 대상 및 범위 증가관련]	51	8.5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18	3.0
보조금 지원 확대 바람	9	1.5
기초생활 수급자 모두 혜택 바람	6	1.0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 부족	5	0.8
노인에게 무상 지원	2	0.3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혜택 부여	2	0.3
국가 유공자 감면 혜택 바람	1	0.2
무소득 자에게 혜택 바람	1	0.2
수급 대상자 판단 기준 불합리	1	0.2
신용 불량자 감면 혜택	1	0.2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 제공	1	0.2
장기 사용자에게 혜택	1	0.2
장애인 혜택 일반 전화와 핸드폰 동시 적용	1	0.2
세금 혜택 바란다	1	0.2
많은 사람이 혜택받을수 있어야 한다	1	0.2

응답내용	사례수(명)	비율(%)
[제도, 절차, 홍보 관련]	6	1.0
지원 자격이 까다롭다	2	0.3
홍보 부족하다	1	0.2
규제 완화	1	0.2
한번에 정보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제공	1	0.2
혜택 대상자에게 방법 설명	1	0.2
[기타]	15	2.5
실질적인 도움 바란다	4	0.7
정부가 자동 처리 바람	2	0.3
인터넷 종량제 반대	1	0.2
기본에 충실	1	0.2
서비스 시행을 위한 기초 조사필요	1	0.2
부가서비스가 많이 청구됨/요금청구서 정확하게	1	0.2
서비스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1	0.2
불량전화 사고가 많아서 불편하다	1	0.2
만족/감사한다	3	0.5
[없음/모름/무응답]	382	63.7

● 저 자 소 개 ●

함 창 용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미국 Michigan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
- 미국 California(Berkely)대학교 경영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정경쟁정책연구실 실장

오 성 백

- 일본 Christian International 대학교 졸업
- 일본 Christian International 대학교
행정대학원 계량경제학 석사
- 한국과학원 산업공학 석사
- 미국 Wisconsin-Madison 대학교 경영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종 화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미국 University of Hawaii 경제학 석사
- 미국 UCLA 경제학 석사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분석실 실장

정 훈

-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오 기 석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임연구위원

나 상 우

-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정보경영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한 상 훈

-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정책연구 08-57

인터넷전화 및 결합판매 활성화에 따른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연구(II)

2008년 12월 일 인쇄

2008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방 석 호

발행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1

TEL: 570-4114 FAX: 579-4695~6

인쇄 인성문화

ISBN 978-89-8242-506-6 93320

1. 본 연구보고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수행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